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축산 · 수산분야]

총5권중 제4권

2008.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수산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5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9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식량·원예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수산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faf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2009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8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13
제3장 전문가위원회	14
제4장 농림수산사업	15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23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7장 보칙	27
I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9
III.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81
1. 배경	83
2. 주요골자	86
3. 주요 변경사항	90
4. 해설	95
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15
V. 농림수산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45
VI. 기타 주요사항	261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263

제2권 식량·원예분야

【식량분야】

I. 생산기반 확충	269
1. 농지은행사업	271
① 영농규모화사업	272
②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98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08
3.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325
4. 농업용수 수질조사개선사업	348
5. 개인육종가 활성화 지원사업	359
6.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370
II. 농업기계화	385
7.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387
8. 농기계 임대사업	409
9.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422
III. 생산 및 유통개선	433
1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435
①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435
②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454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464
11.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477
12.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494

【원예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501
13.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03

14.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517
15. 시군유통회사설립·운영지원	530
1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	540
17.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5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560
② 원예작물수급안정사업	569
③ 수매지원(저장용·산지가공)사업	580
1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590
19. 인삼계열화사업	600
20.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609
21. 농산물 자조금지원	622
22. 소비지유통활성화	633
23.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651
24.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662
2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676
26.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688
27. 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692
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696
29. 농식품시설현대화	702
30. 생산자용·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지원사업	710
31.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714
32. 천일염산업육성지원	735
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SPC) 설치사업	735
② 염전생산시설개선사업	746
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753
33.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75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71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784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799
④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821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835
35.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853
36. 과수원정비지원사업	862

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883
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885
38. 생물적 병해충방제(천적)사업	906
39.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921
40. 친환경비료지원사업	929
41. 농업종합자금지원	957
II. 기술개발	981
42.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983
43. 농림기술개발	994
44. 신기술보급사업	1002
III. 인력육성	1011
45.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1013
①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1013
②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1027
③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1043
46.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055
47.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1079
48.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1090

IV. 소득보전	1107
49.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109
5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19
5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37
52.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154
53.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174
5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180
5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195
V. 소득원개발	1207
5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1209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1209
② 관광농원	1224
③ 농어촌민박사업	1240
57. 한계농지정비사업	1249
58.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1260
59. 농축산경영자금지원	1271
VI. 생활환경개선	1279
6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281
61.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1298
【임업·산촌분야】	
I. 경영기반 확충	1315
62. 산림경영계획	1317
II. 생산 및 유통개선	1327
63.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1329
64. 산림소득증대사업	1348
65.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1369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1414
67. 별채운재로시설지원사업	1420
68. 사립수목원지원사업	1429
6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1435

Ⅲ. 산림자원조성

70. 조림·숲가꾸기	1449
-------------------	------

제4권 축산·수산분야

【축산분야】

I. 사육기반확충

71.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467
①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및 유통비지원	1468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1470
③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지원	1473
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지원	1474
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지원	1476
⑥ 조사료가공 시설지원	1478
72. 사료산업종합지원	1495
7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504
74. 마필산업육성	1529
75.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538
76.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1546
77. 양봉산업육성사업	1561
78. 낙농체험 관광사업	1565

II. 생산 및 유통개선

79. 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사업	1579
80. 브랜드육 타운조성	1611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	1617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26
83.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1643
① 가축계열화사업	1643
② 브랜드 경영체지원사업	1657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1680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694
85. 축산공제사업	1705
86.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1713

【수산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729
87.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1731
88.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1741
89. 소규모바다목장사업	1749
II. 생산 및 유통개선	1755
90. 수산물소비촉진사업	1757
91. 환경친화형 양어용 배합사료지원사업	1766
92.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1775
93.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	1781
94. 양식장HACCP적용지원	1789
95.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803
III. 기계화	1811
9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	1813
97.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1822
98. 양식장비 임대사업	1832
99.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845

IV. 인력육성	1857
100.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1859
101.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1887
V. 소득보전	1911
10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1913
10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924
104.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1940
105.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1949

제5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 배수개선사업	1957
107. 방조제 개보수사업	1968
108.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978
109. 소규모용수개발사업	1987
1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06
111. 농업생산기반조성	2023
112.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2038
113.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053
11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2070
115.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2082
116.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093
117. 전원마을조성사업	2110
11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127
119.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2139
1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154
121. 농공단지조성사업	2170
122. 농촌활력증진사업	2182
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182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2187
③ 특화품목육성사업	2199
12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2209
124. 산촌생태마을 조성	2221
12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231
126.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사업	2239
127. 양식어장정화사업	2245
128. 수산물유통시설건설사업	2253
129. 어항기반시설조성	2261
130. 어촌·어항 관광조성	2273

【축산분야】

I . 사육기반확충

7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과 장 이상수	02-500-2090
		사무관 전익성	02-500-2096
		사무관 안규정	02-500-2098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 장 이환원	02-2127-7437
		팀 장 신동렬	02-2127-7410

I.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젓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2년 370천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조사료 자급율(%)	82	82	78	80	2010.3	재배면적에 따른 국내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193	103	123	150	2010.3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 청보리등 사일리지용 재배면적(천ha)	40	9	12	25	2010.3	시·도별 농가 파종면적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339,917	57,598	86,400	141,393	817,300
보 조	108,961	20,601	34,500	62,497	383,600
용 자	70,891	5,661	6,900	10,400	31,200
지방비	31,798	11,058	20,600	39,600	257,400
자부담	128,267	20,278	24,400	28,896	145,1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국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한우회·낙우회 등

- 재배농가 :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

<재배농가 유형>

- 지역 농·축협 등 경영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
-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농가
-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농가
-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농가
- 경종과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영농 농가(겸업농가)

- 축산농가 :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 섬유질 가공사료업체,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3. 지원대상

- 동·하계 사료작물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용,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일리지 제조비 :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비용
- 유통비 : 생산된 사일리지를 타 시·도로 판매할 경우 장거리 운송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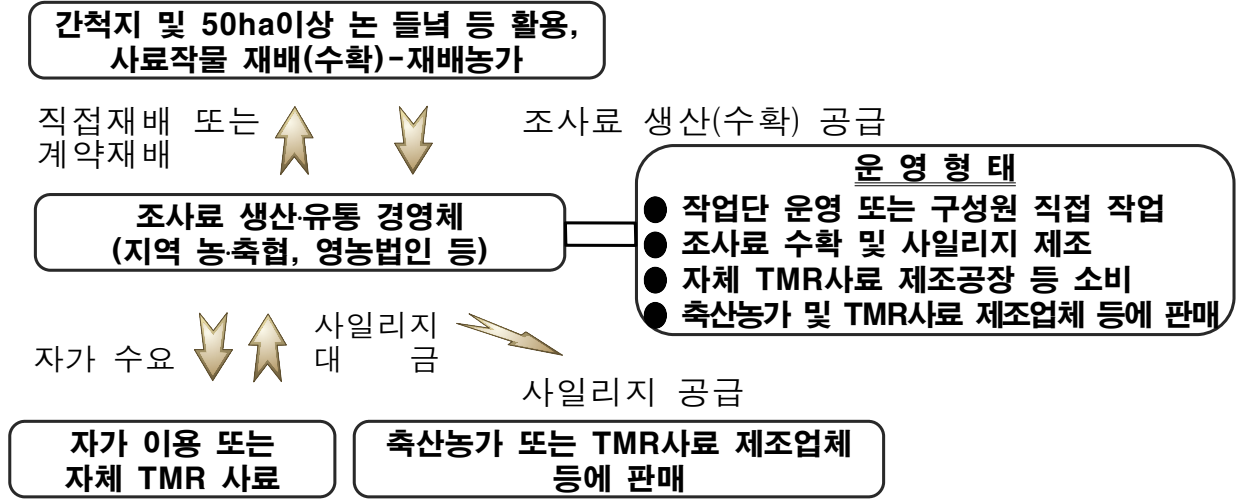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일리지 제조비 : 보조 100%(축발기금 보조 60%, 지방비 40%)
- 유통비 : 축발기금 보조 50%,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비 : (동계 사료작물) 60천원/톤, (하계 사료작물) 20천원/톤
 - 시·군에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시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로 하여금 중량을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함
- 유통비 : 실 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상한액은 30천원/톤 임
- 제조비 및 유통비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4>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 1호 사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체도 지원 가능

【조사료 생산·유통체계 및 운영방법 예시】



- 경영체의 사료작물 사일리지 생산·공급계약 체결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
 - 경영체는 보리·호맥 등 품목에 따라 재배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영체는 재배농가 소재 시·군에서 선정(지방비 확보)
 - 공급가격은 kg당 110원 내외로 하여 시·군과 경영체가 협의하여 결정
 - 재배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군에 재배농가 및 경영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재배농가에게 지급
 - 경영체 운영방법
 -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 추진
 - 경영체는 사료작물을 예취·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
 -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유한 장비를 경영체에 우선 임대
-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임대 추진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농가 :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농가,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시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축·낙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 *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는 <별표 3> 참조
 - 기계·장비 보조지원 대상에서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개별농가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시설 등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용량(1기당) : 50톤(78m³)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 * 공사가 진행 중인 간척지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통해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 기존 보유한 기계·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기계·장비 지원을 제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축발기금 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개별농가 : 용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자담 20%
- * 영농조합법인 및 농·축협에서 용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개별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용자지원 : 기 용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용자)되지 않도록 조치
- 장비구입단가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장비별 기준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 참조
 - 지원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의 경우 지원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형식검사나 안전검증 등을 받지 않은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을 확인
-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 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
-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 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② 위의 ①호 이외 장치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 2.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지원 기계·장비는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제조·수입업자, 별표 1·2 참조)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3 관리카드)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위반사항 등 발견 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기계·장비 지원시의 재배면적 이상은 유지토록 지원금액을 고려한 재배목표를 부여·
 관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재배실적이 없는 경영체는 사유서 징구 등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별표 1>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작업기명		6CM
형식명 (규격)	○○○○○ (○○○○○)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2 참조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2>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랙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라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과종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우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이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일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뽀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③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3. 지원대상

- 암모니아 처리비 및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볏짚 등 활용을 위한 암모니아 가스 구입비 및 처리비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비닐랩 사일리지를 제조할 경우 비닐 구입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09년 암모니아 처리비 지원단가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군별 실 거래가격으로 하되, 예산 형편상 보조지원은 '07년 공급단가(112,499원/1기)의 40%를 상한액으로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등으로 처리. 공급단가 하락시 상한액 조정 계획
 - ※ 암모니아 처리비는 '09년까지만 지원하며, '10년부터는 지원 중단할 계획이므로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가가 차질없도록 사전 지도·홍보 철저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반시설 :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지원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비”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동일한 용도(시설)에 대해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에서 중복지원 불가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도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 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목로)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 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 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설치하고, 2ha 이상 초지조성시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초지조성 : 축발기금 보조 50%, 축발기금 용자 50%
- 기반시설 : 축발기금 용자 80%, 자부담 20%
- ※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용자금 지원기준은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 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퇴·액비 활용)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낙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3. 지원대상

- 옥수수, 청보리, 호밀,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목초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촉발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청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한함
- 종자구입비는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역 농·축협 및 낙농육우협회 등을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을 지원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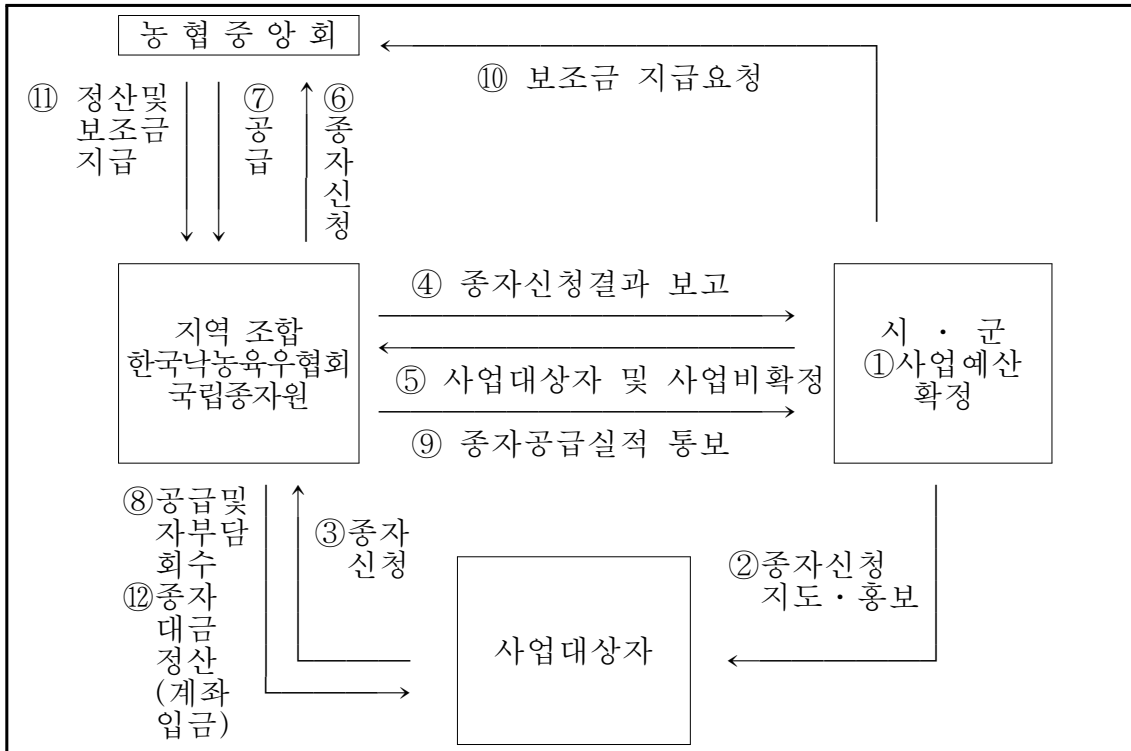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농·축협조합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촉발기금 지급요청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종자 공급 체계도



※ ⑥,⑦은 지역조합만 해당되며, ⑧ 종자대금 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⑥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청보리 등 국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금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하며, 이미 설치·운영 중인 생산자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조사료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및 시설 건축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가공 기계·장비구입 및 시설 건축비 등(토지 구입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액은 개소당 9억원 이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전년도 12월)

시·도(시·군)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사업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 접수보고

※ 사업신청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서식 2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3월)

- 농식품부에서 가내시 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군에 시달(전년도 9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경영체는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 체결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 ~ 10월말

- 경영체는 농가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사업신청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사업희망자는 향후 5년간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연차별 물량, 사용비율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에 제출('09. 1월말까지)

- ※ 사업신청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 하되, 생산자단체 현황, 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공급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부지확보 여부 등 기재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군·구 보조)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도로 제출('09. 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계획 검토시 특히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이행계획, 부지확보 여부, 생산자단체 현황, 원료 확보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수립
- 시·도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을 거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도 보조) 확보 및 지원 계획 등을 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09. 3월말)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 사업희망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및 시·도에서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사업비(제조시설 규모, 시설·장비 단가 등)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
 - 시·도의 검토를 거쳐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대상자가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제조시설에서는 수입조사료(화본과건초, 사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겠음”을 약속한 서류를 제출받아 첨부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조사료 유통비 지원》

- 농식품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는 세부시행요령을 수립한 후 각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통보(1월말)
 - * 시·도(시·군)은 경영체 및 한우회·낙우회 등 생산자단체에게 홍보
 - 세부시행요령 : 세부일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요령 등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사업 시행요령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구·판매 수요제출
 - 생산주체 :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를 제조 또는 확보한 경영체
 - 구매주체 :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구매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된 제조시설에서는 수입조사료 (화분과건초, 사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시·도(시·군)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시·군은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물량 확정후 <서식 4>, <서식 5>에 따라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추진(보고기한 : 전년도 11.10)
 - * 초종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대상자 확정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조사료 유통비 지원》

-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을 종자공급실적과 함께 <서식1>, <서식5>에 따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10.1.31까지)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시·군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 - 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경영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시·도(농식품부)에 보조금 신청하고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자금배정 통보
- 시·군은 사업비 집행(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후 그 결과를 <서식 1>, <서식 3>, <서식 4>, <서식 5>에 의거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동계 '09.7월, 하계 10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 배정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는 사업추진 종료시 추진결과를 <서식 7>에 의거 작성하여 자금배정 요청시 농식품부에 제출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조사료 유통비 지원》

- 농협중앙회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농기계 구입지원사업과 동일)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액비 및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암모니아가스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료작물 파종 후 1개월 이내 및 수확·사일리지 제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6>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배한 보리를 재배농가가 곡실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정부수매대상 보리에서 제외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수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 자원 확보·이용 계획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신규초지조성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준용 처리
-기성초지보완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 융자금 교부일	5년	기계·장비 양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일	5년	시설·기계· 장비 양도	

○ 보 고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3>, <서식 7>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중앙회
· 조사료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계획·실적 보고 * <서식 4>, <서식 5>	(하계) 당해연도 10월 (동계) 당해연도 7월	시·도
·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지원실적 * <서식 1>	(동·하계) 당해연도 10월	농협중앙회
· 사료작물·목초 종자 공급실적 보고 * <서식 6>	(하계) 당해연도 5월 (동계) 당해연도 10월	시·도, 농협중앙회
· 사료작물 파종실적 보고 * <서식 4> 참조	(하계) 당해연도 6월 (동계) 당해연도 11월	시·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서식 7>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제재》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3.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의 경우 시·도(시·군)에서는 연 1회 이상 원료사용 실적 등을 확인하고, 확약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보조사업비 회수 등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관계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조사료 자급률, 사료작물 재배면적 등의 전년도 성과를 측정
 - 조사료 자급률 : 국내 조사료 수요량 대비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
 - 사료작물 재배면적 : 종자공급실적(정책지원량 및 자가 확보량) 및 파종·수확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3월) : 시·도별 사료작물 종자 공급실적 집계, 파종 및 수확실적 등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측정
 - * 만족도 조사는 농식품부 정책평가팀에서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항목에 “조사료 생산대책 추진”이 반영(100점)되어 있음
 - 사료작물 재배율(20점), 소 사육두수당 사료작물 재배면적(20점), 사료작물 재배면적 증가율(60점) 등을 평가

《환 류》

-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금 및 표창 수여('0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0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09.1.20)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수산 식품부에 제출('09.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 2009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지원내용 : 2009년도 지원내용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09.1.20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젓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2010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보고기한 : '09.3월말)
- 농식품부는 예산(축산발전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예산 가내시 ('09.9월)
- 시·도(시·군)에서는 2010년도 지방비를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에 통보 : '10.1월

<서식 1>

2009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						실					
	물량			사업비(천원)			물량			사업비(천원)		
	톤	ha	계	보조	융자	계	톤	ha	계	보조	융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톤				(톤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체 - 개별농가	(톤				(톤					
④ 볏짚등 부존자원 활용 - 암모니아 처리 - 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기					기					
⑤ 초지조성 -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ha					
⑥ 기반시설지원 - 목로개설 - 용수개발 - 전기시설 - 부지정리 - 진입로 개설		km					km					
⑦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톤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설치지원		개					개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서식 2>

'09~'10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제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별표 3>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기계·장비 (예)

작업명	농기계명	규격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	100HP내외	
경운	플라우	4연	
정지	로타베이터리	200cm	60~70HP
			78~105HP
시비	퇴비살포기	4톤	
과종	과종기	2조	
		4조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400ℓ	
운반	트레일러	4톤	
예취	모우어	2.1m	
집초	레이크	3.0m	
근포장비	결속기	원형베일러	드럼폭174cm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	
	적재기	적재기(로더포함)	
합계			

※ 장비구입가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장비별 기준 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 준용

<서식 3>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설립연도											
3. 구성인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축발기금									-	
	지방비									-	
	자담									-	
	계	-	-	-	-	-	-	-	-	-	
나. 사업량(대)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계	-	-	-	-	-	-	-	-	-	-
7. 제조 운송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축발기금									-	
	지방비									-	
	계	-	-	-	-	-	-	-	-	-	
나. 사료작물 생산량(톤)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생산량									-	
다. 사료작물 재배면적(ha)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청보리										
	호밀									-	
	라이그라스									-	
	귀리									-	
	기타									-	
	계	-	-	-	-	-	-	-	-	-	

<서식 5>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연결체명	지 원 실 적													
		사 업 비 (천원)					사 업 량 (대)								
		추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트랙터 마력	트랙터 수량	에취기	짐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계	
	소 계														
	소 계														
	합계														

<서식 6>

2009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 가 확 보 분			계 (A+B)
	농협 중앙회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기타	소 계 (A)	자 가 채 종	자 채 구 입	
○ 사료작물종자								
- 청보리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호밀								
-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 귀 리								
- 유 채								
- 기 타								
소 계								
○ 목초종자								
합 계								

<서식 7>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보관)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성명 :
3. 사업대상자 성명·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천원 (100%)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 (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팀장 이상수 사무관 안규정	02-500-2090 02-500-2098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팀장 이환원 팀장 김진원	02-2127-7400 02-2127-1653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부과장 홍순찬 과장 이윤희	02-581-5721 02-581-5722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팀	국과장 정진국 과장 차근환	02-585-2223 02-585-2224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I. 사업개요

1. 목 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까지 80개의 사료공장이 HACCP을 적용토록 유도하고, 사료검사결과 위반율을 2.0%이하로 유지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HACCP인증 사료공장수 (대상: 96개 배합사료공장)	80	57	68	76	'10.1	HACCP인증기관(검역원) 의 인증실적 보고
▪ 국산 배합사료 검사결과 위반율(%)	2.0	1.5	2.0	2.0	'10.2	사료검사기관(각 시·도)의 사 료검사 및 처분실적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88,264	52,956	84,300	50,400	50,400
보 조	-	-			
용 자	87,571	52,571	83,900	50,000	50,000
지방비	-	-			
자부담	693	385	400	400	400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비는 '06년부터 종합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가)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나)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나)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나)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에 시달(전년도 12월초)
 - 주관기관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 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 중 선택 가능함
 -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토록 조치(전년도 12.5까지)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신청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전년도 12.10까지)
 -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 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공동구매 계약 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 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사료공장 HACCP 인증서 사본(해당 업체에 한함),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분리 현황(해당 업체에 한함), 공동구매 계약 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검토내용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전년도 12.15까지)
-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보(전년도 12월말)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함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또는 계획한 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P인증을 받은 공장(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는 예외),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또는 계획한 자, 국내산 조사료를 원료로 이용하는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업체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보고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및 분기별 사업계획 이행 상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제조시설자금은 기성고에 따라 자금 배정 가능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자가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제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0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제출('09.2.30일 까지)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희망자가 제출한 2010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09.3.15일 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09.3.30일 까지)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붙임 1 】

사료제조시설 사업 추진 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용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용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세부명세

세 부 시 설 명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 붙임 2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사업 추진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0/0 분기)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응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응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6. 사료원료 구매 및 생산·판매 실적(0/0 분기) (단위 : 톤)

원 료 종류별	구매실적			사 료 종류별	생산 및 판매실적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금액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옥수수 대두박 · ·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			
합 계				합 계			

※ 원료 구매량은 제조업체 당분기 동안 구매한 실적 전체를 작성

※ 사료 종류는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명을 기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팀 장 이상수	02-500-2090
		사무관 하옥원	02-500-2094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 환경 보전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저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7년 83%에서 '12년 90%까지 확대
 -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을 연차적 감축하여 '12년부터 "0"화 달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가축분뇨자원화율 (%, 주지표)	85	82	83	84	2010.2	○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 가축분뇨해양배출량 (천톤, 부지표)	1,200	2,607	2,019	1,700	2010.1	○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 관리시스템(해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50,942	62,304	96,010	118,256	117,016
보 조	17,251	22,510	31,289	50,807	50,751
용 자	16,863	19,884	35,097	24,602	24,600
지방비	14,724	17,300	26,184	38,645	38,145
자부담	2,104	2,610	3,340	4,202	3,52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경종농가
 -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자(생산자 단체, 액비유통센터, 가축분 퇴비 생산업체,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 등)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작목반, 민간전문 유통주체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농·축협
 - *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지원
 -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비 생산 업체(영농조합법인)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병 정착촌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경종농가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한 농가
 -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우선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와의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 공통 적용사항
 - '09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 (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은 공동자원화시설만 적용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비·액비화시설 : 퇴비화 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젓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다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10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 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공동퇴비장 :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 후숙·제품보관 창고
 - ※ 다음 시설·장비는 개별농가 지원 제외 :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의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 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큇카, 액비살포 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세부사업명	국비 보조	지방비	국비 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공동자원화시설	50	30	20		연 3%
정착촌구조개선	70	30			
액비저장조시설	30	50		20	
액비유통센터	40	40		20	
액비살포비	50	50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 시·도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음
- ※ 용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용자금은 조속히 반납(다만, 공동자원화시설 용자금은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²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m²)

축종	돼지	한·육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5	21	34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 면적은 제외)
- ② 젓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²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2003.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관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 ⑥ 한센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 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4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	3,000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설치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액비성분분석기	24				

-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기당 지원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④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⑤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의 경우 한국축산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시·군·구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춘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공동자원화시설 : 시·도(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다만,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단, 공동자원화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시·도별 자체 평가팀을 구성하여 우선순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농식품부에서 선정계획 별도 시달)

보조사업자(축산농가 등)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말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시설
 - 선정방식 : 친환경축산전문심의회 위원 중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공개발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세부계획,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실적 등) 등.
 - 사업자 선정 : 2009.12.중순까지 우선순위 결정
 - 대상지역 우선순위
 -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1~2천두)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
 -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예 : 연간 2만톤 이상)
 - 도시화 등으로 개별 농가에 처리시설 지원이 어려운 지역
 -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역
 - 사업자 통보 :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확정 통보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까지 확정·통보
 - * 사업 대상자 선정(확정) 전에 신용조사를 추가로 실시, 대출능력 등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추가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9.1.31.한 선정 통보)
- 우선순위
 - 시·도(시·군)는 가축분뇨 해양배출농가·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우선 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지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이용·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액비살포비는 공동자원화시설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공동자원화시설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군)의 농정심의회(가축분뇨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것
 - 단,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농식품부의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에 의한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을 것
 - * 사업타당성 검토단계 : 세부사업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준공전
 - 시·도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 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 규정에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용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승인내용을 직 상위 기관에 보고

보조사업자

-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시·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계획수립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허가청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 특성 및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 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 사업주관기관이 사업 완료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라. 기타사항

1) 사업 추진상 유의 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스키드로더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곳에 지원하고 구입 기종은 중기등록 대상이 아닌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가능,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가공왕겨분쇄기 및 왕겨 팽연화 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2)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활용

-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08.10)
 - 종류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퇴비단여과시설, 호기액비화시설, 액비저장조 등)
 - 열람처 : 시·도 및 시·군 축산과(축산담당부서), 지역축협조합 등에 비치분 열람

3)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자원화 시스템 : 농진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공동자원화 시스템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스템 선정(단일 또는 조합식)
 - 시스템 선정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시·군 협조)
 - ※ 공법선정위원회 : 사업대상자, 도(시·군),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 악취방지, 유지관리비, 퇴·액비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원화 시설 반입 원료 :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퇴비화의 경우 양돈분뇨를 50% 이상 이용,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 대상농가 : 기존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우선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해양배출량이 많은 농가 위주로 참여케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 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 참여
- 퇴·액비 저장시설 확보 : 퇴·액비 제조 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및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정화방류 등 처리방안 강구
- 보조사업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보조사업자(시공업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1>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보조사업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보조사업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집행)과 정산

가. 적용 원칙

- 사업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금(보조금·융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 및 정산

나.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시·군은 축산법 제3조 및 가축분뇨법 제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축산여건 등을 고려한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축산법 제3조 및 가축분뇨법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시·도의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도는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과 예산요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해당 시·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을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지자체),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보조사업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액 중 부족액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배정 요구 가능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서식 2·3 참조>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서식 2·3>에 기재된 증거서류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구비서류 첨부)에 의하여 확인
 -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도급표준계약조건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정51573-79('98.2.6)호 참조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용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제 사업자금 집행금액을 지원비율을 지켜 검정 및 정산처리(정산서의 1천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가 대상자 선정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등에 의거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대상자(가족 포함)의 자가노력비는 본 사업비의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체계 >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 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림수산식품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 집행·융자금대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해당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 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분기(2·5·8·11)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09년 6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동취소(인·허가 및 착공한 경우 즉시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법 적 근 거
○가축분뇨처리 시설기계·장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등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09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09. 3.31한	시·군(시·도)→시·도(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보고사항 별지<서식 4>
○ 2009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 사업추진실적보고	2009.12.31한	"	
○ 2008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0. 3.15한	"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09. 12.31한	시·군(시·도)→시·도(농림수산식품부)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업체는 3년간 사업참여 제한

6. 성과(지표)측정단계

- 가축분뇨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환경부 공공처리물량, 부산물비료 판매량 중 가축분뇨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천톤)
 - 해양경찰청(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데이터 활용
 - 측정시기 : 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지자체·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농림수산식품부)
 - 《 우수 지자체 》
 - 평가대상 : 전국 시·군
 - 평가대상 기간 : '09년 1월 ~ 12월(증감율 및 전년대비 실적은 2009.12월말 기준 적용)
 - 평가항목 : 가축분뇨처리 및 자연순환농업과 관련된 시책사업 추진실적, 교육·홍보 등을 대상으로 평가
 -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기간 : '09년 1월 ~ 12월
 - 평가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 발급 기준에 따른 액비 살포실적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 사업비 추가지원
 - 우수 지자체(시·군) 5개소를 평가·선정하여 개소당 500백만원 지원
 - 우수한 유통센터 6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80백만원을 지원하고, 운영 실적이 미흡한 유통센터는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09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0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9.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09.4월)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다만,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10년부터 공동자원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계획)
- * 액비살포면적 등 운영 실적이 미흡한 액비유통센터는 '10년부터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서식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갑)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입회관계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및 A/S 책임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p>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및 입회관계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불임서류 : 1.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지명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축분처리시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p> <p style="text-align: right;">갑(법인 대표) 인 을(공사수급인) 인 입회관계자 인</p>			

<서식2>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기계·장비>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적용 여부(0,x)	비 고
						계	국고보조	용 자	지방비 보 조	자부담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작성요령 >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집행액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 * 구입대상 신문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서식3>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시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계	국비보조	용 자	지방비보조	자 부 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	계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합 계	·						

< 작성요령 >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보조금·용자금) 금전출납부와 거래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특히, 보조 및 용자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와 통장거래는 따로 개설하여 정산 증빙자료 활용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하여 검정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서식4 : 엑셀>

()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총 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 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단위	사업량	계 획					실 적(정산)				국비보조	융자	국비보조	융자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개별시설 (농가)	퇴비화설																	
	액비화설																	
	정화설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개별시설 (법인체)	퇴비화설																	
	액비화설																	
	정화설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설																	
	액비화설																	
	정화설																	
	부대 기계·장비																	
	소 계																	

사업별	사업 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업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단위	사업량	계 획					실 적(정산)				국비보조	용자	국비보조	용자		
				국비보조	용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용자	지방비	자담						계
정착촌구조개선	퇴비화설																	
	액비화설																	
	정화설																	
	부대 기계·장비																	
	소 계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합 계																		

※ ① 1. 한육우, 2. 젖소, 3. 돼지, 4. 닭, 5. 기타가축(오리·산양·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본 서식에 의하여 별지에 작성 첨부함

② 개별시설(법인체 등), 공동자원화시설, 정착촌구조개선, 액비유통센터는 사업대상자별(농원별)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서식 5>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이용실적보고서

①도서종류 및 명칭	②공고번호 및 연월일	⑤활용실적		비 고
		③수량	④용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과장 석희진 사무관 김휴현	02-500-2062 02-500-2072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국내산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원 창출 및 증대에 기여
- 생활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주마 자급율 75% 유지, 경주마 능력 중위권 도약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경주마 자급율(%)	75±1	76.0	72.4	72.9	매년 1월	연간 경마장에 입사되는 신마 중 국산마 두수의 백분율
· 경주마 운영두수	2,330	2,184	2,163	2,258	매년 1월	매년 마사회가 운영두수 조사
· 경주마 주파기록	2:11.1	2:12.3	2:11.8	2:11.2	매년 1월	우승한 국내산 경주마 기록의 평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68,390	12,870	19,171	24,066	
보 조	4,521	2,998	3,840	6,167	
용 자	80,544	4,183	7,636	5,866	
지방비	4,521	2,998	3,840	6,167	
자부담	78,804	2,691	3,855	5,866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주마(제주마 포함)·승용마 사육농가
-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마필생산자협회(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등), 지자체, 한국마사회
- 비농업인(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 및 과잉마 입식에만 해당)

2.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주마(제주마 포함)·승용마를 1년 이상 사육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농가
- 마필관련 고등학교(학과) 이상을 졸업하거나 마필관련 전문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하고 마필을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
- 영농조합법인은 경주마(제주마 포함) 사육·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비농업인은 해당없음

3. 지원대상

- 경주마 또는 승용마 생산 및 육성·조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별표 1 참조)
- 승마 기반 조성에 필요한 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 사업 지원
- 제주마 혈통보전을 위한 종부소, 조련시설, 생산장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빈마(씨암말) 도입 자금
- 마사, 관리자, 창고 등 사육시설 설치 자금
- 실내·외 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로 등 조련시설 설치 자금
-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구입 자금
- 과잉마 구입 자금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 1년(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은 1~2년)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지자체 : 보조 50%, 지방비 50%
 -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종빈마 도입 : 용자 90%, 자부담 10%
 - 사육시설 등 그 밖의 사업 : 용자 70%, 자부담 30%
 - 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며, 지원비율에 적용되지 않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체험장·승마장 : 개소당 10억원(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 승마장은 15억원)
- 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3,000백만원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5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도에 시달(1월)

시·도(지자체)

-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2월)
- 시·군·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2월)
-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4월)
- 시·도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군·구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4월)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부지 확보·관련

법령 해소 가능여부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3월)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연리 3% 적용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8월~12월)
 - 서면심사는 필요성, 부지 확보, 인허가 해소기간, 지자체 참여도 등을 평가(8월)
 - 현장실사는 사업 타당성, 입지여건, 농가능력 등을 평가(10월)
 - 선정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단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말 생산농가 등으로 구성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평균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순위)를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12월)
 - 부지 미확보, 관련법령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① 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 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산촌종합개발 사업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험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로·임도·해안도로·자연휴양림 등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거나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② 공동육성조련시설

- 경주마 사육두수가 많거나 인근에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이 근거리에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

③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한국마사회의 종부 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2,000m² 이상) 및 방목장을 확보한 농가
- 시·군·구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자
- * 조합, 법인 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④ 공통

- 지원대상이 개인이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고등학교 이상 마필전문학교(학과) 졸업자 또는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지자체,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매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사업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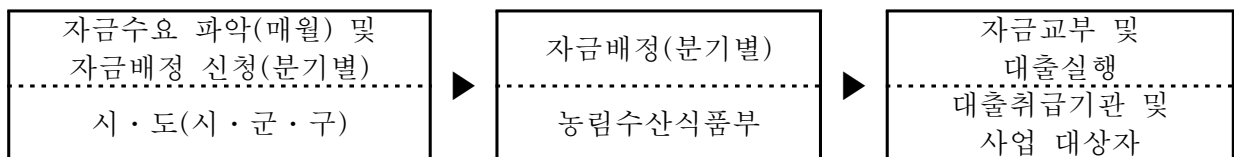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필요시 월별 사업비 요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농림수산식품부·농협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요청한 사업비 내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 대상자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지역 농협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에 따라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불가
- 사후관리기간
 - 승마체험장·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시설물 : 완공일로부터 10년간
 - 장비 등 기타 : 도입일로부터 5년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종빈마 도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점검 일정 : 상반기 1회(6월), 하반기 1회(11월)
 - 점검반 : 시·도 담당자 및 시·군·구 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용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등에 반영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 대상 : 승마체험장·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담당자 등
 - 점검 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2월)
- 주요평가지표 : 경주마 자급률, 경주마 운영두수, 경주마 주파기록 등
-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

- 경주마 자급률 : 연간 경마장에 입사되는 신마 중 국산마 두수 백분율
- 경주마 운영두수 : 매년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주마 두수
- 경주마 주파기록 : 우승 국내산 경주마 기록의 평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년 1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종빈마 도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 반기 말까지 매 반기 말까지	

《환 류》

○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불이익 부과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의 장 (시장·군수 인 경우 시·도지사 경유)은 2010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09. 4월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별표 1]

마필산업 육성비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종빈마	○종빈마 도입	-	-	90	10	3두/호이내	50백만원/두	○도입단가가 5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입단가를 적용
사육 시설	○마 사 ○관리사 ○창 고	-	-	70	30			○부속시설 포함
조련 시설	○실내마장 ○실외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 로	-	-	70	30			○종빈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육성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공동 육성 조련 시설	○개인 ○지자체	20 50	20 50	30 -	30 -			○개소당 30억원이내 ○마장(실내·실외·원형),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주로, 약·목욕장, 창고, 퇴비사에 지원
장비	○수송차량 ○그레이더 (주로정지) ○트랙터 등	-	-	70	30	1대/호 1대/호		○20두 이상 보유시만 지원 ○주로 보유시만 지원
과잉마	○타용도 활용	-	-	70	30	5두/호이내	5백만원/두	
승마 체험장 및 승마장	○개인 ○지자체	20 50	20 50	30 -	30 -			○개소당 10억원이내(체육 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승마장은 15억원) ○마장(실내·실외), 마사(10칸 이상),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주로 단가 적용), 과잉마에 지원

※ 기준 단가가 있는 경우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초과분은 지원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기 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5억원 초과 지원 불가(승마체험장·승마장·공동육성조련시설은 제외)

※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지방비가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

75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팀 장 노수현 사무관 박홍식	02-500-2076 02-500-2077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부장 김용철 팀 장 신용식	02-2080-6561 02-2080-6553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 할 필요성이 있어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이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가입율(%) (주지표)	90%	92.9	104.5	105.4	'09.12.	(계약암소수/연초가임암소수) × 100(%) *가임암소수는 통계청의 가축통계 자료 이용
▪ 가입두수(천두) (부지표)	870	722	894	1,016	'09.12.	'09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기간(전년도 12월~당해 연도 5월) 종료 후 가입두수 확인

주) 지자체의 인공수정료 지원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07~'08년도는 가임암소 두수 보다 초과가입으로 가입실적이 높게 형성되었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합 계	65,778	12,315	41,724	38,382	37,210
보 조	32,914	5,297	34,607	28,222	30,210
지방비	16,373	3,509	3,553	5,080	3,500
자부담	16,491	3,509	3,564	5,080	3,5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30만원/두)에서 지원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2009년도 계약신청 기간 : 2008.12.1~2009.5.31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09.1.1(계약일)~2009.12.31(1년간)

농림수산물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의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공고

- 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 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 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 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같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수산물식품부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 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09.5.31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점검 추진(연2회, 2009.8.31일 이후)
 - 계약신청기간(2009.5.31)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 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 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 제 재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의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 시·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 시장·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도, 시·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기간(2008.12.1~2009.5.31) 이후 가입실적 파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수 및 가입 두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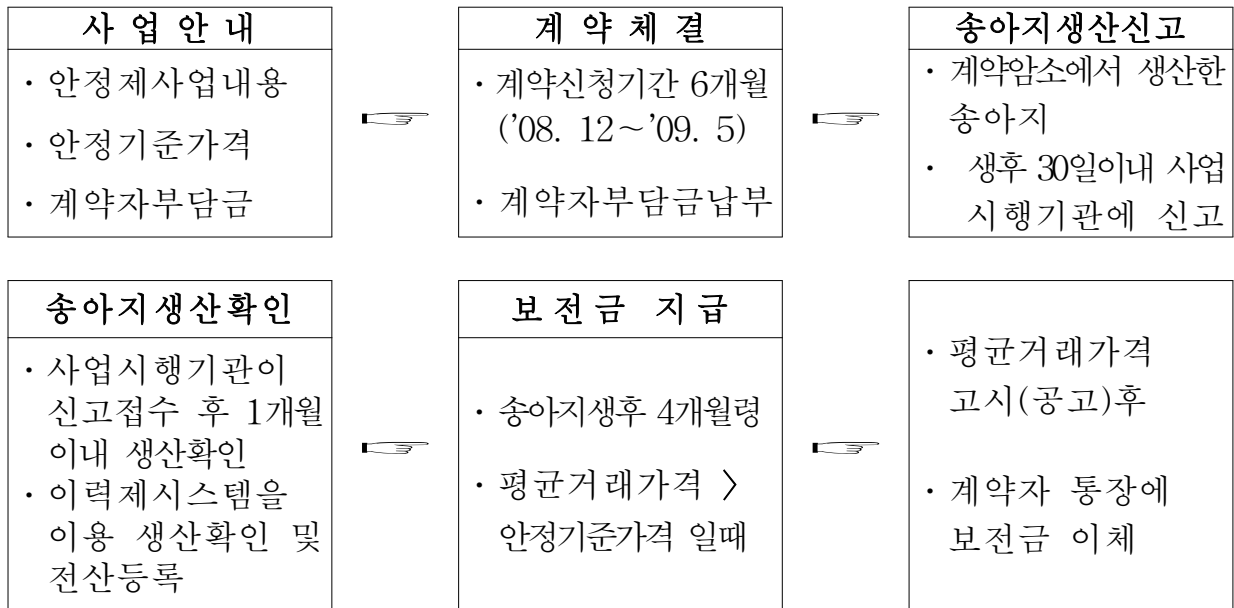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사업 참여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농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문조사 추진
 - 조사시기 : 매년 11~12월 중
 - 조사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50~100여명 대상)
 - 조사방법 : 사업시행기관 등을 통해 팩스, 우편으로 설문취합·정리
 - 조사주관 :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

※ 업무추진절차



IV. 20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

2. 20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팀 장 노수현	02-500-2076
		사무관 박홍식	02-500-2077

I.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주체 및 농가조직체 등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3개년 평균치)을 성과지표로 설정함(일부분 삭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P)		
▪ 한우1등급 이상 출현율(%)	55.5	44.5	50.9	53.6 ('08.10월 누계)	'10년 1월 중	'09.1~12월까지 한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	5,000	44,600
보 조	-	-	-	1,000	8,920
용 자	-	-	-	2,000	17,840
지방비 ^{주)}	-	-	-	1,000	8,920
자부담	-	-	-	1,000	8,920

주)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등

* 농가조직체는 농식품부에서 선발된 조직체를 말함(추후 공문 통지예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브랜드경영체,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에 대하여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자,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09년도 사업물량 : 5개소, 총 사업비 5,0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20%(400백만원), 융자 40%(800백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도는 사업광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사업희망자는 '08.12.30일까지 시·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09.1.15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도지사가 보관(농림수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시 시·군·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를 선정·통보('09.1.30일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시·군·구 협조 가능)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착공,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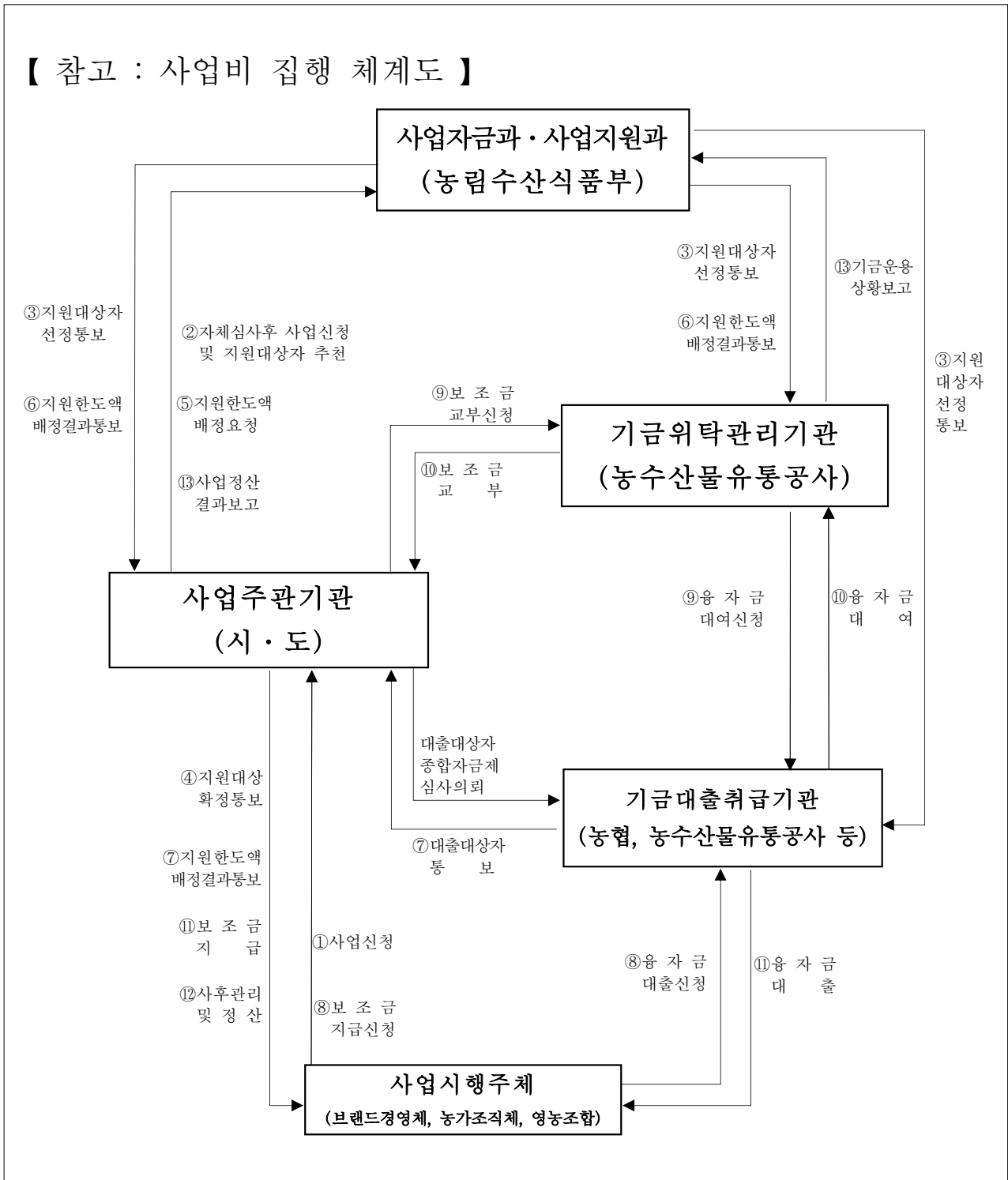
4. 자금배정단계(사업비 집행체계도 참고)

시·도(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
- 용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추진상황보고

-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08.2.29),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8호, '08.7.23),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조사되는 한우비거세 18개월령 체중 자료로 생산성 향상성과 측정 (농협중앙회 조사)
- '09년도 12월까지의 한우고기 1등급 출현율 파악(축산물등급판정소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해당 시·도에서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지 조사)
 - 조사문항(4개) : 정책 만족도, 사업체계 만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시 개선필요사항(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0.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09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09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0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용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08.12.3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 지원서 실사· 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09.1.15)	추천 → ← 지도/ 조정	· 현지실사(농림수산식품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 사업대상자 심의· 선정 ('09.1.30)
·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 보고서 검토· 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용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주민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분	'05	'06	'07	'08.1~1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09					'10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 내용	'09년도(1년차)												'10(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참여 경영체명 :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1,500두이상~2,000두미만 ○1000두이상~1,5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60 50 40 30 20		*'08.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중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08.9.30일까지 실적만 인정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100×0.1			*'08.9.30일 이전 기준 에 한함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추진 가능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08.11.15시점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물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수산물 품부(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브랜드 출하두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0두 이상 ○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 ○3,000두 미만 	20 15 10 5		*'08.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고려 *축산물등급판정소 확인서류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우선순위표

연 번	경영체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등 등록우 보유두수 (60)	사육 규모 (50)	HACCP (10)	추진 가능성 (30)	수상 (30)	브랜드 출하두수 (20)	계 (200)
1									
2									
3									
4									
5									
;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m²)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을 위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별지 제4호 서식】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계 호 (A)	보 조	용 자	지 방	자 담	계 호 (B)	보 조	용 자	지 방	자 담			
		○ 축사시설 : ○ 퇴비사 : ○ 관리사 : ○ 전기시설 : ○ 용수시설 :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77	양봉산업육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팀	팀 장 노수현 사무관 김영만	02-500-2076 02-500-2082

I. 사업개요

1. 목 적

- 밀원수 묘목을 보급하여 다양한 채밀활동이 가능한 양봉산업으로 육성하고 우수꿀벌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6	'07	'08		
▪ 군당 생산량(kg)	15	12	13	(14)	약년 1/4분기	양봉협회 벌꿀 생산량 추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00	288	2,100
보 조	100	250	1,740
지방비	-	38	360
○ 밀원수 묘목보급	-	188	1,800
- 보 조	-	150	1,440
- 지방비	-	38	360
○ 우수품종꿀벌보급	100	100	300
- 보 조	100	100	300
- 자부담	-	-	-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밀원수 묘목보급 : (사)한국양봉협회 시·군·구 지부
- 우수품종꿀벌보급 : 국내 우수품종 선발·보급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양봉장

2. 사업주관기관

- 밀원수 묘목보급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우수품종꿀벌보급 : (사)한국양봉협회

3. 지원대상

- 밀원수 묘목보급 : 묘목대 지원
- 우수품종꿀벌보급 : 육종장 관리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밀원수 묘목보급 : 묘목대 지원
- 우수품종꿀벌보급 : 우수꿀벌 품종 선발·보급을 위한 꿀벌 육종장 관리비
- 인건비, 조사연구비, 농가실험용(입식비, 교미상, 사료비, 방역비, 기자재 등)

5. 지원조건 및 사업의무량

- 밀원수 묘목보급 : 보조 80%, 지방비 20%
- 우수품종꿀벌보급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밀원수 묘목보급 및 우수품종꿀벌보급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지원조건대로 지원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전년도 12월말)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및 (사)한국양봉협회는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시·도는 '09.1.15까지, (사)한국양봉협회는 '09.1.31까지)
 - 밀원수묘목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는 검토후 시·도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교부신청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행

3. 자금배정단계

사업주관기관

- 사업진척도에 따라 소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통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수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이상 실시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 사용 및 부정 사용시는 자금회수 등 조치

5. 성과측정단계

- 사업종료 후 벌꿀 생산량 추정(기타가축통계 등 활용)을 통하여 군당 생산량 측정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이행상태 점검 및 성과측정으로 평가 실시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계획은 2009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2009.3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78	낙농체험관광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팀 장 노수현	02-500-2076
		사무관 이성주	02-500-2084
소속기관/단체	낙농진흥회	팀 장 조재준	02-6007-5541
		부팀장 김세용	02-6007-5546

I. 사업개요

1. 목 적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낙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 현장인 목장에서 우유의 위생·안전성의 신뢰확보를 통해 우유 소비촉진
- 가축방역 또는 낙농환경 미비로 인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목장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험현장으로 개발·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축산 및 낙농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낙농체험목장 20개소로 확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6	'07	'08		
▪ 낙농체험관광목장 개소수	4	-	-	4	'09.12월	'09년도 낙농체험관광목장 개소수 사업완료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400	400	400
○ 낙농체험관광					
- 보조	-	-	-	-	-
- 용 자	-	-	400	400	400
- 지방비	-	-	-	-	-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장을 경영하며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친환경 축산농가로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지닌 목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경력 5년 이상인 낙농가 또는 낙농후계자로서 목장환경이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목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낙농가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는 제외

3. 지원대상

- 체험시설설치 : 관람용 트레일러, 치즈체험장 및 제조설비 등
- 환경개선 : 사용자 편의시설, 진입로 및 주차시설 포장공사 등
- 프로그램 개발 : 체험목장 연수교육, 홈페이지구축, 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낙농체험관광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개선비,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하여 융자지원

※ 자금지원 용도

- 목장 관람용 트랙터 트레일러 제작
- 치즈 체험장 건립 또는 치즈 제조설비 구입
- 체험객 편의 시설(휴게공간, 옥외 화장실 등) 공사
- 진입로 확장(포장) 또는 주차장 공사
- 국내·외 낙농체험목장 연수교육
- 소비자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 기타 낙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융자 100%(무이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09년 사업지원 개소수 및 금액 : 4개소 4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기준 지원금액 : 100백만원
 - ※ 지원 신청내역을 감안하여 기준 한도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개소수, 지원금액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시·도 및 낙농진흥회)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낙농조합, 낙농관련기관(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낙농체험관광사업 농가 홍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을 통해 낙농체험관광사업 희망 대상자 중 선정요건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낙농진흥회장에게 송부(1.16)

※ 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개요, 사업 추진일정, 견적서 등)
- 목장부지 배치도(향후 변경사항 포함, 별표 2 목장부지 작성예시도 참고)
-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축산업등록증(시·군 발행)
- 목장 경영경력 확인서(납유업체 발행)
- 젖소 검정사업 참여 확인서(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 발행)
 - 젖소 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경우에 제출

※ 시·도지사 의견서

- 낙농체험 관광사업 신청 대상자의 목장여건, 사육환경 등 향후 발전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사업신청대상자를 「별표 1. 낙농체험관광사업 신청자 평가표(안)」에 의하여 심사·실사하되,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실사 실시
- 낙농관련기관(단체)으로 구성된 「낙농체험관광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신청자 평가실시

- 낙농진흥회는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 평가결과와 신청자의 심사항목 내용을 종합한 현황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6)

※ 사업자 평가시 가산점 부여 조건

- 시·도(지자체), 낙농관련 기관(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 사료포 또는 방목용 초지가 확보된 농가
- 시설이 현대화되고 분뇨처리 시설이 확보된 농가
- 목장형 유가공 시설 운영 농가
- 낙농후계자 확보 농가
- HACCP 인증목장

※ 사업자 평가시 감점 부여 조건

- 낙농자조금 미납부 농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 및 낙농진흥회에 통보(2.10)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낙농체험관광사업 시행지침 작성·시달(12월 경)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장은 선정된 사업 대상자를 해당 농가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대출을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낙농진흥회(사업주관기관)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대출 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후 사업 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 사업 대상자는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자금 수령하고, 대출 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 즉시 낙농진흥회장에게 통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 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 취급기관은 대출 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후 대출 실시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대출 실행내역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낙농진흥회)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추진기간 중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이상 현지 점검 및 운영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보고(별지 제3호 서식, 정산결과서 및 사진 첨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낙농진흥회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 (상·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실적 및 지원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낙농진흥회)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제재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 자금집행 세부요령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로 계약서(1천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비치 (원본은 사업대상자 비치, 사본은 사업주관기관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57호)에 따름
- 취득한 재산 관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회수시 까지 사후관리
 - 내구 년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사업대상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낙농체험관광목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업성과로 측정

《만족도 조사》

- 낙농체험관광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중
 - 조사대상 : 낙농체험관광사업 대상자
 - 조사내용 :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과정 시 애로사항, 자금지원 규모 적정성 등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우편)
 - 조사주체 : 낙농진흥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낙농진흥회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매년 12월말까지
 - 성과측정 자료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평가기준 : 낙농진흥회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실시
 - 체험목장 방문인원수 및 방문자 유형 등
 -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낙농체험관광사업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금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사업대상자		낙농진흥회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 사후관리	· 현지실사 · 사업대상자 심의 ·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추천 → 통지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출 → 사후관리	· 현지점검.운영지도 ·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보고	보고 → 사후관리	·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낙농진흥회 합동조사)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09년 4/4분기 중에 시·도(시·군) 및 낙농관련기관(단체)를 통해 낙농체험 관광사업 희망 낙농가 수요조사 실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1>

낙농체험관광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목장명 :)
- 사업자 주소 :
- 연락처 : ○ 목장설립년도 : 년 (종사자수 : 명)

2. 목장현황

사육두수	젖 소 : 착유우- 두, 건유우- 두, 육성우- 두, 송아지- 두 기타가축 : 육우- 두, 한우- 두, 말- 두, 기타()- 두
생산현황	일생산량- ℓ/일 (납유업체-), 분뇨처리방법-
시설현황	목장부지- m ² , 축사면적- m ² (축사동수 : 동) 사 료 포- m ² , 방 목 포- m ² , 기타시설- m ² (용도-)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사업비			
		보조	융자	자담	계
계					

-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예상효과(낙농체험목장 운영계획 포함)
- 연차별 상환계획

4.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 목장소개서(목장현황 및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동기 등, 목장 전경·시설 사진)
- 목장부지 배치도(별표 2 참조), 시설설치 등 견적서,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축산업등록증, 각종 증명서(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목장 지정증명서, 젖소 검정사업 참여 확인서, 목장유가공시설 운영농가 확인서, 낙농후계자 명단, HACCP 인증서, 목장경영경력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별지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	번호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 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지 3>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명 :
- 농장명(사업자 성명) :
- 주 소 :
- 사업내용 :

추진(완료)내용

구 분	농 장 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용자 (A)	자담	계	용자 (B)	자담		
		소 계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기타

- 사업 완료시 시설 설치 사진 등을 첨부

〈별표 1〉

낙농체험관광사업 신청자 평가표(안)

□ 사업 신청자 : (목장명 :)

□ 평가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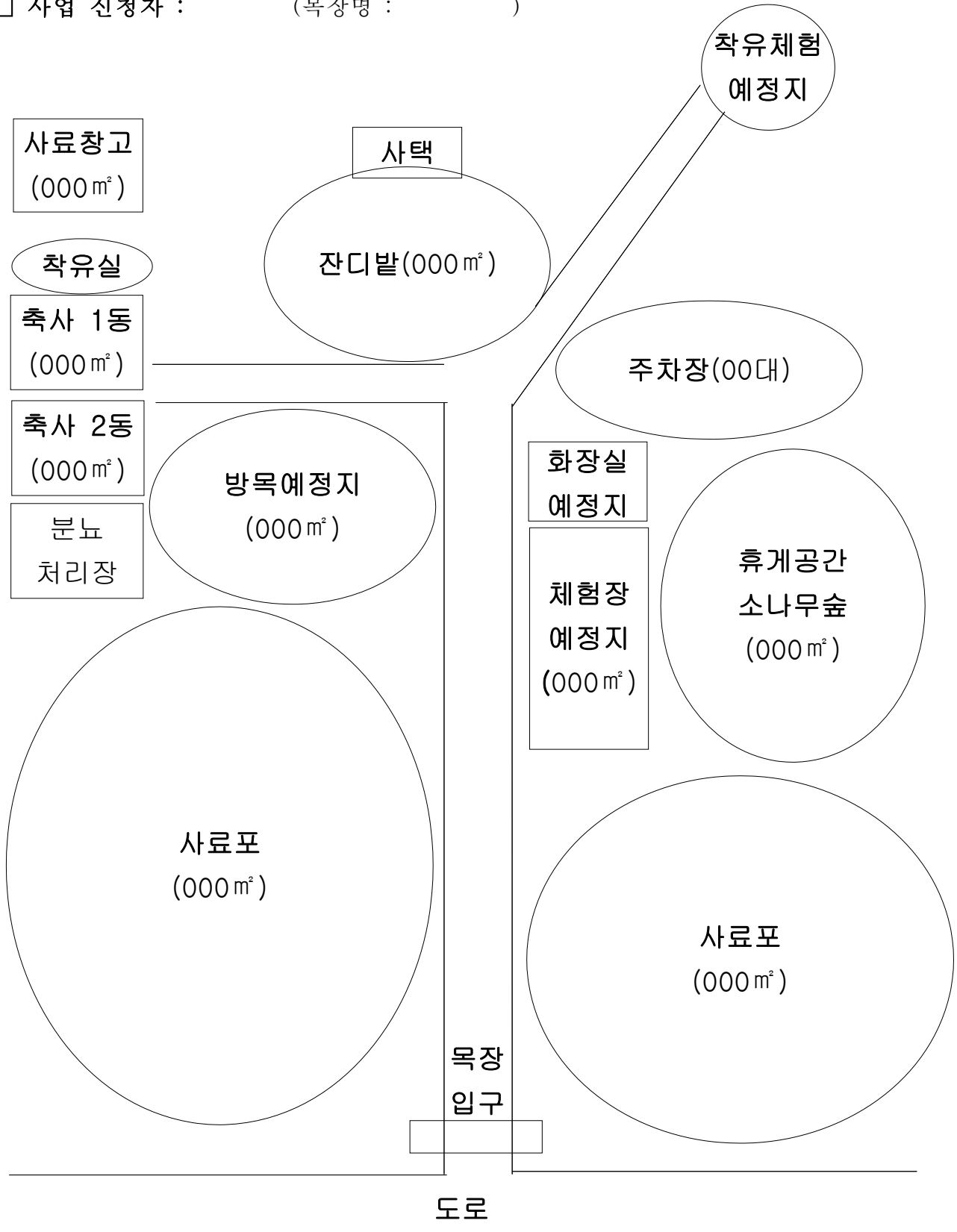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경력 및 자질 (33점)	사업신청자 의식 및 자질	18
	사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 적정성	
	낙농체험 관광사업 참여 동기	5
	낙농후계자 확보 여부	
	낙농분야 표창 수상여부 (깨끗한 목장 등)	
낙농체험 운영 경험 보유	5	
사육환경 (30점)	사육두수 대비 축사규모 적정성	15
	축사, 착유실 등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분뇨처리장 확보 및 운영 적정성	5
	HACCP 인증 목장	
	젖소 능력검정사업 참여	
목장부지 내 방목 가능한 초지 또는 사료포 보유	8	
목장환경 체험여건 (22점)	체험객 편의시설(화장실, 휴게공간)	10
	목장내 체험객을 위한 체험공간 및 편의공간 활용도	
	주변 도시에서의 접근성	3
	목장입구 방역시설 설치	3
	주차장 확보 또는 조성가능 여부	3
	악천후 대피시설 확보 여부 (60명 기준)	3
체험프로그램 (15점)	목장체험 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계획	8
	치즈공방, 체험장 설치 및 운영 계획	4
	치즈 등 유가공품 생산기술 보유	3
계(A)		100
감점기준 (△25점)	목장내 대형버스 진입 불가	△5
	목장 진입로 주변 혐오시설 여부	△5
	체험객 안전 위협요소 및 시설물 여부	△5
	목장내 체험관련 시설물 추가설치 불가	△5
	낙농자조금 미납부 농가	△5
소계(B)		△25
합 계 (A-B)		

<별표 2>

목장부지 배치도 작성 예시

(수기작성 가능)

□ 사업 신청자 : (목장명 :)



【축산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축산경영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팀 장 최대휴 사무관 김대균	02-500-2101 02-500-2105
	축산경영팀	팀 장 노수현 사무관 김영만 사무관 이성주	02-500-2076 02-500-2082 02-500-2084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팀 장 정연도	02-2080-6566
(사)한국육가공협회	-	부 장 최진성	02-588-1264~5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과 장 한덕래	031-394-8147~9

I. 사업개요

1. 목 적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 국내 축산관련업체 경쟁력 제고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LPC 등 위생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도축장의 점유율 상승 유도
 -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적용 확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LPC 도축 점유율 (%)	26	20	22	24(P)	익년 1월	도축실적 보고자료 참고
▪ HACCP적용가공장 (개소)	900	280	300	350(P)	당해연 도 12월	전국 HACCP지정 가공장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88,717	160,930	171,247	145,714	145,714
용 자		178,238	153,020	157,941	120,000	120,000
자부담		10,479	7,910	13,306	25,714	25,714
시설자금 (소관부서)	○ 소 계	34,929	26,360	44,347	85,714	85,714
	- 용 자(70%)	24,450	18,450	31,041	60,000	60,000
	- 자부담(30%)	10,479	7,910	13,306	25,714	25,714
(축산물위생팀)	○ 도축장 시설현대화	10,000	5,715	5,715	15,714	15,714
	- 용 자(70%)	7,000	4,000	4,000	11,000	11,000
	- 자부담(30%)	3,000	1,715	1,715	4,714	4,714
(축산물위생팀)	○ 도축장 시설보완	3,500	3,500	3,082	18,126	18,126
	- 용 자(70%)	2,450	2,450	2,157	12,688	12,688
	- 자부담(30%)	1,050	1,050	925	5,438	5,438
(축산물위생팀)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10,714.5	8,572	8,084	28,900	28,900
	- 용 자(70%)	7,500	6,000	5,658	20,230	20,230
	- 자부담(30%)	3,214.5	2,572	2,426	8,670	8,670
(축산경영팀)	○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10,714.5	6,858	6,466	4,914	4,914
	- 용 자(70%)	7,500	4,800	4,526	3,440	3,440
	- 자부담(30%)	3,214.5	2,058	1,940	1,474	1,474
(축산경영팀)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1,715	21,000	18,060	18,060
	- 용 자(70%)	-	1,200	14,700	12,642	12,642
	- 자부담(30%)	-	515	6,300	5,418	5,418
운영자금 (소관부서)	○ 소 계	153,788	134,570	126,900	60,000	60,000
	- 용 자(100%)	153,788	134,570	126,900	60,000	60,000
(축산물위생팀)	○ 도축장 운영자금	63,707	63,750	60,116	33,850	33,850
	- 용 자(100%)	63,707	63,750	60,116	33,850	33,850
(축산물위생팀)	○ 오리도축·가공장 운영자금	1,891	1,670	1,575	1,500	1,500
	- 용 자(100%)	1,891	1,670	1,575	1,500	1,500
(축산물위생팀)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50,000	40,000	37,720	21,500	21,500
	- 용 자(100%)	50,000	40,000	37,720	21,500	21,500
(축산경영팀)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3,150	2,550	2,405	2,150	2,150
	- 용 자(100%)	3,150	2,550	2,405	2,150	2,150
(축산경영팀)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35,040	26,600	25,084	1,000	1,000
	- 용 자(100%)	35,040	26,600	25,084	1,000	1,0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 ① 도축장 시설현대화 >

1.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돼지)을 통폐합하여 신규 도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도축장 2개소이상을 통폐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기타가축(소·돼지·닭·오리 외)의 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도매시장 기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LPC 운영자

3. 지원대상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도축·가공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오·폐수 처리시설 등
 - * 신규도축장 도축능력(두/일)은 통폐합대상 도축능력 합계의 70%이하로 제한함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부분육 상장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도축 및 가공시설을 위한 건축·시설비용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부분육 상장 및 도매시장 기능설치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촉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도축장 통폐합사업 : 거치기간 0% 적용 확정시 추후 통보
- 도매시장 기능 설치
 - 촉발기금(융자)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② 도축장 시설보완 >

1.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돼지·닭·오리) 영업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08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30%)·중위(33%)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 * HACCP 운용수준이 중위등급인 도축장은 '08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소 6,000두/년 또는 돼지 180천두/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닭 도축장
 - '08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30%)·중위(33%)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 오리 도축장
 - '08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1,500천수/년) 이상인 도축장 영업자
- 기타가축
 - 양(염소 포함)·사슴 등 기타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기존 도축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
 - 도축장 영업자가 가공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가공시설도 일괄지원 가능
- 도축 오폐수처리를 위한 환경시설(혈분제조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돼지·닭 도축장
 - HACCP 관련시설 개보수비용
 - 오·폐수 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개보수비용
 - 전자경매시설 등 부분육 상장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도매시장 및 공판장)
 - 토종닭 도계라인 증설 및 개보수비용(닭 도축장)
- 오리 도축장
 - 도축·가공을 위한 시설과 오·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비용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촉발기금(용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③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업체
 - 축산물생산시설 등의 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를 하고자하는 자
- 신규업체
 - 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 * 다만, 도축장이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식육가공업(한우부산물가공장 등 포함) 영업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기존업체 : 건물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등
- 신규업체 :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업체
 -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공·저장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 등
 - * HACCP 적용 또는 계획(계약서 사본 첨부 등)중인 업체에 우선 지원
- 신규업체
 -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건물, 가공·저장시설 및 장비 등 시설물 설치비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촉발기금(용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영업장 운영현황, HACCP 적용 또는 계획여부 등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④ 계란가공장 · 집하장 및 등급시설 >

1. 사업대상자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 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가공장 · 집하장 시설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 축협, 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 * 우선순위
 - 1순위 : 양계관련 업종별 축협조합
 - 2순위 : 브랜드계란(품질인증 또는 상표등록 받은 것에 한함)을 생산하고 계란등급판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3순위 : 계란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유통시키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3. 지원대상

- 계란 가공 · 집하에 필요한 건축물 등 시설, 계란등급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가공장 · 집하장 시설
 - 건축물, 운반 · 보관시설, 각종 기계 · 장비(부지매입비 제외)
- 계란등급시설
 - 계란 인쇄기, 포장 · 저장 · 운반시설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촉발기금(용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1. 사업대상자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3. 지원대상

-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설치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등 설치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촉발기금(용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⑥ 도축장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소·돼지·닭 도축장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08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30%)·중위(33%)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 * HACCP 운용수준이 중위등급인 도축장은 '08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소 6,000두/년 또는 돼지 180천두/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닭 도축장
 - '08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30%)·중위(33%)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소·돼지·닭 도축장 제반 운영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건설자금 부채상환, HACCP 운용비용 및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일반도축장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 공통사항 : 당해년도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용자) 100%, 연리 0~3%, 1년거치 일시상환
 - 도축장HACCP운용수준 상위등급업체는 0%, 중위등급업체는 3%금리 지원
 - *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임차)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형태를 구성하여 생산·구매·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와 관계없이 LPC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3%금리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정부지원 LPC : 40억원 이내
- 일반도축장,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 10억원 이내
- 공통사항 : 지원대상 업체의 도축능력의 합(소 또는 돼지 기준)이 전년도 전국 도축물량(소 또는 돼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여 운영자금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⑦ 오리도축·가공장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오리 도축장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08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1,500천수/년) 이상인 오리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오리 도축장 및 가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 오리고기 가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오리 도축장은 일괄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⑧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운용중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로서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영업자

3.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육포장처리업
 - 전년도 지원액,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 지원규모는 원료육 구매실적 50%, 사업신청서상의 원료육 도축장 득점비율 50%를 적용하여 결정
- 식육가공업
 -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

○ 공통사항

-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2년 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90%까지 지원(연차적으로 지원 축소)
- *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최대 100%까지 지원

< ⑨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계란등급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란 수집·판매 등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용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900백만원

< ⑩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

1. 사업대상자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물량을 이관받는 유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물량을 이관받는 유업체

3. 지원대상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원유 이관에 필요한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낙농진흥회 소속농가의 잉여원유 이관에 필요한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용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자금 : 주관기관(시·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시·도 전달 및 홈페이지 게재 조치(전년도 12월)
 - 필요시 사업별 기본계획 등을 시·도에 시달
 - * 대상사업 : 도축장 시설현대화, 도축장 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또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
 - 필요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신청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1월말)
 - 도축장 시설현대화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 현황 확인서[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도축장 통폐합사업 희망시 사업신청자 통합공증각서)
 -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 도축장 통폐합사업 계획서에는 신규 도축장의 소·돼지 도축능력(두/일)이 통폐합대상 2~3개소 도축장의 도축능력 합계의 70%이하로 제한하여 계획되어야 함
 - * 도축장 통폐합사업의 통합공증각서는 사업완료 즉시 기존 도축장 1~2개소이상 폐쇄 및 도축업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공증각서임

- 도축장 시설보완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
 -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
 -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 시설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도(지자체), 농협중앙회 및 협회

- 공통제출자료(1월말까지 전달)
 - 신청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시·군·구)는 사업희망자의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검토내역) 및 채무변제능력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
 - * 사업세부내용 검토 없이 단순 경유성 의견서 제출은 배제하며, 사업자선정 시 계획성 있게 완료하여 농정시책에 부응하고 예산불용이 없도록 실질적 검토 실시
 - 신청조직에서 제출한 서류(사본) 첨부
- 기타 제출자료(1월말까지 전달)
 - 도축장 시설현대화
 - * 도축장 통폐합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즉시 폐쇄대상 도축장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상기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
 - * LPC 도매시장 기능설치 : 시·도지사는 지원조건(용자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검토내역을 상기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

《운영자금 : 주관기관(시·도, 농협중앙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시·도 전달 및 홈페이지 게재 조치(전년도 12월)
 - 필요시 사업별 기본계획 등을 시·도에 전달

- * 대상사업 : 도축장 운영자금, 오리도축·가공장 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또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
 - 필요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신청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1월말)
 - 도축장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5),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증빙서류를 시·군·구(시·도지사)에 제출
 - 오리도축·가공장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7),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증빙서류를 시·군·구(시·도지사)에 제출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8),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증빙서류를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제출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시·군·구(시·도지사)에 제출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 사업계획서(별지9)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해당 낙농조합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낙농조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 * 참고사항 : ①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②증빙서류는 도축검사증명서, 원료구매대장(또는 생산실적 보고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시·도(지자체), 농협중앙회 및 협회

- 사업신청서 전달(1월말)
 - 도축장 운영자금 : 시·군·구 경우 사업신청서(별지5) 외 선정기준표(별지6) 및 의견서를 시·도에서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함께 제출
 - 오리도축·가공장 운영자금 : 시·군·구 경우 사업신청서(별지7) 및 의견서를 시·도에서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함께 제출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사업신청서(별지8)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 공통사항 : ①상기 사업별 의견서 제출 시 사업자가 계획성 있게 완료하여 농정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예산불용이 없도록 실질적인 검토 실시
 - ②사업신청서상의 각 항목을 확인 후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정
 - 보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협회)에서 보관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8 준용)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설자금》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에서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하여 제출
 - 주안점은 상기 “1. 사업신청단계(시설자금)” 참조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서 등 다음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2월)
 - 도축장 시설현대화 : 시·도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사업예정부지, 통합공증각서 등 구비서류를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 주안점(공통)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 선정 시 제외
 - * 주안점(사업별)
 - 도축장 통폐합 : 시·도 종합검토 의견서, 신규 도축장의 도축능력 및 공증각서
 - 기타가축 도축장 및 LPC내 도매시장 설치 : 시·도 종합검토 의견서
 - 도축장 시설보완 :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사업예정부지, 기타자료
 - * 주안점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 시 제외,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시·도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등
 - * 주안점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 시 제외, 시설개요·계획·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육 확보 및 판매 계획,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
- 시설자금의 경우 전년도 사업비 이월,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 등으로 사업 예산 집행·운용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향후 2년간) 사업자 선정 시 제외하여 동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고려

《운영자금》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및 협회에서는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하여 제출
 - 주안점은 상기 “1. 사업신청단계(운영자금)” 참조
 - 아울러, 운영자금 사업신청서가 실적보고서를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사업자 집행내역을 점검한 후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공통사항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 시 제외
- 사업계획서 등 다음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2월)
 - 의견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현황(운영수지),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 효과 등 구비서류를 종합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필요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통보(1월)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변경사항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연중 수시)

사업주관기관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검토 승인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결과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신청조직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
 - 시설자금 및 도축장 운영자금은 시·도(시·군·구 경유)에 신청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은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신청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에 신청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 내역을 보고

사업주관기관

- 신청조직의 사업진도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축발기금(용자) 배정요구
- 대출취급가능기관을 사전에 차질 없이 파악(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신청[축산발전기금 대출기관 추가확대 및 지침 : 축산정책과-23호('06.01.03.) 참고]
-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팀 및 축산물위생팀은 매월 5일, 20일 각 시·도로부터 취합한 축발기금 배정요구서를 분류하여 축산정책팀에 배정요구
- 축산정책팀에서는 축발기금 배정 통보
 - 축발기금 배정요구 사업과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
- 축산경영팀 및 축산물위생팀은 해당 사업별로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축발기금 배분내역 통지

시·도(지자체), 농협중앙회 및 협회

- 해당 시·군·구는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토목·건축공사 자금집행 시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 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설자금 지원사업의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 축산물위생팀(02-500-2105~6) : 도축장 시설현대화, 도축장 시설보완, 축산물 가공업체 시설
 - 축산경영팀(02-500-2082, 2084) :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 시·도 :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축정과 등)
 - * 시·군·구 : 담당과(축산과 등)
- 운영자금 지원사업의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사업담당부서
 -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 축산물위생팀(02-500-2105~6) : 도축장 운영자금, 오리도축·가공장 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축산경영팀(02-500-2082, 2084)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 * 시·도 :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축정과 등)
 - * 농협중앙회 : 축산지원부(유업체 경영안정자금에 한함)
 - *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에 한함

사업관리주체(시·도 등)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점검 및 지도 실시
 - *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추진내용 관리·점검
 - * 건설추진상황(부진 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현황을 수시 체크하여 업체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사업포기서 제출(보고)
 - 자금집행 완료 등 사업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완료 보고하며,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 대출취급기관 등으로부터 실행일자 등 확인
 -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는 축발기금(융자금) 회수 시까지로 함
 -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운영자금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 * 도축장, 오리도축·가공장, 축산물가공업체 등 운영자금 사업신청서가 실적보고서를 겸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현황을 보고받아 확인할 것
 - * 대출취급기관 등으로부터 실행일자 등 확인
 - 사업목적을 위배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원료구매자금 및 출하약정선도금 등의 집행에 필요한 계약서는 업체 자율 서식에 따라 체결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라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농림수산식품부

○ 연 2회 사업점검 실시

- 사업관리주체로부터 받은 보고자료 검토 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현지 실사(점검) 검토/결정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시설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산집행에 차질을 주는 사업대상자에게 향후 2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동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 당해연도 사업신청자 또는 선정자중 동종 또는 동일사업을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지원(선정)받은 자
- 사업선정자의 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 당해연도 또는 이월사업의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 등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사업관련 전년도 성과를 평가
- 성과지표 내역

연번	평가지표	측정	설정사유
1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도축점유율(%)	익년 1월에 보고되는 도축실적에 따라 전국 및 LPC 도축물량 대비	정부자금 지원에 대한 지표로서 대표성이 있음 - 위생·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HACCP 운용 여부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지원효과가 가시적임
2	HACCP적용 축산물가공장 개소수	'09.12월말 HACCP 지정 현황 확인	

○ 만족도 조사(필요시)

- 업체 운영실태, 시설·운영자금 적정성, 만족도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지원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 실시
- * 조사시기 : 당해연도 11~12월중
-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대상자 등
-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당해연도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지연 및 예산 이·불용 최소화 노력

《환 류》

-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운용에 차질을 준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사업자 선정 시 제외하여 동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계획은 2009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09.1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2009년도 사업지침에 준하여 사업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실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지침에 준하며, 달라지는 사항은 사전 예고 예정

<별지1>

도축장 통합 사업계획서

1. 개 요

- 사업추진 주체·도축장 명 :
 - 통합예정인 기존 도축장 명(허가번호) :
- 사업추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 도축업 운영 년 등
-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전화·이메일 등)
- 사업추진 소재지 : (주소)
(부지·입지 여건) 인허가 추진사항 등
- 신규사업 도축장 총 사업비 : 백만원(용자 , 자부담)
- 신규사업 계획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의 최근 3년간 도축실적(두/일) :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 도	비 고
합 계			
•			
•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설분야 :
 - 시설·장비분야 :
 - 인수자금 :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이전·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흐름도
- 기존도축장 통합추진 세부계획서

3. 기타 관련자료(첨부)

<별지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지3>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체 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용자 (A)	자담	계	용자 (B)	자담	
가공장 개보수(예)		○가공장 건물 :										
		○가공장 기계설비 :										
		○냉장·냉동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 :										
		소 계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별지4>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표

(시·도지사 작성용)

신청업체명 :

영업의 구분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중 기재)

평가항목	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시설 신축		득점	비고
	세부내용	배점	세부내용	배점		
부지요건	①도축장 부지내 운영중인 경우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 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40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 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25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 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10 ※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④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08년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상위 도축장에 신축하는 경우 60 -'08년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중위 도축장에 신축하는 경우 30 -'08년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상위 및 중위 도축장이 아닌 도축장에 신축하는 경우 0			
	②도축장 부지의 운영중인 경우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 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30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 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15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위 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의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0 ※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⑤도축장 부지의 식육가공업 영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30			
HACCP	③HACCP 운용 -현 영업장에서 이미 적용중인 경우 60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이미 맺어 적용계획일 경우 40 -단순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0		⑥HACCP 운용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이미 맺어 적용계획일 경우 40 -단순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0			
계(100)	-	100	-	100		

※ 주1) 사업자 선정 시 “시설 개보수·증개축” 및 “시설 신축” 대상자 별도 선정

※ 주2) 사업자 선정 : 배점 = ①+③, ②+③, ④+⑥ 및 ⑤+⑥

<별지5>

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신청자 현황

- 업체명 :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08. .)

2. 경영현황

가. 생산 및 도축분야(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단위 : 두, %)

구분	연간 도축물량 (A)			계열농가 출하물량 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전년실적									
금년계획									

나. 가공분야(가공·포장육 생산비율) (단위 : 두, %)

구분	연간 도축물량 (A)			당 도축장 부지내 가공장에서 생산한 가공·포장육 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가공·포장육 생산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전년실적									
금년계획									

주) 가공장은 임대·직영 구분 없음

다. 손익분야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A)	지출(B)	손익(A-B)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전망			

라. 부분육 상장·경매현황(도매시장·공판장에 한함)

구분	소		돼지	
	상장	낙찰	상장	낙찰
전년도 실적	BOX (Kg)	BOX (Kg)	BOX (Kg)	BOX (Kg)
두수	두	두	두	두
(일평균)	(두)	(두)	(두)	(두)

마. 업체 연간 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LPC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주)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3.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LPC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금년도 계획					

주)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4. 증빙서류 : 붙임

○ 2번 항목의 증빙서류(시·도지사 확인·보관용)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6>

도축장 운영자금 선정기준표

(시·도지사 작성용)

□ 신청업체명 :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위생 (50)	○ HACCP 운용수준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중위등급	50 30			
경영·유통 (50)	생산 (10)	○'08년도 계열농가로부터 원료조달 비율(소 또는 돼지, 닭)			
		- 도축물량의 50%이상	10		
		- 도축물량의 40%이상	8		
		- 도축물량의 30%이상	6		
		- 도축물량의 20%이상	4		
	도축 (5)	소·돼지 (5)	○ '08년 도축실적 소 9,000두/년 이상 또는 돼지 270천두/년 이상	5	
			○ '08년 도축실적 소 6,000두/년 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 이상	3	
		닭 (5)	○ '08년 도축실적 16,875천수/년 이상 ○ '08년 도축실적 11,250천수/년 이상 ○ '08년 도축실적 11,250천수/년 미만	5 3 1	
	가공·상장·등급판정 (30)	소·돼지		닭 <도축장>	
		<LPC·일반도축장>	<도매시장·공판장>		
○'08년도 당해 도축장 부지내 가공·포장육 생산비용		○'08년도 당해 도축장의소·돼지부분육 상장실적 합계	○'08년도 당해 도축장 작업물량 대비 등급 판정 실적		
-도축물량의 80%이상		-3,001천톤 이상	-지침안 마련 중 (시·도는 득점란에 공란으로 처리)		
-도축물량의 60%이상		-2,001~3,000천톤			
-도축물량의 40%이상	-1,001~2,000천톤				
-도축물량의 20%이상	-101~1,000천톤				
-도축물량의 10%이상	-100천톤 이하 상장				
손익 (5)	○최근 3년간 계속 흑자		5		
	○최근 2년간 흑자		4		
	○최근 1년간 흑자		3		
	○최근 2년간 연속적자이나 적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		2		
계(100)			100		

주)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브랜드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영체의 출하물량 도축 시 5점 가점부여 (비고란 등에 내용 기재)

<별지7>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사업개요

- 업체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08. .)

2. 계약 계통출하 실적 및 계획

(단위 : 두)

구분	오 리			비 고
	농가수	계약두수	출하두수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3. 축산물 도축 및 판매계획

축 종	단 위	금년도 계획					전년도 실적
		1/4	2/4	3/4	4/4	연간	
오리	두수						
	거래금액						

4. 업체 연간 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5.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금년도 계획				

6. 증빙서류 : 붙임

- 2~4번 항목의 증빙서류(시·도지사 확인·보관용)

※ 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8>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사업명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지원구분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 지원구분란에 ○ 표시

2. 신청자 현황

○ 업체명 :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08. .)

3. 경영현황

가. HACCP 지정여부(지정일자) : 지정(지정일자 :), 미지정

나. 원료 및 제품생산실적 및 계획

구 분	원료육 구매두수(단위 : 두)				최종제품(단위 : 톤)	
	돼지	닭	소	기타	포장육	가공육
전년도 생산실적						
금년도 생산계획						

주) 원료육 구매두수는 국내산에 한함

다. 원료육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해 작성함)

구 분	배점	득점
○ 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100	
-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60	
-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20	
○ 도축장 부지의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80	
-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80%미만인 경우	40	
- '08년도 원료육의 도축물량중 '07년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0	

주)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라. 업체 연간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마.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금년도 계획				

4. 증빙서류 : 붙임

○ 3번 항목의 증빙서류(사업주관기관 확인·보관용)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9>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1. 신청개요

- 업체명(대표자) : _____ (대표 : _____)
- 주 소 : _____
- 신청액 : _____ 백만원

2. 원유 매매계약량

(단위 : kg)

조합명	합계				
물 량					

3. 정책자금 운영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물 량	금 액	비 고
○ 원유구매자금			
○ 운 영 자 금			
○ 합 계			

※ 유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_____ (전화) _____

<별지10>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추진(완료)내용

구 분	업 체 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개소, 두)			사 업 비(백만원)						B/A
						계 획			실 적			
			계 획	실적	%	계	용자 (A)	자담	계	용자 (B)	자담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팀 장 최대휴 사무관 송광현	02-500-2101 02-500-2112

I. 사업개요

1. 목 적

-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 지역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전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축산물 브랜드 홍보
-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브랜드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계획		
▪ 한우 브랜드 사육 비중(% , 주지표)	39	32.2	32.6	37	2010.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 돼지 브랜드 사육 비중(% , 부지표)	59	50.9	51.7	56	2010.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돼지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계획
합 계	-	-	-	20,000	33,000
보 조	-	-	-	8,000	13,200
자부담 (또는 지방비)	-	-	-	12,000	19,8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 시·군 또는 농협중앙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도시, 수도권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5개 이상의 축산물 브랜드가 입점하여 브랜드육 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도, 시·군 또는 농협중앙회
 - 입점하는 브랜드는 과거 3년 동안에 ‘브랜드 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에 한함
 - ※ 사업을 희망하는 시·도, 시·군 또는 농협중앙회는 입지를 확정하고, 입점 희망 브랜드 경영체를 사전에 모집하여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육 타운 시설비 : 판매장 및 음식점 시설 건축, 전기·온수 등 기반 시설, 화장실, 매장별 기본 인테리어 등
- 주변시설비 : 주차장, 환경미화시설, 위락시설(어린이 놀이터) 등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필요한 주변시설
 - ※ 부지매입비 및 매장내 소모성 비품 등은 제외
- 판매장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
-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 준수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자부담 60%
 - ※ 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금보조 40%, 지방비 60%
- 사업량 : 5개소
- 2년사업으로 사업비를 분할하여 집행
 - 분할비율 : 1년차 총사업비의 40%, 2년차 6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사업비 : 100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시·도, 시·군, 농협중앙회에 알림

신청조직(시·도, 시·군 또는 농협)

- 사업주체(시·도, 시·군, 농협중앙회)는 브랜드육 타운 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주체는 사업추진계획을 브랜드 경영체에 통보하고 입점 희망 브랜드 경영체를 접수하여 입점 브랜드를 결정(1개소당 5개 이상 브랜드 입점)
 - 시·도(시·군) 주관의 경우 타 시·도(시·군)에도 사업계획을 알려 타 시·도(시·군)의 브랜드도 입점이 가능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원조합 이외의 브랜드에도 사업계획을 알려 회원 조합 이외의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주체는 입점 브랜드 경영체와 함께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시·군은 시·도 경유)
 - 사업계획서는 자율양식이며, 브랜드육 타운 입지 결정, 브랜드 입점계획, 타운 조성 및 운영계획, 판매장 및 음식점 운영계획,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군 주관의 경우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에 관할 시·도가 참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계, 유통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심의회를 구성
- 농식품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성공 가능성, 입지 적절성, 운영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신청조직(시·도, 시·군, 농협)

- 브랜드육 타운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주체는 추진일정이 포함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보조금 교부신청서 함께 제출)
- 사업주체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부지확보(매입 또는 장기임대), 타운 설계, 입점이 결정된 브랜드 경영체와 세부계약 등을 추진하고, 브랜드육 타운 시설 건축 - 사업주체와 입점 경영체는 가칭 “브랜드육 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타운 관리주체, 임대료, 관리비, 홍보방안 등 협의
- 사업주체는 브랜드육 타운의 명소화를 위해 놀이시설·공원·화장실 등 공동 시설 설치
- 입점한 브랜드 경영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의무 적용토록 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 사업주체는 사업지원항목, 운영방법, 입점브랜드 등 중요 사업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

4. 자금배정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주체로부터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조치
- 농식품부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업 진행에 따른 자금배정 요청서를 받아 사업비 배정

신청조직(시·도, 시·군, 농협)

- 사업주체는 농식품부에 세부추진계획 보고서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주체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에 맞게 소요 사업비 배정요청

기금관리주체(농협 촉발기금사무국)

-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은 사업주체의 자금 지급요청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한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정산》

신청조직(시·도, 시·군, 농협)

- 사업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2년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2년차에는 2년간의 총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시·군은 시·도 경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주체의 브랜드육 타운 추진상황에 대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사업이 완료(브랜드육 타운 완공)된 이후에도 5년간 브랜드육 타운이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행주체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된 자금의 회수 등 조치
- 사업이 완료(브랜드육 타운 준공)된 이후에도 브랜드육 타운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 사후관리기간 : 준공후 5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시·도(또는 시·군, 농협) 입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말(시·도별 사업추진결과 평가회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시·도(또는 시·군, 농협), 입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식품부(시·도 협조)
 - ※ 브랜드육 타운이 최종 조성된 이후에 실시(2009년에는 1년차로서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 만족도 조사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주체는 브랜드육 타운이 완공된 후 농식품부 및 입점 브랜드 경영체 등이 참여한 사업평가회를 개최
 - 사업평가회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평가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 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연말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시·도, 농협중앙회 및 브랜드 경영체 등에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2009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2010년 사업계획 및 신청시기 안내 : 농식품부에서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별도 통보

81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팀 장 노수현 사무관 김영만 사무관 박홍식 사무관 이연섭	02-500-2076 02-500-2082 02-500-2077 02-500-2080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
 - 현재 특장차량은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할 목표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가축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수송물량/연간도축실적
▪ 계란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수송물량/연간계란생산실적

*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도축실적은 축산물위생과 자료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	3,900	22,800
용 자				1,950	11,400
자부담				1,950	11,400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가축수송특장차량				3,250	19,000
- 용 자				1,625	9,500
- 자부담				1,625	9,500
○ 계란수송특장차량				650	3,800
- 용 자				325	1,900
- 자부담				325	1,9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및 농·축협, 농가

< 우선지원 요건 >

-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
- ②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등으로 공동(계통)출하 실적이 많은 농·축협
- ③ 농가

3. 지원대상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용자

-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사업을 희망하는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농·축협, 농가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별첨1)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신용조사서(별첨2) ④ 기타 관련자료 등
-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의견서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되, 브랜드 경영체를 우선으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통보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범위 내에서 가축수송을 위한 특장차량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 자금영수증 등 구입증빙자료를 비치
 - 사업대상자는 차량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해야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요구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자금집행 세부요령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구비할 것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가능기관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091호, '02.3.20)에 의거,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기간중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1서식)에 사업완료 보고서(사진 등 첨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차량구입완료)후 사업자는 가축수송 내역이 나타날 수 있는 차량 운행일지(별첨 3)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다만,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시에는 연간 수송물량 등 총괄표는 용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관)

농림수산식부 본부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장차량구입으로 사업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현장점검은 불필요

《제재》

- 처분제한기준 : 용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불가피하게 조기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차량 확보를 전제로 하되, 대체가 불가할 경우 용자금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999호 : '99.9.8) 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전담율로 성과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도축물량 대비 특장차량 운송물량 비중
 - 특장차량 운송물량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취합·작성하여 제출(매년 1월까지)
 - 연간 도축·도계실적은 축산물위생팀에서 제공하는 자료활용(연초)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구입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사업평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계획은 2009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2009.3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별첨 1>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계획(완료보고)서

1. 신청 개요

○ 사업추진 주체 명 :

- 소재지 : (사무실 전화 :)

- 대표자 성명 : (H·P :)

2. 사업개요

○ 축종 : 소, 돼지, 닭

○ 참여농가 현황

- 농가수 :

- 사육수 : (연간 출하두수 : 두, 수)

○ 최근 2년간 가축 수송 실적 : '○○년 ○○○두,수, '○○년 ○○○두,수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사업계획

시설명	수량(대)	규격(톤)	사업비(백만원)			비고 (제조회사명)
			용자	자담	계	
합 계						
○ 차량						
○ 특수장비						
○ 기타						

4. 기타 관련자료 (첨부)

○ "완료보고"시에는 차량사진(내·외부) 및 세금계산서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첨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 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합계	백만원	보조	용자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 ○○○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첨 2>

차량 운행 일지

차량번호 :

날 짜	운전자	출발지	도착지	수송물량(두,수)					비 고
				소	돼지	닭	기타	계	
'000000	000								
합 계									

<작성시 유의사항>

- 1) 축종별 수송물량은 월별 소계 및 연간 합계를 작성(월별 소계 및 연간 합계는 폐기시 별도 작성하여 확인자 서명후 보관)
- 2) 비고란에는 수송 일자별로 확인자 서명
- 3) 사업자별 차량운행일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경우 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통합 가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과 장 노수현(총괄)	02-500-2076
		사무관 박홍식(한우)	02-500-2077
		사무관 이연섭(돼지)	02-500-2080
		사무관 김영만(양계·오리)	02-500-2082
		사무관 이성주(낙농)	02-500-2084

I.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젓소 축종의 축사 총 5,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구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한우	▪ 한우1등급이상 출현율 (%) : 부지표	55.5	44.5	50.9	53.6	매년 1월중	- 연간 한우 1등급 출현율 · 축산물 등급판정실적
양돈	▪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5	13	13.4	14	매년 1월중	-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 가축통계 활용
양계	▪ 일당증체량(육계)	39.8	38.8	39.3	39.5	매년 1월중	-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 연간회전율	5.8	5.5	5.6	5.7	매년 1월중	-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 두당 산유량(ℓ/년)	8,560	8,026	8,260	8,350	매년 6월경	- 축산물 생산비(농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이후
합 계	-	-	-	124,424	1,788,575
보 조	-	-	-	37,327	536,573
용 자	-	-	-	62,212	894,287
자부담	-	-	-	24,885	357,715
○ 한(육)우	-	-	-	32,829	453,170
- 보 조	-	-	-	9,849	135,951
- 용 자	-	-	-	16,414	226,585
- 자부담	-	-	-	6,566	90,634
○ 양돈	-	-	-	49,000	776,000
- 보 조	-	-	-	14,700	232,800
- 용 자	-	-	-	24,500	388,000
- 자부담	-	-	-	9,800	155,200
○ 양계	-	-	-	24,192	335,808
- 보 조	-	-	-	7,258	100,742
- 용 자	-	-	-	12,096	167,904
- 자부담	-	-	-	4,838	67,162
○ 오리	-	-	-	3,528	38,472
- 보 조	-	-	-	1,058	11,542
- 용 자	-	-	-	1,764	19,236
- 자부담	-	-	-	706	7,694
○ 낙농	-	-	-	14,875	185,125
- 보 조	-	-	-	4,463	55,538
- 용 자	-	-	-	7,437	92,563
- 자부담	-	-	-	2,975	37,025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①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및 농가조직체 참여농가(경영체 직영 포함) : 한(육)우 및 양돈에 한함
- * 「브랜드경영체」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 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
 - * 농가조직체는 추후 별도 통보

- ②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포함) 또는 전업농 :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대상임
-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 *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
 - * 종돈장·종계장·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 한(육)우 : 축사 및 내부기자재 [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양 돈 : 축사 및 내부기자재 [급이·급수, 소독·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 양돈 사업대상자는 외부 돼지 도입시 농장내 질병차단을 위해 신축일 경우 격리돈사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을 의무적으로 설치
 - 양계·오리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낙 농 : 축사, 착유시설,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폐사축 처리시설 등(로봇 착유시설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의 축사 및 사육시설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용자 5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

* 용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1~2년(사업계획에 의함)

<2009년도 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	자부담 (20%)
			계 (100%)	보 조 (30%)	용 자 (50%)		
계	502	124,424	99,539	37,327	62,212	-	24,885
1. 한(육)우	193	32,829	26,263	9,849	16,414	-	6,566
2. 양 돈	140	49,000	39,200	14,700	24,500	-	9,800
3. 양 계	72	24,192	19,354	7,258	12,096	-	4,838
4. 오리	12	3,528	2,822	1,058	1,764	-	706
5. 낙 농	85	14,875	11,897	4,463	7,434	-	2,975

주) 예산액은 1년차에 지원사업비의 70%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m ²) 지원한도액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총사업비
한(육)우	216천원/m ²	-	200백만원	250백만원
양 돈	500천원/m ²	20백만원	900백만원	1,125백만원
양 계	산란계	20백만원	1,400백만원	1,750백만원
	육 계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오 리	102천원/m ²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낙 농	185천원/m ²	-	200백만원	250백만원

주1) 지원한도액은 보조+용자의 합산액이며,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주2) 낙농분야의 경우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축사시설과 착유시설 등을 구분하여 개별 시설별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시설별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및 농가조직체에 사업신청('08.12.31까지) - <붙임 서식 1>

시·군·구, 브랜드경영체, 농가조직체

- 시·군·구 :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09.1.15까지)
- 브랜드경영체·농가조직체 : 사업신청 농가를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에 각각 사업신청('09.1.15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가축사육규모, 브랜드경영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지원예산 확정·통보('09.1.15)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농가조직체 및 시·군·구 신청 농가를 별도 구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통보('09.1.25)
 - 축종별 평가기준 <붙임 1-1 ~ 1-5>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 한(육)우, 돼지, 젓소의 경우 브랜드경영체 및 농가조직체 회원농가와 육종농가에 우선 지원하되, 최소한 전체 지원액의 60%이상 지원(신청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전업농가에 40%이상 지원 가능)

3.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사업대상자 및 시·도(시·군·구)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 업체 공개 등을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시·도(시·군·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재선정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시에는 검토 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 시·도(시·군·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자금집행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장 현지 확인후 자금배정 조치
- 시·도(시·군·구)는 지원사업비를 집행하고자할 때에는 용자 및 보조비율을 지켜 배정하고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 사업완료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감독 철저 <시·도(시·군·구)>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은 5년, 용자금은 상환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0. 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별표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육우)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두수 (50)	○100두 이상 ○80두이상~100두 미만 ○60두이상~80두미만 ○30두이상~60두미만 ○30두미만	50 40 30 20 10		*'08 기준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②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③ 교육실적 (2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 이상 ○40일 이상~50일미만 ○30일 이상~40일미만 ○20일 이상~30일미만 ○10일 이상~20일미만 ○ 5일 이상~10일미만 ○ 1일 이상~5일미만 *최근3년간실적적용	20 18 16 14 12 10 8 6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 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④ HACCP 여부 (10)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 계약 ○상기 항목에 해당 없는 경우	10 5 0		*HACCP지정 신청은(사)축산물 HACCP기준원의 자장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등은 제외
⑥소속브랜드 경영체 평가결과(10)	○ 상위 20%이내 ○ 상위 21~50% ○ 49% 미만	10 5 0		'08년 평가결과 적용
계(15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두수 (50)	○5,000두이상 사육 ○4,000두이상~5,000두미만 ○3,000두이상~4,000두미만 ○2,000두이상~3,000두미만 ○1,000두이상~2,000두미만	50 40 30 20 1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계열주체 직영 신청인 경우 직영농장 사육두수만 해당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4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50 40 35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 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③ 브랜드, 계열주체와의 계약기간 (50)	○계열주체 직영 또는 60개월이상 계약체결 ○55개월이상 60개월미만 계약체결 ○50개월이상 55개월미만 계약체결 ○45개월이상 50개월미만 계약체결 ○40개월이상 45개월미만 계약체결 ○35개월이상 40개월미만 계약체결 ○30개월이상 35개월미만 계약체결 ○25개월이상 30개월미만 계약체결 ○20개월이상 25개월미만 계약체결 ○12개월이상 20개월미만 계약체결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브랜드 회원농가 및 계열주체 계약한 농가만 해당 *양자간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직영인 경우는 직영농장 사육기간으로 산정
④ HACCP, 소모성질환 컨설팅 여부 (4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받은 경우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계약한 경우	40 30 20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A등급 출현율 (40)	○(연 평균 A등급이상 출현두수/총 출하두수)×100 * 40%이상일 경우 40점으로 득점 기록	0~4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08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증빙서류 제출
⑥ 추진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⑦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등은 제외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⑧ 소속브랜드 경영체 평가결과 (10)	○ 상위 20%이내 ○ 상위 21~50% ○ 49% 미만	10 5 0		'08년 평가결과 적용
계(3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수수 (50)	○70,000수이상 사육 ○60,000수이상~70,000수미만 ○50,000수이상~60,000수미만 ○40,000수이상~50,000수미만 ○30,000수이상~40,000수미만	50 40 30 20 1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농장 사육수수만 해당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이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4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50 40 35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 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열화주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③ 계열화주체와의 계약기간 (50)	○계열주체 직영 또는 60개월이상 계약체결 ○55개월이상 60개월미만 계약체결 ○50개월이상 55개월미만 계약체결 ○45개월이상 50개월미만 계약체결 ○40개월이상 45개월미만 계약체결 ○35개월이상 40개월미만 계약체결 ○30개월이상 35개월미만 계약체결 ○25개월이상 30개월미만 계약체결 ○20개월이상 25개월미만 계약체결 ○12개월이상 20개월미만 계약체결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양자간 계약서 등 증 빙서류 제출 *직영인 경우는 직영농장 사육기간으로 산정
④ HACCP, 소모성질환 컨설팅 여부 (4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받은 경우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계약한 경우	40 30 20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 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 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⑥ 추진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계(25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 점	점 수	비 고
1. 사육 현황 (20)	○ 200두 이상 ○ 100두 ~ 199두 ○ 50두 ~ 99두	10 15 2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전업농 중 규모가 작은 농가를 우선 순위 부여
2. 수상경력 (15)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15 10 5 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3. 낙농체험관광 사업 선정 (10)	○낙농진흥회에서 주관한 낙농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포함) ○해당사항 없음	10 0		* (사)낙농진흥회에서 확인 가능
4. HACCP 인증 (10)	○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 ○HACCP 농장 지정 심사를 신청한 농가 ○HACCP 농장 컨설팅을 계약한 농가 ○해당사항 없음	10 5 3 0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5. 추진가능성 (1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10 6 3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6. 생산 쿼터량 준수 (10)	○일 평균 쿼터량 대비 10% 이상 감축생산 ○일 평균 쿼터량 대비 5% 이상 10% 미만 감축생산 ○일 평균 쿼터량 대비 3% 이상 5% 미만 감축생산 ○일 평균 쿼터량 대비 3% 미만 쿼터량 동일 수준 생산 ○일 평균 쿼터량 초과 생산 ※ 일반농가는 쿼터량(계약생산량) 기준, 낙농진흥회 농가는 감축후 생산목표량 기준	10 7 5 3 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07년 12월 기준
7. 농가별 자금 신청 (10)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50% 이하 신청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51~70% 이하 신청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71~80%이하 신청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81~90%이하 신청 ○농가별 지원한도액의 91% 이상 신청	10 7 5 3 0		*낙농가 지원 한도액은 200백만원
8. 가축공제 (5)	○가축공제 가입 중인 경우 ○ 미가입	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9. 교육이수현황 (10)	○낙농관련 교육 5일 이상 ○낙농관련 교육 3~4일 ○낙농관련 교육 2일 이하 ○해당사항 없음 *교육 이수 인정기간은 '06.1.1 ~ '07.12	10 7 5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1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평시 사육수수 (50)	○50,000수이상 사육 ○40,000수이상~50,000수미만 ○30,000수이상~40,000수미만 ○20,000수이상~30,000수미만 ○10,000수이상~20,000수미만	50 40 30 20 1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농장 사육수수만 해당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이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4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50 40 35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 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열화주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③ 계열화주체와의 계약기간 (50)	○계열주체 직영 또는 60개월이상 계약체결 ○55개월이상 60개월미만 계약체결 ○50개월이상 55개월미만 계약체결 ○45개월이상 50개월미만 계약체결 ○40개월이상 45개월미만 계약체결 ○35개월이상 40개월미만 계약체결 ○30개월이상 35개월미만 계약체결 ○25개월이상 30개월미만 계약체결 ○20개월이상 25개월미만 계약체결 ○12개월이상 20개월미만 계약체결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양자간 계약서 등 증 빙서류 제출 *직영인 경우는 직영농장 사육기간으로 산정
④ HACCP, 소모성질환 컨설팅 여부 (4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받은 경우 ○HACCP 또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계약한 경우	40 30 20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 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 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 도 20 시군구 10 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⑥ 추진가능성 (3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계(25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별표 2〉

낙농 시설별 지원 기준액

(단위: 백만원)

지원 대상 시설	지원액 한 도	비 고
축사시설	144	축사시설은 m ² 당 185천원
착유시설(헤링본 또는 오토텐덤) 및 전자 유량계	48	착유시설 설치를 위해 축사시설을 신축하 거나, 증·개축하고자 할 경우 축사시설 비 지원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전체 지원기준액은 192백만원을 초 과할 수 없음)
냉각기	8	원유 저장량 3톤 수준
소 계	200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농가조직체명 (직영은 '직영'으로 표기)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축종: 한(육)우, 양돈, 양계(종계, 산란, 육계), (중)오리, 낙농(젖소)로 구분 ○사육형태: 일관(), 비육(), 번식(), 기타()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05	'06	'07	'08.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개축(), 개보수()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규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m ²)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인 : (인)</div>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08				'09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측사													
		소계											
내부시 설 및 기자재													
		소계											
합 계													

주) 2년차로 사업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행면적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_____ m ²	_____ m ²	_____ m ²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m²)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용자)	_____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용자) / 공사계획면적(m ²)	_____ 천원/m ²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m²)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① 가축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팀 장 노수현	02-500-2076
		사무관 김영만	02-500-2082
		사무관 이연섭	02-500-2080

I.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
 - '06년 현재 양돈 16%, 양계 72%인 가축계열화 참여율을 '05~'08년 참여율 증감을 감안하여 '16년까지 양돈 36%, 양계83%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가축계열화율					'10.2	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 두수/총 도축두수×100
- 양돈	21	16	18	20		
- 양계	75	72	73	74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53,688	26,000	26,000	20,000	340,000
용 자	253,688	26,000	26,000	20,000	340,000
○양 돈	113,748	15,896	13,000	10,000	170,000
○양 계	139,940	10,104	13,000	10,000	170,0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계열화 사업자(계열화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원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3-10)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 제한사항

- 닭·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닭은 500천수, 오리는 200천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가능)

○ 우선지원 요건

- 계열업체와 계열농가와의 협의체를 구성, 협의체가 활성화된 업체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3. 지원대상

- 돼지, 닭(육계, 산란계),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기금융자율·자부담율, 용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돼지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 기반시설(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농가는 10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농가는 25호) 이상
 - 닭(산란계) : 연간 계란 생산·처리능력 150백만개(농가는 25호) 이상
 - 오 리 : 연간 오리 생산·처리능력 1,000천수(농가는 15호) 이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정부시책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가능
 - 계열사업 완성년도,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 사항 유무, 계열요소 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보

지 자 체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정·통보한 사업 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② 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 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 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하되 계열주체의 신용보증 등으로 대출이 가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 (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도 계획에 포함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 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 계열농가의 사육시설은 일관사육시설을 모돈전문 사육시설 또는 육성돈, 비육돈 전문사육 시설로 개보수·신축시 우선지원
 - * 양돈계열업체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등) 자금은 기존시설 개보수·합병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가공시설·육가공공장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
 -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와의 계약 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자금을 배정·통지하고, 정책자금 대출취급금융기관에도 통보

시·도(지자체)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기성고에 따라 소요 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요청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우)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시설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 기관은 '08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 (별표 2), 반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관 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및 시기 >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고일	서식
○ 2009 사업추진 계획	2009사업대상자→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 2009 사업추진 실적	2009사업대상자→시·도→농림수산식품부	매반기 익월5일까지	“
○ 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림수산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의 년2회 이상 사업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가축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9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 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 다만,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계열화 업체의 생산·처리 물량의 비중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생산물량 대비 계열업체를 통해 생산·처리되는 물량비중
 - 계열업체의 생산·처리물량은 지자체에서 작성·제출(매년 3월까지)
 - 전체 생산량은 축산물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연간 도축·도계실적 기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

경영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계열화율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 추진은 부적절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09.1월말까지)→시·도('09.2월말까지)→예산신청('09.3월말까지)
- 대상자선정 절차 등은 '09년 사업시행 지침에 준함
 - 양돈의 경우 계열업체별 생산성 지표(MSY, 모돈 회전율, 두당 이유두수, 두당 산자수, 생산비, 사육규모 등)를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
 - 가금의 경우 계열업체별 생산성 지표(육성율, 사료요구율), 종계 D/B 참여율, 농가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주체사육 시설	○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계열농가생산 시설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단,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한·미 FTA 국회비준시 이후에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	- 사업비의 70%이내 - 연 3%(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과 동일
3.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유통시설	○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시설·장비 등	"	
5. 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별표2>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09년 계획			'09년 실적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진척도 (%)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 주)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에는 「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09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협의체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별표3>

(양돈,양계,오리)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상 호							지정연도	
대표자							전화	
							팩스	
주 소								
직영·위탁·계약 농가 상시사육	GGP모돈(원종계)		F1모돈(중계)		비육돈(실용계)		계	
	두(천수)							
계열농가에 종돈·종계 공급 (연간)	직영·계열 자체생산(A)		계열업체가 공동구매·공급 (OEM 등)		계열농가가 개별구입		계(B)	
	두(천수)						자체공급율 (A/B) %	
생 산 (연간)	구 분	직영 (C)	위탁 (D)	계 약	일반 구매	계 (E)	자체생산율 (C+D)/E	
	호수(호)							
	두수(두)							
사료공급 (연간)	직영·계열업체 생산(F)		공동구매 (OEM 등)		농가 개별구입		계(G)	
	톤						자체공급율 (F/G) %	
도 축 (연간)	자체시설(H)		외부위탁		계(I)		자체도축율 (H/I)	
	두(천수)				* 생산두수(E)와 야 합		%	
판 매 (연간)	자체유통 (J)	상인유통	수 출 (K)	2차가공 (L)	기 타	계(M)	자체판매율 (J+K+L/M)	
	톤						%	
향후 계획	연도	계열 농가수	생산량	자체생산율	자 체 사료생산율	자체시설 도축율	자체 판매율	
	2009년	호	두/년	%	%	%	%	
	2010년							
	2011년							

- * 직영 :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
- * 위탁 : 계열업체가 자축소유,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 * 계약 : 농가가 자축소유, 계열업체와 농가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②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물위생팀	팀 장 최대휴	02-500-2101
		사무관 송광현	02-500-2112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 장 이재찬	02-2080-6521
		팀 장 장인영	02-2080-6524

I.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계획		
▪ 한우 브랜드 사육 비중(% , 주지표)	39	32.2	32.6	37	2010.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 돼지 브랜드 사육 비중(% , 부지표)	59	50.9	51.7	56	2010.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돼지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계획
합 계	707,566	195,639	174,000	189,000	145,000	145,000
용 자	573,734 (30,500)	162,511 (30,000)	144,655 (20,000)	154,200 (20,000)	114,000 (15,000)	114,000 (15,000)
자부담	133,832	33,128	29,345	34,800	31,000	31,000
○ 브랜드 운영지원	707,566	195,639	174,000	179,000	125,000	125,000
- 용 자	573,734 (30,500)	162,511 (30,000)	144,655 (20,000)	147,200 (20,000)	100,000 (15,000)	100,000 (15,000)
- 자부담	133,832	33,128	29,345	31,800	25,000	25,000
○ 브랜드 판매시설	-	-	-	10,000	20,000	20,000
- 용 자	-	-	-	7,000	14,000	14,000
- 자부담	-	-	-	3,000	6,000	6,000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외 금액에 포함됨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회원농가의 정의

- 경영체와 경영체의 사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간에 약정을 체결한 농가
- 다만, 번식기반 구축, 정회원 후보농가 육성 차원에서 준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명확한 가입 및 관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준회원에게는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에 한하여 정회원에 준하는 지원 가능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경영체가 운영)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 브랜드육 타운 입점브랜드는 판매장(음식점) 내부장비(냉장·냉동고, 조리시설, 식탁 등) 구입자금('09년부터 지원)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기간 : '07.10.1~'08.9.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08.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 '08.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기간 : '07.10.1~'08.9.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 '09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09년 계획물량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m²(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m²(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3) 지원금액 조정

- '08년 평가등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비율 조정 지원
- '09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사업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사후관리	·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조정	·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사후관리	·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사후관리	·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08년 10월초)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08년 10월 12일)
 - '08년 사업실적평가와 '09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축발기금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 (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서식 2) 후 농식품부에 추천('08년 10월 19일, 농·축협조합은 농협지역본부 의견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08년 11월중순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08년 12월초)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서식 3)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
 - ※ 우선지원 : 재지원 경영체('06년 지원후 3년 만기도래), 전년 사업평가 우수 경영체(A등급), 통합 광역화브랜드 경영체,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단, 브랜드 운영지원과 판매시설간 사업비변경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 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9월)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10월)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 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촉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지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365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용도별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 지원금 전액 회수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 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촉발기금 반납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 위약금 = 【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 - 출하실적금액】 × (사용일수/365)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해 상환기일에 전액회수토록 하되 최종 상환일까지 미회수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지 확인하여, 확정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촉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환하는 경우

- 브랜드 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원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

용기간(30일 이내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3개월 이내 상환시 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3개월 경과후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에 대하여 부담

《사업비 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
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
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例)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 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사업추진실적평가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평가기준기간 : '08.10.1 ~ '09.9.30
- 평가시기 : '10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09.10~11월)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09년 9월초)
 - ※ '10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붙임1, '10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09.10.10까지)
 -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09.10.17까지)
 -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08년 11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08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금액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회수금액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2009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09.10.10까지)
 - ※ '09년 사업실적평가와 '10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09.10.17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09.11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09.12월초)
 - ※ 기타사항은 2009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서식1】 : 2009년도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실적보고서)

< 조합용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2009년 사업신청서
(추진실적보고서 겸용)**

대상 경영체					
평가기준일	2008년 9월 30일				
평가기간	2007년 10월 1일 ~ 2008년 9월 30일				
팩스번호					
E-Mail					
사업담당자	직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대표		-		
	전무		-		
	상무 담당자				

I. 일반현황

1. 현황

조합명		조합장	
자본금		조합원수	

2.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재원	용도	지원조건		자금내역			상환 만료일
			기간	금리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 주) 1. 축발기금인 가축계열화자금, 브랜드가맹점판매시설지원, 축산물도축가공시설운영자금은 반드시 기재
2. 재원(축발기금, 중앙회, 지자체 등), 용도(운영, 시설), 지원조건(예: 기간-3년거치 일시상환, 금리-3%)

II. 브랜드사업 추진실적

1. 축산물브랜드 현황

- 가. 브랜드명 : (축종 :)
- 나. 상표등록일 : (권리자 :)
- 다. 참여농가 및 상시사육두수 : 농가, 총 두

○ 회원농가 명부 (한육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등록두수	축산업등록여부
				암	수	거세	계		
계									

○ 회원농가 명부 (돼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등록수			축산업등록여부
				종돈	모돈	비육돈	계	종돈	모돈	계	
계											

라. 2008년 주요판매처 및 판매두수

거래처명	브랜드 판매		비 브랜드 판매		합계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계						

2. 사업추진실적

가. 품질균일성

- 혈통등록
 - 한육우

회원농가수	총두수(a)	혈통등록두수(b)	비율(b/a)	비고

※ 증빙자료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확인문서(개체별이 아닌 총 두수에 일괄확인서)
- 돼지 (동일 GP, GGP F1 생산비율)

회원농가수	총두수(a)	동일 GP,GGP F1 두수(b)	비율(b/a)	비고

※ 증빙자료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확인문서(개체별이 아닌 총 두수에 일괄확인서)

○ 사료통일 (단계별 총이용사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료 회사량의 비율)

구매방법	사료회사	이용농가수	이용내역 (톤)				HACCP 인증여부
			육성기(자돈)	비육전기(육성돈)	비육후기(비육돈)	계	
계	-					-	
(비율)	-	-				-	

※ 기준 : 사료량(톤)을 기준으로 비율 산출

※ 증빙자료 : 사료회사별 사료구매원장 사본, 자체 TMR의 경우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장, 증명서 등)

○ 사양관리 통일

- 한육우

사양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재)		출하 도체중 380kg이상		거세시기 7개월 이내	
이용농가수		총 출하두수		총 거세두수	
이용두수		해당 출하두수		해당 두수	
-	-	비율(%)		비율(%)	

※ 사양프로그램 : 규약, 문서, 조합원 배포용 자료 등의 사본

※ 출하체중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거세우 등급판정자료('07.10월~'08.9월 1년간)

※ 거세시기 : 브랜드 밀소 출생일 및 거세시기가 기재된 개체기록부

또는, 송아지안정제, 거세장려금 지급관련자료로 거세시기 및 월령이 기재된 자료

- 돼지

사양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재)		출하 도체중 80-93kg		사료 후기 사료량	
이용농가수		총 출하두수		총 물량	
이용두수		해당 출하두수		해당 물량	
-	-	비율(%)		비율(%)	

※ 사양프로그램 : 규약, 문서, 조합원 배포용 자료 등의 사본

※ 출하체중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등급판정자료('07.10월~'08.9월 1년간)

※ 비육후기 사료량 : 사료통일 증빙자료와 동일

나. 고품질

구분	출하물량 (두수)		한육우 육질 1등급(육량 B등급 이상, 돼지 A,B등급 이상 출현 비율(B/A)	
	'07.10월 ~ '08.9월까지(A)	'07.10월 ~ '08.9월까지(B)		
두수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등급판정자료('07.10월~'08.9월 1년간)

다. 물량공급능력

구분	사육규모(한육우-총두수, 돼지-모돈수)		출하물량 (두수)	
	'08.9월말 기준		'07.10월 ~ '08.9월까지	
두수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등급판정자료('07.10월~'08.9월 1년간)

라. 소매단계 브랜드 판매비율

거래처명	브랜드 판매		비 브랜드 판매		합계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계		(A)				(B)
비율(A/B)	-		-			

※ 증빙자료 : 거래처별 유통거래 증명서 등

마. 위생·안전성

이용도축장			이용가공장			비고
도축장명	소비자연맹 운용평가등급	소재지	가공장명	HACCP 인증여부	소재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해당 경영체 도축장 자료('07.10월~'08.9월 1년간)

이용 도축장의 출하증명서, 이용 도축장의 작업증명서('07.10월~'08.9월 1년간)

바.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연차별 이행계획·실적)

평가항목	'07년 실적(A)	'08년 계획(B)	'08년 실적(C)
사육두수 (한육우-총두수, 돼지-모돈)			
연간출하두수			
브랜드 소매단계 판매비율			
종축통일비율 (혈통등록비율)			
사료통일비율			
출하시기통일비율 (380kg이상,80~93kg)			
1등급(A,B등급)출현율			
계			

주) 1. '07년 실적 입력방법

- '07년 평가 실시 경영체 : 평가시 입력한 '07년 실적('06.10월~'07.9월 실적)
- '07년 평가 미실시 경영체
 - '08년 자금 신청 경영체 : 신청서 상 '07년 년도말 실적
 - '08년 자금 미신청 경영체 : 자체 사업결산 실적(문서, 총회 보고자료 등)

2. '08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연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식품부 보유자료로 수정 적용

3. '08년 실적 : 1의 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실적 입력('06.10월~'07.9월 실적)

4. 달성율 : 달성율×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율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 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종축통일비율, 사료통일비율, 출하시기통일성, 1등급 출현율의 실적이 1. 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사. 가점 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실적	산출방법
축산업등록제	회원농가의 축산업등록비율	%	등록회원/총회원 (등록대상에 한함)
자체 판매기반 구축	브랜드 식당 또는 전문판매점 운영여부		해당 점포명 기재
HACCP 사료공장 이용	전체 사료량 중 HACCP사료량 비율	%	HACCP 사료량 /전체 사료량
브랜드 인증	2008년 인증 여부	여, 부	
경진대회 수상	2008년 수상 여부	여, 부	해당 상명 기재
한육우-쇠고기이력추적사업 참여여부	시범사업 참여	여, 부	
돼지 - 자연순환농업 추진여부	참여여부	여, 부	협약서, 시설내역 등

아. 세부자금 운용내역

☞ 작성 기준 : '08.1.1~9.30일

☞ 확인자료 : 합계잔액시산표, 평균잔액시산표, 보조장부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합계
	출하 선급금	경영비	사료 통일비	위탁 사육비	브랜드 비용	판매 운영비	사료 자금	시설 개보수	
계획									
1.1~9.30 누계액				-		-	-		
1.1~9.30 평잔액	-	-	-		-			-	
운용율									

※ 계획금액은 자부담 20%를 포함한 금액 기재(생산지원자금 중 농가지원용은 자부담 면제)

계획금액은 3년간 지원누계(대출잔액)와 그에 대한 자부담의 합계금액임

※ 브랜드운영자금 중 가맹점 설치자금('08년 지원분)은 시설개보수로 포함해서 기재

Ⅲ. 브랜드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2009년 자금신청 경영체만 작성)

(단위 : 두수/백만원)

항목		2008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2016년
생 산	브랜드 참여농가 (농가수)					
	상시 사육두수	거세·비육우 (비육돈)				
		번식우 (모돈)				
		계				
축산업등록 농가비율(%)						
판매 유통	경영체 출하물량(두수) * 브랜드 회원농가 기준					
	소매단계판매 물량 (두수)					
육질1등급(육량 B등급) 이상 (돼지는 A,B등급)이상 두수						
품 질 균 일 성	혈통등록 (비율)					
	사료 통일 여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사양 관리 통일 여부)	사양프로그램 준수 (프로그램 명)				
		거세/후기사료비율 (한육우 : 7월 이내거세) (돼지 : 후기사료사용비율)				
출하시기비율 (한우:도체중 380kg이상 돼지:도체중 80-93kg이내)						
위 생 · 안 전	HACCP 적용 도축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 도축장 동일장소 이용여부					

※ 년도별 추진계획 기재 : 추후 평가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제 추진 가능계획을 기재

□ 2009년 자금계획

○ 용자 신청액 : ()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 및 용도		2008년 추진실적 (Ⅱ.추진실적 기재)		산출근기	현 지원총액 (‘09년 상환액 제외)	2009년 신청액
생산 지원 자금	출하선급금	출하두수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경영비	번식두수		번식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사료통일비	미통일두수		사료미통일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위탁사업비	출하두수		출하두수×20%×단가 =총 산출금액		
	계	-				
브랜드 운영 자금	브랜드비용	출하두수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판매운영비	출하두수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사료자금	사료통일두수		사료통일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시설개보수 자금	-		총사업금액의 10% 이내 (최소 1억원)		
	계	-	-			
브랜드 판매시설	판매시설 자금	-	-	총사업비×70%(지원율)×50%(1 년차 지원율) ※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총계						

※ 현 지원총액 중 2006년 지원자금(2009년 상환예정액)은 제외하고 기재

위와 같이 2009년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평가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 조합 : 조합장 인

붙임 : 조합 브랜드사업에 대한 의견서 1부

조합 브랜드사업에 대한 의견서

□ 신청 조합명 :

(단위 : 백만원)

◆ 브랜드명			참여농가수	
◆ 조합경영현황	종합경영평가결과	자기자본	경제사업규모	당기순손익
	등급			
◆ 의견내용	<p><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조직화, 3통 통일 등 브랜드요건에 비추어 사업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 ○ 참여구성원과 사업주체별 업무분담 등에 대한 지역본부의 의견 ○ 추진코자 하는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등 			

년 월 일

농협중앙회 00지역본부장

(인)

< 영농조합 등 일반법인용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2009년 사업 신청서

(추진실적보고서 겸용)

대상 경영체					
평가기준일	2008년 9월 30일				
평가기간	2007년 10월 1일 ~ 2008년 9월 30일				
팩스번호					
E-Mail					
사업담당자	직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대표		-		
	전무		-		
	상무 담당자				

I. 일반현황

1. 법인(업체) 명 :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법인(업체) 현황

대표자		담당자	
설립일		회원 수	
출자액		전담직원 수	
연간매출액	2006년 :	백만원,	2007년 :
			백만원

2. 사업현황

가. '07년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실적					전체 당기순 손익
	생축	판매	사료	기타(00)	계	
매출액						
비율						
물량						

나.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용도	지원조건		자금내역			상환 만료일
			기간	금리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액	

(기타 서식은 조합용 Ⅱ. ~Ⅲ. 서식 참조)

위와 같이 2009년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평가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법인 : 대표자 인

붙임 : 금융기관 여신 취급 가능 확인서 1부

【서식2】

브랜드 경영체 지원 우선순위 추천표

(시·도용)

□ ○○(시)도

순위	축종	브랜드명	추천경영체		브랜드 사업추진년도	비고
			경영체명	대표자		

【서식 3】

평 가 기 준 표 (안)

1. 사업수준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실적	득점	비고
품질 균일성 (20)	종축통일 (10)	○ 혈통등록 비율(한우) 20%미만(0), 20%이상(4) 40%이상(6), 60%이상(8) 80%이상(10)	○ 동일 CCP, CP에서 생산된 F1 비율(돼지) 20%미만(0), 20%이상(4) 40%이상(6), 60%이상(8) 80%이상(10)	0-10		
	사료통일 (4)	○ 회원의 사료통일비율 (한우·돼지) 70%미만(0), 70%이상(1점), 80%이상(2점), 90%이상(3점), 100%이상(4점)		0-4		
	사양관리 통일(6)	○ 한우: 거세, 출하시기 - 거세율(7월이내) : 3점 60%미만(0), 60%이상(1) 70%이상(2), 80%이상(3) - 출하(380kg이상) : 3점 50%미만(0), 50%이상(1) 60%이상(2), 70%이상(3)	○ 돼지 : 사료, 출하시기 - 후기사료급여비율 : 3점 15%미만(0), 15%이상(1) 20%이상(2), 25%이상(3) - 출하시기(80-93kg이상) : 3점 50%미만(0), 50%이상(1) 60%이상(2), 70%이상(3)	0-6		도체 중
고품질 (20)	품질 수준 (20)	○ 한우 육질 1(B)등급 이상 출현율 50%미만(2), 50%이상(5) 55%이상(8), 60%이상(11) 65%이상(14), 70%이상(17) 75%이상(20)	○ 돼지 A, B 등급 출현율 - 60%미만(4), 60%이상(8) - 70%이상(12), 75%이상(16) - 80%이상 (20)	2-20		
물량공급 능력 (20)	사육규모 (10)	○ 한우(전체) 2,000두 미만 2,000두 이상 4,000두 이상 6,000두 이상 8,000두 이상 10,000두 이상	○ 돼지(모돈) 1,500두 미만 1,500두 이상 3,000두 이상 4,500두 이상 6,000두 이상 7,500두 이상	0 2 4 6 8 10		
	회원의 출하물량 (10)	○ 한우 연간 400두 미만 연간 400두 이상 연간 800두 " 연간 1,200두 " 연간 1,600두 " 연간 2,000두 "	○ 돼지 연간 30,000두 미만 연간 30,000두 이상 연간 60,000두 " 연간 90,000두 " 연간 120,000두 " 연간 150,000두 "	0 2 4 6 8 10		
소매판매 비율(10)	브랜드 소매 단계 판매 비율 (10)	○ 한우 30%미만(0), 30%이상(4) 50%이상(6), 70%이상(8) 90%이상(10)	○ 돼지 30%미만(0), 30%이상(4) 50%이상(6), 70%이상(8) 90%이상(10)	0-10		
위생· 안전성 (20)	도축 (10)	○ 이용 도축장의 HACCP 운영수준평가결과 하(0), 중(5), 상(10)		0-10		
	가공 (10)	○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여부 부(0), 여(6)		0-6		비율 적용
		○ 동일 장소내 도축·가공 여부 지육반출(0), 동일장소(4)		0-4		
가점 (10점)	-공동 : 축산업등록제 적용(100%), 자체 판매기반 구축(판매장, 식당), HACCP사료공장이용(50%이상), 브랜드인증여부, 경진대회 수상여부 -구분 : 한우-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참여 돼지-자연순환농업 추진(협약, 액비유통센터·공동시설 운영)					농식품부
계 (100)						

※ 최종 평가기준표는 향후 육우를 포함하여 통보할 예정임

2.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평가 (연차별 이행계획 · 실적)

평가항목	'08년 실적 (A)	'09년 계획 (B)	'09년 실적 (C)	달성율 (C/B)		성장율 (C/A)		합계 (특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사육두수 (한우-전체, 돼지-모돈)				16		4		
연간출하두수				16		4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16		4		
종축통일비율 (혈통등록비율)				8		2		
사료통일비율				8		2		
출하시기통일비율 (380kg이상, 80~93kg)				8		2		
1등급(A,B) 출현율				8		2		
계				80		20		

※ 1. '08년 실적 입력방법

- '08년 평가 실시 경영체 : 평가시 입력한 '08년 실적('07.10월~'08.9월 실적)
- '08년 평가 미실시 경영체
 - '09년 자금 신청 경영체 : 신청서 상 '08년 년도말 실적
 - '09년 자금 미신청 경영체 : 자체 사업결산 실적(문서, 총회 보고자료 등)

2. '09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연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보유자료로 수정 적용

3. '09년 실적 : 1의 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실적 입력('08.10월~'09.9월 실적)

4. 달성율 : 달성율×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율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 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종축통일비율, 사료통일비율, 출하시기통일성, 1등급 출현율의 실적이 1.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 현장실사자 :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인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인

③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팀장 최대휴 사무관 송광현	02-500-2101 02-500-2112

I.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 및 브랜드 내실화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우수 축산물 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계획		
▪ 한우 브랜드 사육 비중(% , 주지표)	39	32.2	32.6	37	2010.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 돼지 브랜드 사육 비중(% , 부지표)	59	50.9	51.7	56	2010.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돼지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5~'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계획	
사업량	20개소	10개소	10개소	5개소	5개소	
사 업 비	계	2,000	1,000	1,000	500	500
	보 조	1,000	500	500	200	200
	지방비	400	200	200	150	150
	자부담	600	300	300	150	150

※ '05년부터 시작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2. 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 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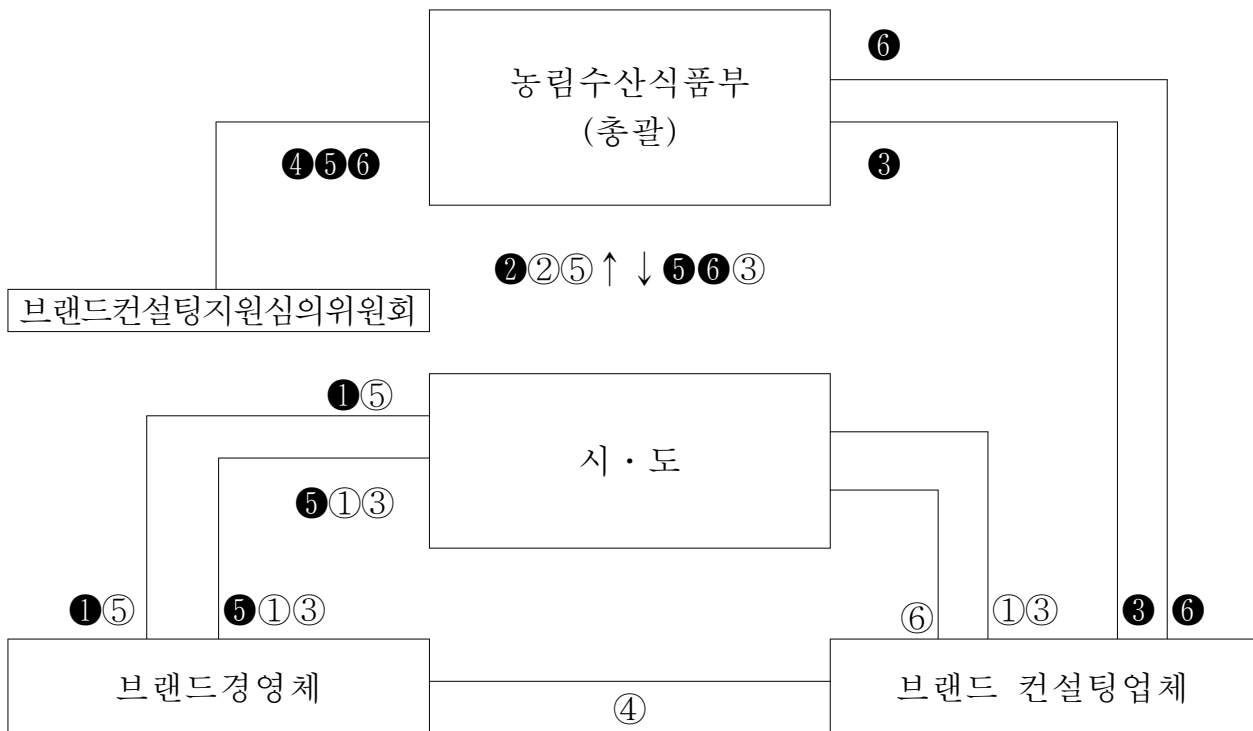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량 : 5개소
- 개소당 사업비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업체 지정 >

- ① 브랜드 경영체 사업신청(브랜드경영체→시·도, '08.11월초)
- ② 브랜드 경영체 심사평가표 작성 및 우선 순위 결정 보고(시·도→농식품부, '08.11월초)
- ③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신청(컨설팅업체→농식품부, '08.11월초)
- ④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농식품부, '08.12월)
- ⑤ 브랜드 경영체 선정, 통보(농식품부→시·도→브랜드경영체, '08.12월)
- ⑥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통보(농식품부→시·도, 컨설팅업체, '08.12월)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 >

- ① 공개 제안설명회 개최(시·도, '09.1월)
- ② 컨설팅업체 선정, 보고(시·도→농식품부, '09.2월)
- ③ 컨설팅업체 선정 승인(농식품부→시·도→브랜드경영체, 컨설팅업체, '09.3월)
- ④ 컨설팅계약 체결 및 컨설팅 시행(브랜드경영체↔컨설팅업체, '09.3월)
- ⑤ 사업완료결과 보고(브랜드경영체→시·도→농식품부)
- ⑥ 사업완료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컨설팅업체→시·도)

1. 사업신청단계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브랜드컨설팅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를 공모(시·도에 신청 안내)

신청조직

- 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영체는 컨설팅신청서(별지서식1)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신청 경영체는 컨설팅 의뢰 이유 및 목적, 컨설팅 희망 분야 및 과제,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영체의 준비사항, 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자율양식의 컨설팅 의뢰신청서를 작성·제출
- ※ 사업신청 경영체는 브랜드사업 부문(3통, 고품질, 도축 및 가공·판매 등)에 대한 실적을 축산물브랜드자가진단프로그램(www.hqbrand.net 참조)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시·도

- 시·도는 사업신청 경영체의 신청내용을 검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농식품부에 제출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민간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를 공모(신문 광고)

신청조직

- 사업 지원을 원하는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업체지정신청서(별지서식2)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민간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전문인력 및 컨설팅 실적 등 컨설팅업체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경영체를 최종 선정, 통보
 -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우선지원
 - 브랜드간 통합 등 규모화, 광역화를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우선지원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별지서식3)에 의거 브랜드 컨설팅업체의 서류심사와 “브랜드 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 심의를 거쳐 컨설팅업체를 지정, 통보
- 농식품부는 원만한 사업시행과 정보교환을 위해 시·도 담당자, 지원대상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정된 컨설팅업체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업체 선정 및 승인》

시·도

- 시·도에서는 시·도 담당자, 해당 브랜드경영체가 포함된 7인 이상의 브랜드 컨설팅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 시·도는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된 컨설팅 업체에 통보
 -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 통보시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함께 알려 효과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시·도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2개 이상의 컨설팅업체가 참여하는 공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컨설팅업체를 선정, 선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
 - 공개경쟁 진행과정과 컨설팅업체 평가내역 및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컨설팅 제안서 첨부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즉시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시·도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제안서가 지원대상경영체가 제출한 컨설팅의뢰신청서와 일치하며 그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업체 선정을 승인
 - 진행과정 및 사업내용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

3.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단계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은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붙임1]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계약서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4. 자금배정 · 집행 · 정산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시·도

- 시·도는 체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는 경영체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우선하여 집행토록 조치 및 확인
- 시·도는 지원대상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지급시기는 월별·분기별, 사업완료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
 - 시도는 경영체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현장확인 후 지급
 - ※ 시도는 사업비 한도액 배정후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에 지급 요청

《사업비 정산》

시·도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보고사항》

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의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붙임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컨설팅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컨설팅업체와 지원대상 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서식4)에 기록 관리
 - 시·도지사 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컨설팅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분기별 추진상황(별지서식5)을 시·도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완료후 결과보고서에는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개선 달성 정도, 마케팅 개선사항,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사업 취소》

1) 지원취소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경영체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지원금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대상 경영체에서 제외

2) 컨설팅업체의 자격기준 취소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 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 시 컨설팅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브랜드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말(지자체별 사업추진결과 평가회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식품부(지자체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추진중 1회, 사업완료후 1회이상 시·도 및 브랜드 경영체 등이 참여한 사업평가회(추진결과 보고 등)를 개최
 - 사업평가회를 통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요구 등 실시
 - 시·도는 최종 평가회를 거쳐 당초 사업계획대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사업비 집행률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결과와 함께 농식품부에 컨설팅 결과 보고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 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2009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 신청 및 선정>

- 사업희망 브랜드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1) 작성후 시·도에 제출 (‘09.10.15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09.10.20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09.12월)

<사업희망 브랜드 컨설팅 업체 지정 신청>

- 농식품부에서 브랜드 컨설팅 업체 지정 공고(신문공고) : 10월초
- 사업희망 컨설팅업체는 “지정신청서”(서식 2)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09.10월중 : 제출기한 별도 공고)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컨설팅 업체 지정(‘09.12월)

※ 기타사항은 2009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별지서식 1]

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사업신청서

법 인 명		대표자명		
브랜드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08판매금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신청 핵심과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책자금 지원현황	연도	자금종류	지원내역	금액(백만원)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컨설팅경험	연 도	컨설팅업체	주요내용	

[별지서식 3]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 심사 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컨설팅 업체 (15점)	조직안전성	5	4	3	2	○설립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사업자등록여부	
	브랜드컨설팅 전문성	10	8	6	4	○브랜드개발, 홍보전략, 마케팅전략 수립능력 ○조직화, 계열화 전략 수립 능력 ○상품화, 시장조사분석, 경영분석 능력	
컨설팅 제안 (25점)	컨설팅이해	5	4	3	2	○축산물브랜드사업 이해도 ○컨설팅업체의 역할에 대한 포지셔닝	
	컨설팅목적	5	4	3	2	○컨설팅 정책방향과 일치하는가? ○컨설팅 목적이 명확한가?	
	컨설팅과제	5	4	3	2	○컨설팅 핵심과제 설정이 적정한가?	
	컨설팅준비	10	8	6	4	○컨설팅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설정 능력 ○경영체와의 협조관계 구축 방안 (회의등) ○생산, 가공, 브랜드, 시장 연계분석 능력	
컨설팅 실적 (30점)	매출실적	5	4	3	2	○'07 매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가능 매출, 최근3년) - 6억이상, 4억이상, 2억이상, 2억이하	
	축산부문실적	10	8	6	4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경영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경영체 경영진단 중심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생산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계열화, 사양관리 분야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브랜드마케팅 컨설팅실적	5	4	3	2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컨설팅 인력 (30점)	컨설턴트총수	5	4	3	2	○10인이상, 7인이상, 5인이상, 5인이하	
	컨설턴트 전업비율	5	4	3	2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이하	
	컨설턴트경력	5	4	3	2	○컨설턴트 컨설팅 경력 총계 -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10년이하	
	컨설턴트 전문성	10	8	6	4	○생산 및 사양관리, 경영진단, 마케팅관리, 조직관리, 브랜드관리 등 컨설팅 각분야 를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 보유 여부	
	외부전문가	5	4	3	2	○전문성 보완 외부 전문가 및 기관확보정도	
합 계		100점 만점				점수 계	

[붙임 1]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 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컨설팅 내용 및 방법	- 계약 쌍방간 핵심 컨설팅 과제 사전합의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등 컨설팅 방법에 대한 규정
○ 컨설팅 대금 지급방법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경영체 혹은 행정기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 받지 못할 경우 동계약의 당사자간 효력등에 대한 내용

[붙임 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구 분	보고서 내용(필수항목)	비 고
중간보고서	○ 컨설팅 핵심과제 선정 ○ 축산물 브랜드사업 실태 조사 및 진단 ○ 문제점 도출 및 분석 ○ 해결방안 ○ 보고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업무협의회, 조사 및 분석내용 검토회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내용 검토회의, 해결방안 도출 및 내용 검토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	○ 중간보고서의 내용(필수항목) 포함 ○ 조합에 제시한 실행 계획 ○ 조합에서 실행한 사업 내용 ○ 실행과정상 시행착오 및 지도사항 ○ 컨설팅 성과 분석(농가계열화 확대 정도, 브랜드 축산물 출하확대) ○ 보고회 및 업무협의 참석(제시한 해결방안의 사업성 검토회의, 조합사업으로 실행여부 검토회의, 시행착오 및 수정안 검토회의, 사업추진현황 및 효과 검토회의, 사업추진실태 점검회의, 최종보고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팀 장 최대휴 사무관 강대진	02-500-2101 02-500-2107
시·도	축산물위생담당과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보조금)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참여농가(업체)수	320	45	80	175	2010.1	컨설팅 참여농가(업체)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450	800	1,400	2,560	3,200/년
보 조	225	400	700	960	1,200/년
용 자	-	-	-	-	-
지방비	-	-	280	640	800/년
자부담	225	400	420	960	1,200/년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와 축산물작업장(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 타 농림수산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 (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시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농장관리제도(GAP)와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판매, 보관, 운반, 집유)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영 지원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 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보조 3백만원, 지방비 2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 접수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08.1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대상자 신청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수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3. 컨설팅 업체의 지정·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붙임3 컨설팅 업체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인) 대상] 컨설팅 업체 선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 참여 공고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 방법(세부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HACCP컨설팅 계획”을 발표
 - 시·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HACCP 컨설팅 계획, 컨설턴트 전문성, 컨설팅 실적 등을 심사하여 참가한 컨설팅업체 중 농장(업체)별로 최고 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
 - * 심사위원회 : 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전문가 등 각 1명 이상과 사업대상자 (농업인·영업자) 등으로 구성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선정된 농업인·영업자와 컨설팅업체는 시·도의 확인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HACCP 지정신청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계약서 작성
 -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농가 또는 영업장 당 3,000천원) 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보조금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요청)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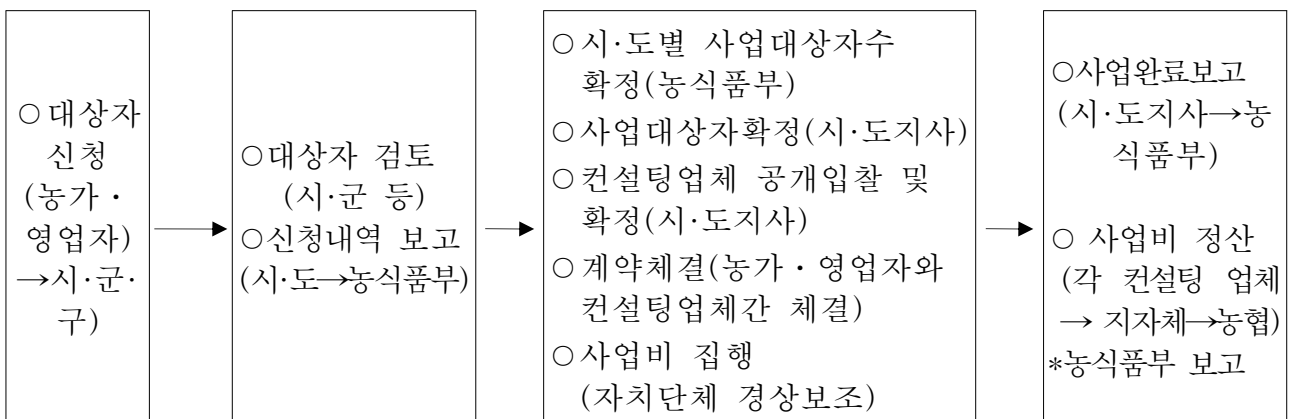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각 시·도별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및 예산배정(송금)

시·도(지자체)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은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시·도지사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진행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지원대상 농업인·영업자에게 고지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지사가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지정신청)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 시·도지사는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축산물HACCP기준원'의 지정신청 확인
 -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배정내역(지급계좌 포함)에 따라 시·도별 자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농가·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붙임2)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 포함)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컨설팅 대상 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제출,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 사항, HACCP 지정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농림수산식품부

- 연 2회 이상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 점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 사유가 지원 대상 농업인·영업자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업체 신청 기준(붙임3)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농가(업체)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을 분석
 - (컨설팅을 받은 업체중 HACCP 지정수/컨설팅을 받은 전체업체 수) × 100

《환 류》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 분석 결과를 각 시·도에 알려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컨설팅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시기 : 2009. 11~12월
- 수요조사 방법 등 : 2009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준함

붙임 1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업소)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재지 :

4.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규모(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질병발생내용 등

*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취급품목(생산품목), 취급량(생산량), 주요 거래내용(거래처) 등

6.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여부(가축사육농장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붙임 2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1. 컨설팅 농장(업소) 개요

- 농장(업소)명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사육두수(영업장 면적)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구분 기재
- 농가 등록번호 :

2. 컨설팅 업체 현황

- 업체명 :
- 컨설팅 전문가 :

3. 농장(업소) HACCP 컨설팅 계획대 실적

컨설팅 항목	계 획	실 적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 지도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개선조치, 검증, 기록유지 등)		
○ 영업자, 종사원 등 HACCP교육		
○ 선행 요건프로그램 작성지도		
○ 농장경영시스템운용방법 자문 (표준위생관리기준(SSOP)작성지도)		
○ 컨설팅 비용 확보 및 집행		
○ 기타 컨설팅 관련사항		
○ HACCP 지정 신청일		

- * 계획 및 실적 : HACCP컨설팅업체가 제시한 HACCP컨설팅 당초 계획(일정 등)에 따른 실적기재
- * 자금확보 및 집행실적은 항목별로 기재하되,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증빙자료 징구 등을 통한 최종 정산

4. 컨설팅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첨부) : 농가별(업소별) 최종 컨설팅 내용에 대한 평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 사육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공통사항]

- 회사(법인)설립 1년 이상(사업자등록 후)인 업체로서 HACCP·수의·축산·식품기술 분야 중 컨설팅 대상의 해당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거나 HACCP 분야 컨설팅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개별사항]

- 사육농가 : 전문인력중 수의사(최소 1명) 포함
- 축산물작업장 :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중 농림수산물식품부 등의 HACCP 지정 완료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컨설팅(총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법인 설립전 축산물 HACCP 컨설팅 실적은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시 인정 가능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기준

[공통사항]

- HACCP 분야 : HACCP교육기관에서 HACCP 교육 2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장컨설팅 혹은 기타 HACCP 컨설팅 경력이 있는 자

[개별사항]

가. 사육농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 축산계열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컨설팅지원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 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축산물작업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축산, 수의, 식품관련 전공자(학사 이상)자 또는 축산, 수의, 식품관련 업종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HACCP 컨설팅 지정완료 실적 10건 이상 보유자 또는 식육판매업 HACCP 지정완료 실적 보유자

[참고사항]

- HACCP 컨설팅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 컨설팅 표준화를 위한 교육 계획('09.2~3월중)

85	축산공제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서준한	02-500-1754 02-500-1760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부장 임삼환	02-2127-7652
LIG 컨소시엄	법인영업7팀	차장 정기수	02-6900-3533

I.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공제 및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
-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가축공제 및 가축보험(이하 “가축공제”라 한다)의 가입률을 6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가축공제 가입률 (주지표)	47.8	40.7	43.9	45.4	매년말	(공제가입두수/공제가입 대상 가축두수)×100
▪ 대상축종 증가수 (부지표)	1	1	2	1	매년말	매년도 가축공제 대상 축종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49,770	48,303	61,631	55,670	
보 조	75,057	23,415	28,673	27,835	
자부담	74,713	24,888	32,958	27,835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LIG 컨소시엄)가 판매하는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조건

- 가축공제료 및 보험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지원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나) 지원 제한사항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공제료 정부지원 제외
 - 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 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 *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축공제 축사특약에 대한 정부의 공제료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이하 “농업인”이라 말한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공제가입 촉진과 공제료 부담경감을 위해 가축공제(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공제료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공제료의 50% 보조
 - * 공제요율은 사업시행자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받은 요율 적용

○ 사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구 분	소			폐 지	말	사슴·양	가 금	별	축 사
	I(송아지)	II(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생후 2개월 이상	닭, 오리, 종계,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양봉, 한봉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공제료의 50%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가입대상	
소 · 사슴 · 양	한우 · 육우 · 젖소 · 사슴 · 양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까지 보상	-송아지 : 생후 2 개월 이상 -한우우:12월~13세미만 -젖소 : 8세미만 -사슴·양: 생후 2개월 이상
	종모우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씨수소
폐 지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중 적은 금액	-제한없음	
	○ 설해, 화재, 풍수해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 축산휴지손해 - 각종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100% 보상		
말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95%까지 보상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씨수말 번식컷해 선천성 불임 손해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단, 경주마는 가입금액의 60%까지 보상		
가금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까지 보상		
별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 세부 보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전년도 12월말)

사업시행자 (농협중앙회 · LIG컨소시엄)

- 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시달 내용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영업점, 지역농(축)협 본·지소 등에 사업계획 시달하여 사업대상 농업인이 일선 지역농협에서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주요 시달 내용 :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조건 등
- LIG컨소시엄 : 컨소시엄 업체 및 해당영업점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사업대상 농업인이 일선 영업점에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주요 시달 내용 :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조건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시행자 (농협중앙회 · LIG컨소시엄)

-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추진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산양, 면양), 벌 사육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시행자 (농협중앙회 · LIG컨소시엄)

- 사업시행자는 가축공제 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여, 일선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가입 희망 농업인에게 대해 공제계약체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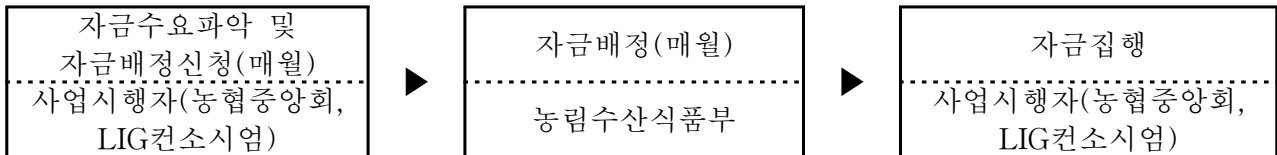
4. 자금배정단계

사업시행자
(농협중앙회·LIG컨소시엄)

- 사업시행자는 농업인이 지역농(축)협, 중앙회영업점, LIG컨소시엄 영업점 등에서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가축공제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하고, 가입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농협중앙회·LIG컨소시엄)

- 사업시행자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채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자 및 사업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공제계약 체결 지역 농(축)협, LIG컨소시엄 영업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자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농업인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자금집행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시행자
(농협중앙회·LIG컨소시엄)

○ 사업시행자는 지역농(축)협, 중앙회영업점, LIG컨소시엄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공제 가입율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사업시행자의 가입두수 실적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및 가축공제 관련자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및 LIG컨소시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가축공제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매년 1월중
- 평가대상 : 사업시행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가입두수를 제출 받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시행자는 2010년도 가축공제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09. 4월말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09.6월)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축공제 가입농업인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가축공제 가입자의 성공사례 및 가입방법 등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86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박홍식	02-500-2076 02-500-2077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사업본부	본부장 윤영탁 팀 장 안용석	031-390-5560 031-390-5531

I.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 촉진 필요
- 고급육 생산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 2000년이후 돼지고기 대일 수출중단 및 2003년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이후 고돈가 형성에 따라 양돈농가의 돈육 품질향상 의지 약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 거세우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 돼지고기 고품질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돈육 품질향상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한우 거세우중 1등급 이상 출현율 (%)	76.7	71.3	71.5	74.8 (('08.10월))	'10년 1월중	'09.1~12월까지 한우 거세우중 1등급 이상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 고품질 돈육생산 (%)	1.6	-	1	1.3 (('08.10월))	'10년 1월중	'09.1~12월까지 돼지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	13,935	19,472
보 조	-	-	-	13,935	19,472
용 자	-	-	-	-	-
지방비	-	-	-	-	-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와 육우의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농가 및 법인
-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농가 및 법인
 -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하여 사육한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한·육우의 거세우로서 해당 한·육우를 3개월 이상(이하 이동신고 완료시부터) 사육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생산농가 및 법인(단, 2009.6.21까지는 이력제 미등록우라도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 증명이 있는 경우 해당)
 - 돼지의 경우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을 할 수 있는 생산농가 및 법인(단, “혈청검사 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미만농가”는 지원제외)
 - 제한요건
 - 출하우중 이력제 등록 개체식별번호가 불일치하거나, 3개월이상 사육했다는 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하돼지에 대하여 생산자확인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와 혈청검사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미만인 경우
-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돈열항체 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80%미만인 사업대상자는 항체 양성율 확인일 기준 분기부터 돈열항체 검사결과 항체 양성율이 80%이상으로 확인된 이전분기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한우 거세우를 출하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등급 1⁺등급 이상 받은 농가 및 법인

- 육우 거세우를 출하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등급 1등급 이상 받은 농가 및 법인
- 돼지를 출하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 1⁺등급을 받고 혈청검사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이상인 농가 및 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거세한 한우와 육우, 돼지를 출하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장려금 지급

5. 지원형태 및 사업업무량

- 사업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기금보조 100%
- 지급대행기관 : 지역 농·축협
- 지원방법
 - 지역 농·축협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 내용과 장려금 지급을 요청하는 대상자와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지정계좌로 입금[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돼지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자체(시·도)로부터 돈열항체 양성율이 80% 이상임을 확인하여야함]
- 지급유효기간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 '09년도 사업량 : 소(78천두), 돼지(405천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한우
 - 거세우중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200천원/두
 - 거세우중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100천원/두
- 육우
 - 거세우중 육질 1⁺이상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200천원/두
 - 거세우중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100천원/두
- 돼지 : 육질 1⁺등급 판정을 받고 혈청검사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이상인 생산자에게 장려금 10천원/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사업시행지침 확정 발표
 -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농·축협), 생산자 단체 등에 통보

* 생산자단체 : 한·육우·양돈협회 시·군지부, 한우조합 등으로 이하 같다.

시·도 가축방역기관

-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은 관내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분기·개인별 돈열항체 양성을 검사결과 작성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요령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역 농·축협과 함께 사업공고, 생산자단체 및 작업장 경영자 등에게 사업 홍보

지역 농·축협, 생산자단체, 이력제 대행기관

- 소, 돼지 출하자에게 「서식1, 2」 생산자확인 및 「서식 3」 이력추적제 등록우에 대한 개체식별번호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서식 4」의 관련 대장 관리
 -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는 농가가 출하축(소, 돼지)에 대하여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이력제 대행기관은 3개월이상 사육기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개체식별번호확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2부 작성하여 등급판정 신청시 1부 제출(또는 농가로 하여금 제출토록함)하고 1부는 자체 보관·관리
- * 소·돼지 출하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 최초 등급판정신청시 현재의 연간 출하가능두수를 기록한 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해야하며, 이후 출하가능두수를 초과하여 출하되는 경우 생산자확인 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역 농·축협은 조합회원이 아니더라도 업무 관할구역내 농가가 사육중인 거세우 및 돼지에 대하여 생산자임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

사업대상자(생산농가 및 법인)

- 생산농가 및 법인은 출하를 위하여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이 가능해야함
 - 등급판정신청인은 등급판정신청서를 작성할때 출하축이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대상축으로 선정되고 통보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인적사항 기록, 장려금 지급 가능한 조합지정 및 계좌 개설(단, 유통업자라 할지라도 생축을 구매하여 등급판정신청서를 작성할때 사육농가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록

하고, 생산농가 조건에 적합한 이력제 등록우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3개월 이상의 사육기간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생산농가에게 장려금 지급 가능)

- 사육중인 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력제 등록을 마치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돼지를 사육하여 출하하는 농가와 법인은 관할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시·도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혈청검사 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이상이어야 함
- 소·돼지의 생산농가·법인은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생산자확인증명서는 최초 출하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축산물등급판정소

- 대상축이 쇠고기 이력제 등록우로 전산등록 상 소유자와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상의 신청인이 일치하고, 3개월이상의 사육기간을 경과하였음을 확인 가능한 경우 장려금 지급
 - 이력제 등록우라도 이동에 따른 신고 미이행 등으로 사육농가 또는 개체식별번호가 불일치하거나, 도축확인 과정에서 귀표(개체식별번호)가 미부착 또는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출하한 거세우중 이력개체식별번호 미기, 누락, 오기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통업체가 출하하는 경우라도 등급판정사는 「생산자 확인 증명서」의 사육농가 기재사항과 이력제 대행기관의 3개월이상 사육농가 확인 및 등급판정신청서의 사육농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할 경우 장려금 지급 통보(불일치하는 경우 장려금 미지급)
- 출하한 돼지의 경우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대상축 중에서 기준에 적합하고 지자체(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돈열항체 양성율이 적합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결과 대상축에 대하여 「서식 5」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를 작성하여 출하자와 출하자 주소지의 지역농·축협에 통보
 - 도축장명, 판정일자, 생산자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도체번호, 도체번호, 품종, 등급판정결과, 지급금액, 포상금지급조합명 등 기입
 -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가축(또는 고기)의 등급판정 신청일 이후에 발급된 생산자확인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사업시행 기간 : 2009.1.1~2009.12.31(1년간)

※ 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대상기간 : '08.10.1~'09.9.31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요령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검토하여 승인

시·도 가축방역기관

○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은 관내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분기·개인별로 돈열항체 양성을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당 지자체에 보고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사업에 대하여 농·축협, 생산자단체 및 작업장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 등급판정신청에 따른 축종별 등급판정 결과, 생산자확인 또는 개체식별번호 일치 및 3개월이상 사육기간의 경과 증명에 근거하여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대상축을 선정하고 대상자 및 지역 농·축협에 통보
- 축산물 등급판정소는 분기별로 지자체에 돈열항체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지급대상을 선별하고, 돈열항체 검사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사유를 통보
- 지역 축협으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요청에 따른 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신청 및 축협에 장려금 지급

지역 농·축협, 생산자단체

-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는 관할지역에서 소, 돼지를 사육하고 출하를 위한 생산자확인증명 발급 요청시 발급
- 지역 농·축협을 경유하여 출하한 생산농가 및 법인에 대하여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접수
 - 장려금 통보를 받은 대상농가 및 법인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자체자금으로 가지급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지급요청

이력제 대행기관

- 대행기관은 사육농가로 부터 출하전 이력제 등록을 마치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관할지역에서 대행기관의 관리를 통한 3개월이상의 사육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3」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시 발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배정 및 기금관리국에 자금배정 내역통보

축발기금관리국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자금을 배분 받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지급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역축협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청을 받아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 돼지의 경우 사업기간을 전년 10월에서 당해연도 9월로 정하고, 분기별 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신청
- 기금사무국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장려금 지급요청을 받은 지역축협별로 장려금 지급

지역 농·축협

- 해당 농·축협을 통하여 출하했던 소, 돼지에 대하여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내용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확인시항의 확인 및 지급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서식 5」에 발급일자 기준으로 2개월이내일것
 -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지급신청을 접수한 지역농·축협에서는 우선 자체자금으로 신청 당일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지역농협에서는 「서식 7」에 따라 지역축협에 자금지급을 신청하고, 지역축협은 10일 간격으로 1개월이내에 「서식 6」에 의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지급 요청
 - 지역축협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장려금 수령 즉시 지역농협에 지급

사업대상자(생산농가 및 법인)

- 생산농가 및 법인은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통보 받은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에 따라 계통출하 농·축협 또는 생산자확인증명 발급 농·축협에
장려금 지급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사업운영실태, 사업추진현황, 지원규모, 사업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사업대상자 및 사업관리주체로부터 사업운영부실 조직으로 지적
받은 농·축협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축산물등급판정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중점점검사항
- 사업추진관련 사항 : 개체식별 관리 및 생산자확인증명서 발급
- 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관리 전반

시·도 가축방역 기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방역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5-69호, '05.9.27) 준수

사업관리주체(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품질고급화사업 참여 농·축협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점검하여 출하축의
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및 대장관리 등을 점검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품질고급화장려금 월별지급 내역을 익월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지역 농·축협), 이력제 대행기관

- 출하농가, 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생산자확인증명에 대한 적정성 수시점검
- 한·육우가 이력제 등록을 마치고 대행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에
대한 확인증명서 발급 및 사육기간 관리등 수시점검

《 제 재 》

자금관리주체(지역 농·축협)

- 출하시 생산자 여부를 허위로 확인한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허위로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한·육우 고급육 출현율 확대(%)
 - 고급육생산의 기본이 되는 수소의 거세율을 확대·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 측정항목 : 한우 거세우중 1등급 이상 출현율
 - 측정시기 : '10년 1월
 - 측정기준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공표하는 2009년의 소도체등급판정결과
- 고품질 돈육생산(%)
 - 돼지고기 고품질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돈육 품질향상
 - 측정항목 : 돼지등급판정결과 육질 1등급 출현율
 - 측정시기 : '10년 1월
 - 측정기준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공표하는 2009년의 돼지도체등급판정결과

7. 사업평과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매년 1.1일부터 12.31까지, 익년 1월말까지
 - 성과측정 자료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평가기준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실시
 - 한우 숫소 중 거세우 고급육 출현율 확대 및 고품질 돈육생산율 등
 - 품질고급화장려금지급에 대한 생산농가의 만족도 등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품질고급화장려금사업의 성과 미흡시 원인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 개선추진
- 우리부 사업평가부서의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운영개선으로 환류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 수요조사 없이 2009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정하여 사업추진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

[서식1]

소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번호 : 2009-○-○호

구분	생산자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출하가능두수 또는 개체식별번호(12자리 기재)	품종	포상금 지급조합명

상기인은 품질고급화장려금 참여 농가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생산자 단체장 (인)

※ 발급번호 작성요령 : 2009(년도)-(월)-(월별 발급연번)

[서식2]

돼지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번호 : 2009-○-○호

구분	생산자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당해연도 최초 발행일 현재 출하가능두수	출하 두수	출하두수 누계	포상금 지급조합명

※ 생산자별 당해연도 출하두수 누계가 당해연도 최초 발행일 현재 출하가능두수를 초과할 경우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상기인은 품질고급화장려금 참여 농가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생산자 단체장 (인)

※ 발급번호 작성요령 : 2009(년도)-(월)-(월별 발급연번)

[서식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

발급번호 : 2009-○-○호

연번	생산자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대행기관 관리기간	확인기간
				123456789112	2008.00.00~2009.02.12	3개월12일
계				두		

상기인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개체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고, 3개월이상 사육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대행기관 단체장 (인)

※ 발급번호 작성요령 : 2009(년도)-(월)-(월별 발급연번)

[서식 4]

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대장

<소>

발급 번호	발급 날짜	생산자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출하가능두수 또는 개체식별번호	출하 두수	품종	출하처

<돼지>

구분	생산자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당해연도 최초 발행일 현재 출하가능두수	출하 두수	출하두수 누계	출하처

[서식 5]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

등급판정 도축장명	판정 일자	생산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도체 번호	품 종	등급판 정결과	지급 금액	포상금지 금조항명

추산물등급판정소 지역본부 등급판정사 년 월 일
(인)

[서식 6]

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

받음 : 축산물등급판정소장

보냄 : ○○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일련 번호	도축 장명	판정 일자	생산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 록번호	등급판 정결과	도체 번호	품종	가지급 일 자	지급액
한우	1 ⁺⁺					두				원
	1 ⁺					두				원
	소 계					두				원
육우	1 ⁺⁺					두				원
	1 ⁺					두				원
	1					두				원
	소 계					두				원
돼지	1 ⁺					두			원	
합 계										

※ 축산물등급판정소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Tel : 031-390-5532)우편번호 : 435-010

[서식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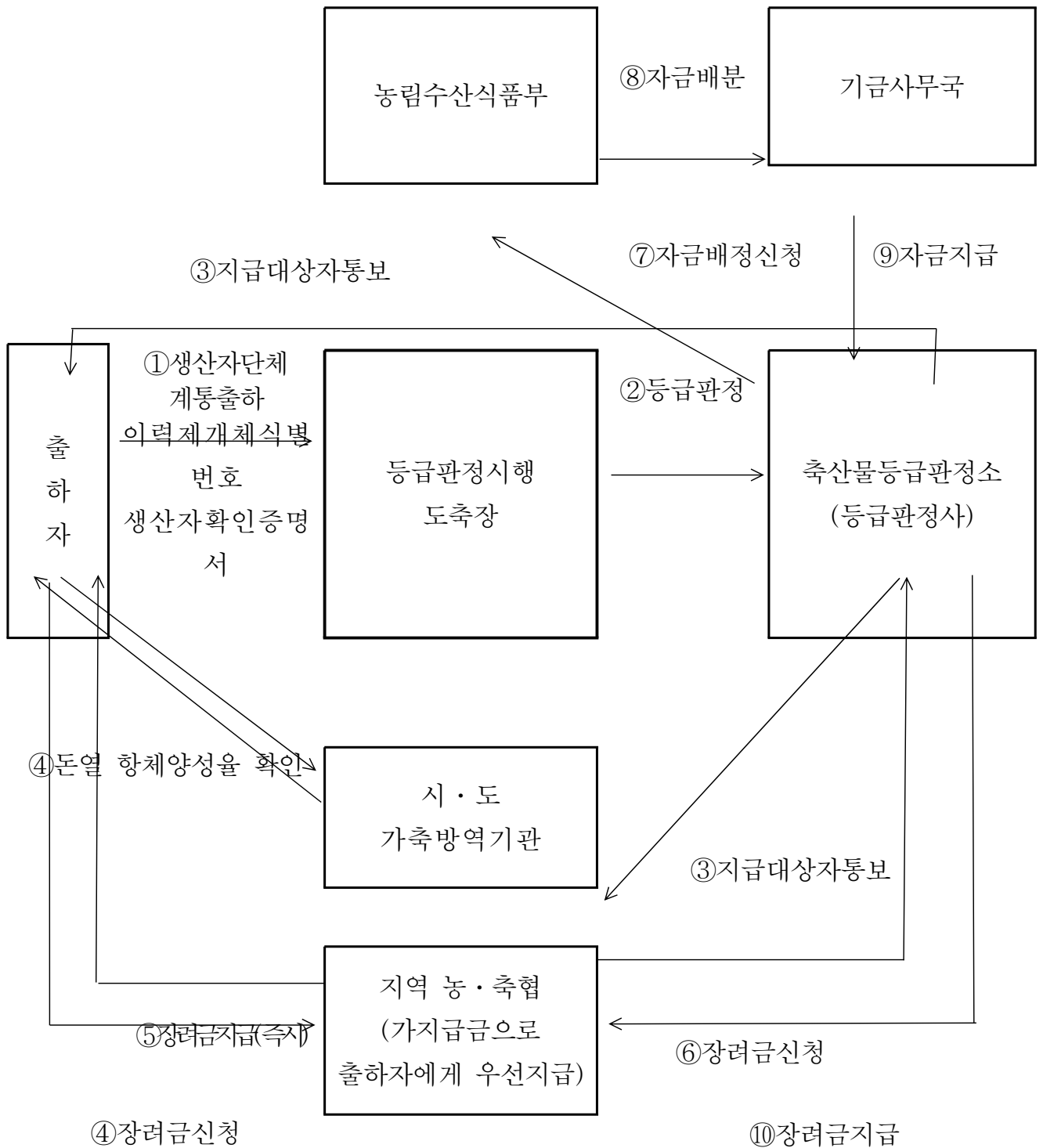
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

받음 : ○○축산업협동조합장

보냄 : ○○농협조합장 (인)

일련 번호	도축 장명	판정 일자	생산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 록번호	등급판 정결과	도체 번호	품종	가지급 일 자	지급액
한우	1 ⁺⁺					두				원
	1 ⁺					두				원
	소 계					두				원
육우	1 ⁺⁺					두				원
	1 ⁺					두				원
	1					두				원
	소 계					두				원
돼지	1 ⁺					두			원	
합 계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체계도



※ 지역농협에서는 장려금을 자체자금으로 우선 지급한 후 이를 지역축협에 신청하고, 지역축협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배정을 요구하여 장려금 수령 즉시 지역 농협에 지급

【수산분야】

I . 생산기반 확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과장 박호근 사무관 조성남	02-500-2388 02-500-2394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수산과 (자율관리어업 담당과)		

I.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 체계를 구축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4조(보조등)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보조대상) 제12호 (어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수를 2009년까지 770개소 참여를 유도하고 2011년에는 1,000개소까지 확대 유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6	'07	'08		
▪ 자율관리어업 누적 참여공동체수(개소)	770	445	579	659	2009.1	각 지자체에서 참여공동체를 선정하여 보고한 공동체수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49,300	11,800	14,300	14,300	100,100
보 조	24,650	5,900	7,150	7,150	50,050
용 자	-	-	-	-	-
지방비	14,790	4,720	5,720	5,720	40,040
자부담	9,860	1,180	1,430	1,430	10,01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공동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9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40개 우수공동체
3. 지원 사업내용 및 용도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지침” 제6조 내지 제9조 참조
4. 지원기준 및 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공동체당 지원금액 : 0.5~3억원
 - 2008년도 등급, 구성원수, 기존·신규공동체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군별 육성사업비 지원규모 확정·통보

시·도, 시·군구

- 육성사업비 지원대상공동체를 확정하여 해당 자율관리 우수공동체에 통보

자율관리공동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우수공동체는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적절한가를 국립수산과학원 지

방수산사무소의 의견을 들어 검토

- 설계서 작성은 2009년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단가를 기준하여 작성. 이 경우 2009년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사업시설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대상사업 가운데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개별수산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개별 수산사업의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 다만, 사업추진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해사업의 준용지침중 일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검토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자율관리공동체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 시행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단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추진상황을 감안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부대비 등에 집행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 우수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전항의 규정 외에 현지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우수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 확정하여야 함

- 사업착수, 사업진행, 준공사항 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자율관리 공동체 전담어촌지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을 함
- 시·도는 당해연도의 육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자금배정 요청을 검토하여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검정하고, 보조금 확정, 통보함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사업 실시 규정”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행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5년으로 하여 관리
- 육성사업비로 수산종묘(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시설물중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60일 이내에 우수공동체가 어촌계 또는 공동(체) 명의로 등록을 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상·하반기별로 확인·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

《보고》

시·도지사

- 시·도는 다음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
- 보조사업 실적보고 : 회계연도 종료시 및 사업 완료시

5. 성과측정단계

- 자율관리어업 누적 참여공동체수 성과 측정
 - 측정산식 : 당해연도말 누계 참여공동체수를 집계
 - 측정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연도말까지 추가선정·포기 공동체수 집계
 - 근거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한 공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시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8.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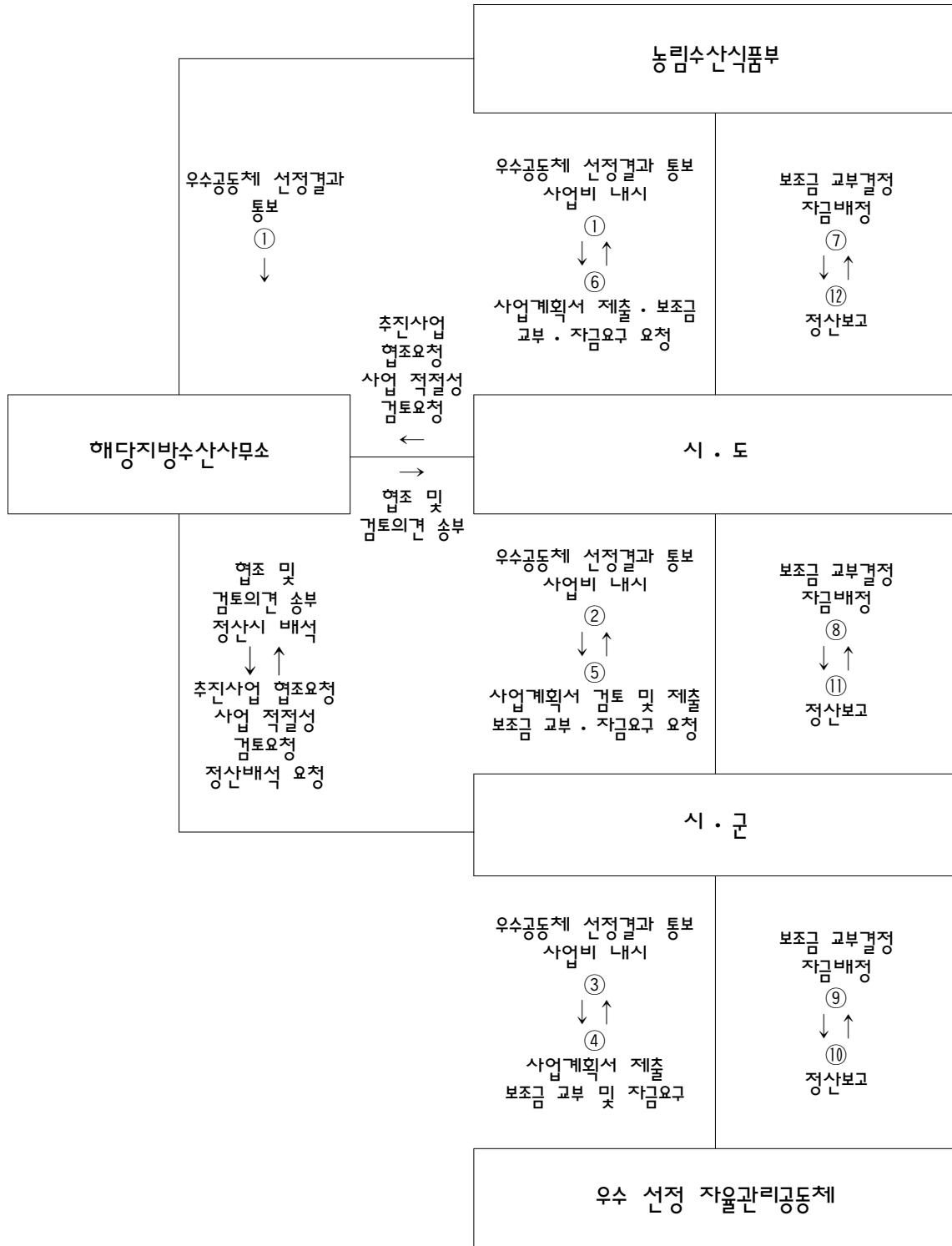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시달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우수공동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장이 제정한 조합계약규정에)」 등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관계법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규정에 따름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중 별도 시달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중 별도 시달

「별첨」

사업추진체계



[별지 제1호 서식]

지 원 신 청 서

신 청 자	공동체명				참여어촌계 (또는 지역)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 -	
	주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200 . . .)	참여 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사업내용별 규모						
	사업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자부담 (%)
		국고계 (%)	보 조 (%)	용 자 (%)			
자 기 자 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p>상기와 같이 2009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자
- 사업내용(세부사업명, 장소, 금액, 추진일정 등)

-
-

2.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 경비부담자, 금액, 부담방법

구분	금액	부담자	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세부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금액	추진효과	비고

5. 보조사업 수행후 연간수지(명세)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항목	금액	산출근거

6. 사업비 산출 기초(수정가능)

사업명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적(누계)					
	사업 량	국고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담	계	사업 량	국고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적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

착(준) 공 계

1. 사업명

2. 시설장소

3. 사업기간

- 착공일
- 준공(예정)일

4. 사업내용

5. 기타사항(예상문제점, 특이사항 등)

위와 같이 착(준)공되었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업공동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귀 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장 최완현 서기관 김재철	02-500-2375 02-500-2376

I. 사업개요

1. 목 적

- 개발압력이 거센 수산자원 보호구역(해면 및 인접육역)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각종 위해 행위로부터 수산자원 보호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67조의2, 수산업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수산업법시행령제6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자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해행위 방지 및 대국민 계도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위반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연1회이상) 조사
 -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이용행위 계도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산자원 보호구역 현지 이용실태 조사(회)	1	-	-	-	2009.12	지자체별 조사결과 보고서
▪ 안내표지판 설치 (개소)	20	-	-	-	2009.12	지자체별 조사결과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200	2,700
- 보조				100	1,350
- 지방비				100	1,35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관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

3. 지원대상

-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 위반사항 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위반 사항 조사 및 안내표지 설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고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연안 수산보호구역에 대한 연 1회이상 행위위반 사항 실태조사 및 안내 표지판 설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안 수산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관청 1개소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시·도에 배정,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면적,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조정 재배정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및 세부사업 계획

1. 사업 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목표, 세부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는 연안 수산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별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획, 보조금 배정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 수산자원 보호구역 실태조사비는 아래 시·도별 국고지원 기준에 포함된

시·군으로 배정하되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적절히 배정하며, 시·도별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안내포지판은 '09년도 시·도별 설치갯수(경남7, 전남10, 충남3) 범위내에서 지역특성(灣別)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시·군별 설치 수 확정

○ 시·도별 국고지원 기준

- 경남(7개 지자체/35,000백만원) : 마산·사천, 통영, 거제, 남해, 하동, 고성.

- 전남(10개 지자체/50,000백만원) : 여수, 완도, 해남, 강진, 장흥, 고흥, 보성, 영광, 함평, 무안(순천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결과안에 의하면 육역부분은 전면해제 대상임으로 금회제외)

- 충남(3개지자체/15,000백만원) :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신청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세부계획에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시·도는 지방비 예산확보

3. 세부 사업계획

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및 공유수면

□ 조사 기준 및 기간

○ 조사기준 : 매년 9월 1일

○ 조사내용 :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용실태

-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행위제한 이행준수 여부 등

○ 조사기간 : 매년 9월1일~10월15일(45일간)

□ 조사방법

○ 조사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정기 조사계획을 수립

-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등 포함

- 시장·군수는 조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및 예산확보, 타부서 협조 등을 조치할 수 있음

○ 세부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처리

-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공부 확인
- 시장·군수는 조사기준일 현재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위반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를 리·동별로 구분 작성하고, 시·군 및 시·도별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결과”(별지 제2호 및 3호 서식) 작성·비치
- 시장·군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를 기초로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의3, 제94조의2 규정 등에 의한 조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단, 타 법령 등에 의한 처분 등의 대상은 소관 부서에 통보
- 시장·군수는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조치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현황을 촬영한 사진기록 및 마을리장, 어촌계장 등이 확인하는 확인서 확보

□ 수산자원보호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

-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 보호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수산업법 제67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3)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주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수산업법 제67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의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개별법에 의한 협의절차 등을 완료하여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조정(해제) 한 후 시행하는 건축물·시설 등 설치행위

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설치장소 : 관리관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수산자원보호구역 주요지점에 설치
- 안내표지판 표시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위치와 경계 표시
 -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 위치 및 경계구역도 표시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등
 - 관리관청은 수산관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불법행위자를 발견할 경우

의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내표시판에 표시

□ 안내표지판 형태와 규격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 참조

다. 사업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09.6.30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시판을 설치완료
- 시장·군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결과 사본을 12월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12월31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별지 3호서식)

4. 자금배정 단계

농식품부

- 시·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배정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사업계획에 시·군에 자금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현장점검
 -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안내표지판 설치현황

《제재》

- 보조금은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농식품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2009.12월 이용실태 조사보고서 자료를 통해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에서 제출한 이용실태 조사보고서 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

《환류》

-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현지조사 및 안내표지판 등의 사업계획에 의한 이행상황 평가결과를 익년도 예산 배정시 검토반영

[별지 제2호서식]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결과(시·군)

지정현황

고시연월일	고시번호	법정 리·동	지정면적(km ²)			비고
			합계	육지	수면	

이용현황

<지목별 현황(m²)>

법정 리·동	전	답	임야	대지	공장 용지	잡종지	기타	계

<해면현황(m²)>

법정 읍·면	해면	양식장	공작물	기타	계

행위위반 사항 조사결과(토지)

법정 리·동	토지위치			위반내용	조치결과	비고
	지번	지목	면적(m ²)			

안내표지판 설치

읍·면·동	설치일자	설치장소	관리청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결과(시·도)

지정현황

고시연월일	고시번호	시군별	지정면적(km ²)			비고
			합계	육지	수면	

이용현황

<지목별 현황(m²)>

시·군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 용지	잡종지	기타	계

<해면 현황(m²)>

시군별	수면	양식장	공작물	기타	계

이용실태 조사결과(토지)

시·군별	토지위치			위반내용	조치결과	비고
	지번	지목	면적(m ²)			

안내표지판 설치

시·군별	설치일자	설치장소	관리청	비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과장 박호근 사무관 장귀표	02-500-2388 02-500-2395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안 바다에 인공어초, 인공해조장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체계적 어장관리를 통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으로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자금의 보조 등), 제9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바다목장 조성 (개소)	12	4	7	9	2010. 1	지원 실적 / 목표 (50개소) × 100 ※ 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 재정투입(억원)	120	40	81	96	2010. 1	투입액/목표치 × 100 ※ 2020년까지 2500억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4,000	8,100	9,600	12,000	216,300
보 조	2,000	4,100	4,800	6,000	108,150
지방비	2,000	4,000	4,800	6,000	108,15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대학 등)의 의뢰하여 작성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과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
 - 기본계획에는 어장 및 자원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저지형 및 서식 생물상 조사를 통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조성 방안 수립
 - 또한 관련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업인 대표, 바다목장 사업수행경력이 있는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반영
- 시·도지사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지방비(50%) 투입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효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적정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이용·관리규정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자체 예산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요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해중림, 종묘방류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시·도비 25%, 시·군 25%)
- 지원대상 : 12개소(강릉, 고군산, 거제, 제주 성산, 보령, 군산 직도, 사천, 연평, 속초, 기장, 신안, 제주 강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년간 1개소당 50억원(국비 25억, 지방비 25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소규모 바다목장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자체비용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거쳐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반영하여 사업 신청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소규모바다목장 기본계획’에 대해 시범 바다목장 주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본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시도별 사업 규모를 시달
 - 재정여건과 지역별 수산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지원하되 시범바다목장 선정 탈락 지역 또는 범정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시·도(지자체)

-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하되, 사전조사 및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후보해역 선정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사업대상해역 범위, 인공어초·해조장 시설 등 배치계획, 수산종묘방류 등 사업내용 전반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조성이후 지속적 관리·이용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한 후 사업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국가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 승인
 - 사업대상 선정·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인공어초, 해조장, 종묘방류 등 사업 실시
 -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배치·시공, 방류대상 품종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 수행

국립수산과학원

- 소규모 바다목장 해역에 대한 자원조성 및 어장조성 효과 등에 지자체에 자문하고, 각종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당해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
 -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보고서 등 심사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지방비(사업비 50%)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자금배정 요청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 확정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후관리계획 수립 보고
 - 시·도지사는 바다목장 해역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제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등을 명시한 사후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고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 확정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반기 1회) 하고 지자체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에 직접 참석하여 지도·점검
- 사업추진실적 파악(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평가(연 1회)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에 본부 및 국립수산물학원에서 참석하여 계획수립과정 점검
 - 사업적지 조사, 대상해역 어촌계, 어선어업인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적정이용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에 대해 사전 동의 여부 조사 평가
-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지 점검 평가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2010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림수산물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0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수산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90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장 서재연 사무관 김동욱	02-500-2302 02-500-2358

I.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의 영양, 건강 및 기능성에 대한 집중 홍보와 소비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물의 판매확대 도모
- 수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어업인과 소비자 이익 향상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
 - 소비촉진 사업 추진을 통해 전년대비 수산물 소비량 확대
- 인터넷 수산시장의 매출액 증대
 - 고객지향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2010년까지 매출액 14억원 달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 표 산 출 시 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산물의 국내소비량(천톤)	5,080	4,568	4,621	4,854	익년 2월	수산물의 총공급량 중 수출 및 차년도 이월분 제외
▪ 인터넷수산시장 매출액(백만원)	1,240	762	942	1,050	익년 1월	인터넷수산시장의 연간 매출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3,412	650	1,050	1,350	1,400
보 조	3,412	650	1,050	1,350	900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 수산물수요개발					
- 보 조	2,197	400	800	850	900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인터넷수산시장				전자상거래활성화	전자상거래활성화
- 보 조	1,215	250	250	500	500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 수산물 관련 단체, 수산물 생산업체 등
 - 단,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은 시스템이 구축·운영중인 한국수산회 및 수협중앙회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한 캠페인 및 시식행사 등 수요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수산물 관련 업체 또는 단체
-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의 경우, 인터넷수산시장 및 수협온라인도매시장

3. 지원대상

-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경비
 - 소비촉진 행사 추진에 따른 인건비, 물품구입비, 시설장치비, 행사진행비

및 일반관리비 등

- 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홍보마케팅 및 직접 경비 등 운영비

○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대상 사업(예시)

- 수산물 요리 이벤트, 시식행사 및 직거래장터 등 판매촉진 행사
- 단체급식 활성화를 위한 메뉴개발 과 개발메뉴에 대한 배포 및 홍보
- 어린이·청소년 등의 수산물 선호도 제고를 위한 요리강좌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다양한 어식문화의 보급 확대
- 지역별·계절별 수산특산물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수산물의 영양과 효능, 요리비법 등을 소개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 품질인증품, 지역특산품, 친환경수산물 등 우수수산물의 전시 판매, 싱싱회 등 시식행사의 실시
- 기타 수산업·어업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개최 및 홍보사업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물 시식행사, 소비촉진 캠페인 및 홍보이벤트 등 사업추진에 있어 홍보·행사·품목 등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
- 수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경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민간단체 경상 보조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100%, 다만 필요시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비촉진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에 따라 구체적 지원규모 결정
 - 사업기간, 행사규모, 인력 및 물량 동원량 등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초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공모('09. 1월중)
 - 수산물 관련 업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요청 공문 시행

수산물 관련 업·단체

-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산물 관련 업단체는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공문에서 정한 제출기한내 수산정책과에 제출
- 한국수산회 및 수협중앙회는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정책과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예산지원의 타당성 등 검토('09. 2월중)
 - 아이템의 참신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및 사업자의 수행능력 등 검토
 - 전년도 소비촉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등 감안
- 지원대상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 결정
- 해당 업단체에 대해 사업자 선정 통보('09. 2월말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산물 관련 업·단체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09. 3월초)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에 대해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세부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경미한 사항은 사전협의로 같음)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사업계획 승인 통보
- 세부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금 지급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자금은 개산금(총사업비의 85%)을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교부확정시 잔액(총사업비의 15%)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 개산금을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교부확정

수산관련 업·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서, 개산금 지급요청서 및 계좌입금 지정의뢰서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교부하고, 자금부서에 개산금 지급을 요청
 - 자금부서에서는 지정된 계좌에 보조금(개산금)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수산관련 업·단체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비 정산을 요청
 - 정산 요청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및 보조금입금 통장사본 등을 첨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정산 및 교부금 확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보조금의 교부신청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
-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자 및 자금부서로 통지
- 자금부서는 지급잔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

《사후관리》

수산관련 업·단체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 추진일정 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상황 및 홍보실적 등 포함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상·하반기 또는 수시)
- * 점검에 따른 세부일정 및 구체적 점검사항은 별도 통지

○ 성과품의 소유권

- 산출된 성과물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음

《제재》

-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을 해태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추진계획 대비 70% 미만) 또는 최종 교부결정한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수산물 소비량 측정
-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연간 매출액 파악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수산물 관련 업·단체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성과평가는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 등 자체실정에 따라 실시하되, 가능한 수치 및 계량화된 근거를 제시

농림수산물식품부

- 소비촉진 추진사업 성과 평가
 -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의 효과성, 고객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선정시 반영하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09년 시범사업 실시 후 별도 수립 통보
-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여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등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수요 조사 실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별지 제2호서식 】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자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 추진 목표

나. 사업규모, 내용 및 추진일정

다. 홍보 계획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 자금조달계획 : 자담금이 있는 경우에 한함

라. 사업성과 방안

마. 기대효과 등

5. 사업여건

※ 첨부 :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소요명세서 등 관련 서류

☞ 사업자는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완현 기술서기관 박환준	02-500-2375 02-500-2378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관리과	과 장 이상윤 어촌지도관 성풍만	051-720-2970 051-637-184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과 장 김문수 어촌지도관 김대환	064-710-3242 064-710-3242

I. 사업개요

1. 목 적

- WTO/DDA, FTA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 남획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2. 근거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율을 1,500개소까지 확대 추진
 - “13년까지 배합사료 품질 개선 및 어가당 지원한도 확대 등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1,000개소까지 확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친환경 배합 사료 사용어가 전년대 비 증가율	8%	7.7%	△25.3 %	7.1%	'08.12	[(당해년도어가수-전년도 어 가수)÷전년도어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5,100	9,200	7,150	7,450	39,400
- 보 조	25,100	9,200	7,150	7,450	39,400

※ 균특회계 제주계정 포함 : ('07)500백만원, ('08)450백만원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권 처분관청인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양식어업권(면허, 허가, 신고)을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 단, 어업권 관련 행정처분관청(지자체)으로부터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자이거나 당해 사업 자격 박탈자는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사업자 제외대상
 - 면허·허가(신고) 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업 대상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집행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2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대상양식장
 - 배합사료를 3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
- 양식장별 대상어종
 - 가두리양식장(축제식 포함) :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 수조식양식장 :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 ※ 지원범위 : 치어기부터 성어기까지 어류(단, 종묘는 제외)
- 대상어종 선정·심의
 - 사업지원 대상어종의 지속추진 및 추가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합사료 지원사업 선정·심의 위원회”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대상어종의 선정·심의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선정심의 신청이 있거나, 선정·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들어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배합사료 지원사업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원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20인 이내 구성하여야 한다.
 - 선정·심의 의결은 위원회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면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에 대해 지원
-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및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4조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 수분함량 기준(14% 이하)을 초과하여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된 배합사료이며,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별지 제2호 서식의 급이계획서, 별지 제5

- 호 서식의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자가 제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집행주체는 검토하여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
- 별지 제5호 서식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작성이 불성실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집행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허가(신고)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조식 양식장 : 수면적 3,500㎡당 60,000천원
- 가두리 양식장 : 면허면적 1ha(최대시설 : 면허면적의 20%)당 60,000천원
 - 단, 승어는 면허면적 1ha(최대시설 : 면허면적의 20%)당 8,500천원
- ※ 사업지원 대상면적의 80%이상을 대상어종으로 양식하면서 지원대상 어종이 아닌 품종도 배합사료를 100%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도액도 100% 인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국립수산과학원(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관리주체 : 국립수산과학원(제주특별자치도)(이하 “수산과학원”)
- 공고시기 : 연 4회(1, 3, 6, 9월)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별표 1)를 작성하여 수산과학원에 제출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
 - 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수산과학원)는 사업신청자 및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관계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국립수산과학원(지방수산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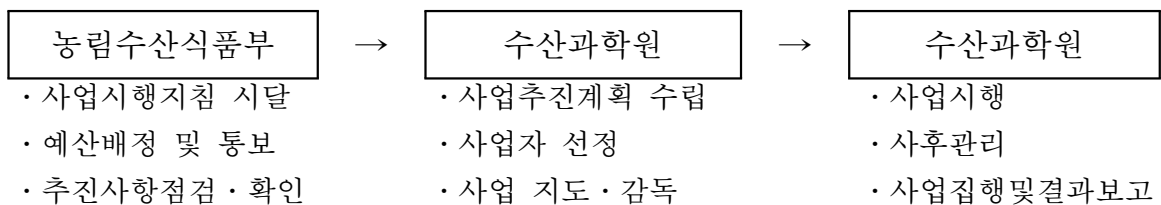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수산과학원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수산과학원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는 시·도 또는 시·군, 연구소(양식사료연구센터 등), 수산학계, 수협 및 양식어업인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에서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우선순위
 - ① 전년도 배합사료를 100% 사용실적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 ② 당해연도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 ③ 당해연도 3개월이상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 ④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식장
 - ⑤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장
 - ⑥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인접 양식장
 - ⑦ 어장정화 실적이 있는 양식장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어촌계장 또는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관리주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격 승계를 인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0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08.12월
 - 수산과학원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수산과학원) : '09.1월
 - 관할 어업인들에게 홍보 실시
- 사업설명회 실시(수산과학원) : '09.1월
 - 사업신청자, 사료회사(대리점)에 사업 설명
- 사업 추진체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기배정을 통해 자금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수산과학원

- 분기별 사업자를 선정한 후, 3개월 이상 사용시 분기별 후정산 지급
- 등록된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 등록업자 :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08.11월말일까지
 - 계속 등록업자 : 2008.1.1~2008.11월말일까지
- ※ 2008.12.1부터 2009.11월말일까지 배합사료 보조금은 2009예산으로 지원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비 정산시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처리
 - 대상어종 및 양식방법별 지원한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배합사료 급이대장을 첨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를 취합, 매분기 익월 10일까지(4/4분기는 12월10일까지 정산) 사업관리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사료회사(대리점)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2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
 - 실시시기 : 6, 11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수산과학원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 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
 - 사업관리주체는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등)는 당해 지방청(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별표 2의 “각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할 지역이외의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또는 동회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리점(국내외 배합사료를 취급하는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등)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여 사법당국 고발조치 및 배합사료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등)

《제재》

수산과학원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집행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 조치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
 -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산과학원은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 동 사업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나 대리점 등)는 분기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수산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방수산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한다.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수산과학원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말까지 확인한다
- 사업대상자 선정(변경·제외 등 포함) 및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보고

구 분	기 관 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수산과학원 → 농림수산식품부	분기말 익월 15일	별지 제4호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	반기말 익월 15일	별지 제6호서식
예산집행실적	”	매월말 익월 5일한	별지 제7호서식

- 보고 주체 : 국립수산과학원(수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관리주체 : 국립수산과학원(제주특별자치도)(이하 “수산과학원”)
- 공고시기 : 연 4회(1, 3, 6, 9월)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별표 1)를 작성하여 수산과학원에 제출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
 - 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국립수산과학원(지방수산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에 달라지는 특이사항 없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장 최완현 기술서기관 박환준	02-500-2375 02-500-2378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안용석	055-211-3826
경상북도	수산진흥과	김철호	053-950-2672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이영진	061-286-694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장길상	064-710-3243

I. 사업개요

1. 목 적

- 양식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으로 질병방지 및 우량한 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사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 사전 질병예방 백신공급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확립 추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양식장 항생제 사용량 감소율	8%	-	-	△3%	'10.1	[(금년도-전년도 사용량)/전년도사용량]×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500	1,000	1,750	2,315	11,375
- 보조	200	400	700	926	4,550
- 지방비	200	400	700	926	4,550
- 자부담	100	200	350	463	2,275

※ 균특회계 제주계정 포함 : ('07)200백만원, ('08)400백만원, ('09)626백만원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제8조와 제41조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 백신공급 사업자의 자격요건
 - 공급대상 백신은 2009.4월말까지 수의과학검역원의 국가검정(수입승인)을 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제약회사는 즉시 제외한다.
 - 백신공급 제약회사는 2009.5월 10일까지 수의과학검역원의 국가검정(수입승인)을 필한 관계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 대상어장 : 수조식 육상양식장
- 대상어종 : 넙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조식 육상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넙치에 대해 사전 질병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구입, 사용하고자 하는 어가에 대해 지원
- 대상백신
 - 에드워드 백신, 연쇄구균 백신, 혼합백신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지원단가
 - 수조식육상양식어업[에드워드 백신(넙치)] : 10만원 이내(250ml 당)
 - 수조식육상양식어업[연쇄구균 백신(넙치)] : 90원 이내(마리/0.1ml)
-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 사업부서와 협의, 조정 집행하여야 한다.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기준
 -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각 어가에서 백신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정산

- 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구매가격이 지급 단가보다 낮을 경우 실제 구매가격(세금계산서)으로 정산한다.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사업집행주체가 부담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공고시기 : 연 2회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시·도, 시·군·구(읍·면·동)에 수산사업지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참조) 1부
 - 기타 사업관리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1부
- 사업홍보
 - 농림수산식품부 및 사업관리주체(지자체)는 사업신청자 및 백신공급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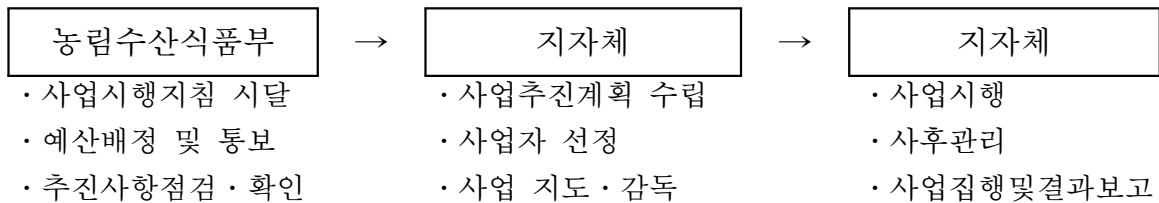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절차
 - 시·도 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주체가 정한다.
- 선정기준
 - 장기양식에 의해 양식질병이 상습 발생하는 어장
 - 어장이 연접하여 질병 발생시 인근어장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집단 시설지구
- 우선순위
 - 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어가
 - ②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어가

- ③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어가
- ④ 양식장 HACCP 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어가
- ⑤ 소규모 양식어장에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어가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화 또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해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0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09.1월
 - 지자체에 지침 통보
- 사업 추진체계



시 · 도(지자체)

- 사업설명회 실시(지자체) : '09년 1/4분기
 - 사업신청자, 백신공급업체에게 사업 설명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지자체) : '09년 1/4분기
 - 관할 어업인들에게 홍보 실시
- 사업의 관리
 - 설계서 작성은 2008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주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집행 할 수 있다.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 배정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1/4분기에 보조금 송금

시·도(지자체)

- 보조금 지급 기준
 -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각 어가에서 백신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정산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구매가격이 지급 단가보다 낮을 경우 실제 구매가격(세금계산서)으로 정산한다.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사업집행주체가 부담한다.
-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조금 정산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비 정산시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처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2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
 - 실시시기 : 6,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백신 공급실태,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지자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백신 공급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

《제재》

시·도(지자체)

- 사업대상자는 백신공급,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항생제 사용량 반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익년 1월까지 확인한다
- 보고 주체 : 국립수산과학원(수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제8조와 제41조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 백신
 - 에드워드 백신, 연쇄구균 백신, 혼합백신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절차
 - 시·도 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주체가 정한다.
- 선정기준
 - 장기양식에 의해 양식질병이 상습 발생하는 어장
 - 어장이 연접하여 질병 발생시 인근어장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집단 시설지구
- 우선순위
 - 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어가
 - ②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어가
 - ③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어가
 - ④ 양식장 HACCP 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어가
 - ⑤ 소규모 양식어장에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어가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화 또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해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와 달리 특이 변동사항은 없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이병용	02-500-2375 02-500-2384

I. 사업개요

1. 목 적

- 양식시설 등에 사용되는 고밀도부표를 보급함으로써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2. 근거법령

- 어장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부칙 제2조,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연안 어장에 사용 중인 부표를 고밀도 부표로 보급(교체) 지원
 - 2013년까지 어장에 사용부표 23백만개 보급지원을 추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고밀도 부표 보급율	7%	-	-	-	'08.12	[총교체대상부표 23,000천개 ÷ 2009년교체목표 1,600천개]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	8,050	72,450
- 보조	-	-	-	1,610	14,490
- 용자	-	-	-	-	-
- 지방비	-	-	-	1,610	14,490
- 자부담	-	-	-	4,830	43,47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권 처분관청인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어업권(면허, 허가)을 취득하여 어업을 경영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면허,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대상자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 과정에 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의 규격을 어장관리법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설하는 자에 한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친환경 개량부표를 구입하는 자를 포함함
- 대상자 선정·심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장면적, 사용중인 부표물량, 사업 타당성, 자부담능력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면 양식장, 어장에 고밀도부표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대상부표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어장부표의 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되도록 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자가 제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집행주체는 검토하여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
 - 사업대상 어업인의 면허·허가어업이 불법어업을 하였을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에서 총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의 20% 이하로 함(다만, 사업신청이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고밀도부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보조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물량(개당)의 단가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선정신청서 1부
 - 면허·허가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부표생산(공급)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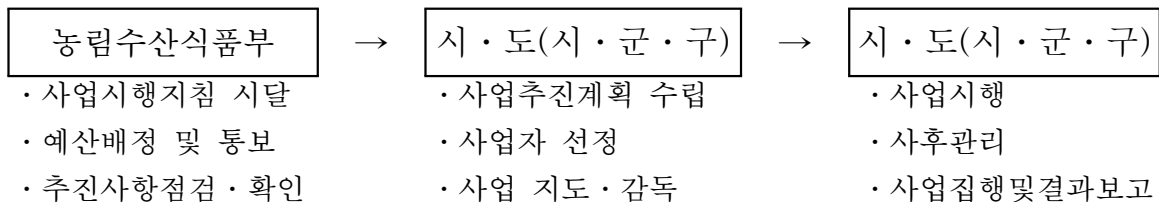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고밀도 부표보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0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08.12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09.1월
 - 관할 어업인, 부표 제조(공급)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09.1월
 - 사업신청자, 부표제조(공업)업체에 사업 설명
- 사업 추진체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비 정산시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처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부표공급 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시기 : 5,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고밀도부표 보급 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식어장 등에 대하여 규격부표 사용 실태를 수시로 조사 실시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집행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 어업인 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말까지 확인한다.

구 분	기 관 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농림수 산식품부	분기말 익월 15일	별지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익월 5일한	별지 서식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시, 회계연도 종료시	별지 서식

- 보고 주체 : 시·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지 점검 평가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본 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2010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0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선 정 신 청 서

1. 어업의 종류 등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 번호	제 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 기간		
어업자 성명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어장 총사용 부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 계				
고밀도부표 (스티로폼)				
개량부표				
PVC				

3. 사업비

- 총 사업비 : 원
- 국고 보조 : 원
- 지방비보조 : 원
- 자 담 :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위와 같이 사업 집행코자 신청하니 사업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2009년 월 일

신청인 0 0 0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착 (준) 공 계

1. 사업명 :

2. 시설(설치)장소 :

3.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09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09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2009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0 0 0 (인)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과 장 남태현 사무관 주두만	02-500-2401 02-500-2404

I. 사업개요

1. 목 적

-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양식장에 적용토록 지원하여 양식수산물의 신뢰성 확보

2.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제5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HACCP 적용 양식장 전년대비 증가율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08년도 실적(40개소) 48.8%를 감안하여, '09년에 양식장 4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09년에 32.8%를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6	'07	'08		
· HACCP 적용 양식장 전년대비 증가율(%)	32.8	90.9	95.2	48.8	'09년 12월 중	양식장 HACCP 지원 사업 참여 양식장 수를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500	950	1,420	1,420	1,420
보 조	750	715	950	710	710
지방비	-	-	-	426	426
자부담	750	235	470	284	284

II. 2009년 사업시행계획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넙치, 뱀장어, 송어, 향어양식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28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어류 양식장(넙치, 뱀장어, 송어) 중 관할 시·도(시·군·구)에 신고·허가·면허된 양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자부담금(컨설팅 30%, 시설개선 20%)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개선비의 사용범위는 양식장출입구의 오염원차단시설, 폐사 어류 처리 시설 등과 같은 위생관련 시설에 한함
- ※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의함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자로 선정된 양식장에 대하여 HACCP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
- '08 컨설팅사업이 완료된 양식장에 대한 시설개선비 지원
- ※ 1차년도에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 시설개선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사업기간이 1년 6개월(컨설팅 1년, 시설개선 6월)로 단축할 수 있음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 지원조건
- 컨설팅비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개소당 사업비 12백만원)
- 시설개선비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개소당 사업비 23.5백만원.
다만, 개소당 국고지원액은 11.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 접수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 실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08.1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대상자 신청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 대상자 수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 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컨설팅 부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컨설팅사 모집은 별지 제6호에 의해 자격이 있는 컨설팅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 컨설팅사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컨설팅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개최하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방법(세부내용), 일정, HACCP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계획”을 발표 한다
 - 심사위원은 컨설팅사의 발표내용을 별지 제7호에 의거 평가하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심사위원이 평점한 점수를 합계하여 참여한 컨설팅 업체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할 수협·협회 직원, 대상 어업인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 선정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해당 시·도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 한다

시·도(지자체)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선정된 양식장과 컨설팅 업체는 시·도 확인 하에 【별지 제2호】의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과 컨설팅 기간, 방문회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 시·도는 컨설팅업체와 사업대상자간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자부담분(양식장 당 2,400천원) 징수내역 확인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업체는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선정된 양식장으로부터 계약 체결시 자부담금 징수
- 컨설팅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내용, 투입인력, 투입 일수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의 "사업수행 계획서"에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 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첨부, 시·도에 제출
 -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HACCP 홍보계획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 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산정
 - 양식장별 컨설팅비용은 소재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개소당 1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컨설팅 업체는 선정된 양식장과의 계약 이전에 사업자에게 컨설팅 내용 및 계획 등을 설명
- 컨설팅 범위
 - HACCP적용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원리교육
 - SSOP(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actice)등 선행요건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료, 항생물질 검사 등 시험분석 및 현장점검 실시
 - 시설진단 및 개선, 보완해야 할 위생시설 및 기기장비 제시
 - 선행요건 관리기준서 및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 양식장별 HACCP Plan 작성 및 적용체제 구축
 - 종묘입식 및 양식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
 - 중요관리점(CCP)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
 - 모니터링 방법 및 검증방법 설정
 -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방법 설정 및 지도
 - 관련 기록 및 유지방법 등 지도
 - 검증 및 감시 절차와 방법제시 등

나. 시설개선부문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시설진단결과에 의거 해당 사업 대상자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전 소속공무원 중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실시
- ※ 시설개선 범위
 - 양식장 출입구 오염원 차단시설, 폐사어 처리시설, 화장실 개선, 약품관리시설, 사육수 소독시설 등 위생관련 시설

양식장

- HACCP 시설 사업자는 컨설팅사의 컨설팅에 따라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와 예산 변동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
- 사업비 초과 시에는 자담으로 부담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양식장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에서 자금배정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컨설팅 관련 보조금은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고지(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 명기)
- 지급시기는 시·도지사가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액은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지급
-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 시 현장 확인 후 지급
- ※ 사업자 자부담금이 보조금보다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조치 및 확인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자 및 컨설팅사의 계약 시 [별지 제2호]의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과 [별지 제4호]의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시·도지사의 사업 추진내용 점검 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사업추진기간 중 월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시·도지사는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 추진현황(부진 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시·도지사는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시·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컨설팅업체와 사업자는 컨설팅을 행할(방문, 전화, 서신, 전자우편, 기타방법)때마다 그 주요 내용을 [별지 제5호]의 “컨설팅 일지”에 기록 관리
 - 시·도 등 관련 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의 사용의 적정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 8825호, 2008.02.29),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 38호, 2008.07.23.)에 따름
- 컨설팅 지원 등 취소
 - 시·도지사는 컨설팅 추진사항보고 및 자체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컨설팅업체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참여를 제한
 - 컨설팅 보조지원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컨설팅업체가 사업수행계획 신청 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 지원자금을 전액회수하고, 사업을 취소함
 - 사업자가 컨설팅업체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사업자가 보조지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자가 시설개선 시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없이 컨설팅 설계를 무단 변경한 경우

《보고》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매분기별로 사업수행사항을 작성하여 분기가 끝나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 추진내용, 추진상의 문제점, 대책, 금후 추진계획 등 포함
- 시·도지사는 사업(컨설팅, 시설개선)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분기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

6. 사업비 정산단계

양식장

- 사업자는 개선내용 등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사업관리 주체(시·도)

-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부에 보고

7. 성과측정단계

- 양식장의 사업계약서를 통해 참여 양식장 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양식장 HACCP 적용 비율을 분석
 - (당해년도 HACCP 적용 누계 양식장 수-전년도 HACCP 적용 누계 양식장 수)/전년도 HACCP 적용 누계 양식장 수 × 100

《환 류》

- 컨설팅 업체별 HACCP 이행 등록 분석 결과를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컨설팅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9.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의 지시에 따름
- 시·도지사는 동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동 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음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시기 : 2009. 11~12
- 수요조사 방법 등 : 2009년 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에 준함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

HACCP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주 소				
양식품종		수조면적 (m ² , ha)		
연간생산량	톤	연간수출량	톤	
양식형태	육상수조식, 순환여과식 등		수조수	개
허가등록번호				
기 타				
<p>이상과 같이 HACCP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자 : 서명</p>				

- ※ 첨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3. 시설개선비 자부담 확보방안 1부.

【별지 제2호】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계약 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컨설팅 내용 및 방법	- 계약 쌍방간 핵심 컨설팅 과제 사전협의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등 컨설팅 방법에 대한 규정
○ 컨설팅 대금 지급방법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사업자 혹은 행정기관)를 명시 - 보조금은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사업자 등에 지급함을 명시
○ 분쟁해결 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 중단시 변상·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사업자와 컨설팅기관간의 가계약서가 사업감독기관에 의해 승인 받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지 제3호】

사업수행 계획서

- 1. 적용대상 양식장 현황 및 품종
- 2. 사업범위
- 3. 참여 컨설턴트 현황
- 4. 사업내용

단계	사업내용	사업일수
1		
2		
3		
:		
계		

- 5. 월별 추진계획
- 6. 사업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00개월)
- 7. 사업비용
 - 000000000원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첨부 : 사업비용 세부산출내역 1부

【별지 제4호】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구 분	보고서 내용(필수항목)	비 고
중간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핵심과제 선정 ○ 양식장 질병, 시설, 약제사용 등 실태조사 및 진단 ○ 문제점 도출 및 분석 ○ 해결방안 ○ 보고회 및 업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약 - 조사 및 분석내용 검토회의 - 진단 및 문제점 분석내용 검토회의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서의 내용(필수항목) 포함 ○ 컨설턴트가 제시한 실행 계획 ○ 사업자가 실행한 내용 ○ 실행과정상 시행착오 및 지도사항 ○ 컨설팅 성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HACCP 제도 확립 - 시설개선 설계서 ○ 보고회 및 업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검토회의 - 시행착오 및 수정안 검토회의 - 사업추진현황 및 효과 검토회의 - 사업추진실태 점검회의 - 최종보고회 	

【별지 제5호】

컨설팅 일지

연월일	컨설팅 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명	
					경영체	컨설턴트
		(총 인)				
		(총 인)				

【별지 제6호】

컨설팅 업체 자격기준

1. HACCP 컨설팅업체 선정기준

회사(법인) 설립 1년 이상(사업자등록 후)인 업체로서 HACCP·수산·식품기술 분야 중 컨설팅 대상의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거나 컨설팅 경력 6개월 이상 되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2.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기준

HACCP 교육기관에서 수산관련 HACCP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산관련 HACCP 컨설팅 경력이 있는 자로서 수산식품 기술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1에 에 해당하는 자

- 1) 수산질병관리사, 수산 및 식품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컨설팅지원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수산 및 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3)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 신지식인 수산인 및 수산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지정 및 등록 실적 10건 이상 보유한 자

【별지 제7호】

양식장 HACCP 컨설팅업체 평가항목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계		100	
사업계획서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지원 사업과의 부합성	10	30
	컨설팅 내용의 합리성	10	
	컨설팅 방법의 타당성	10	
컨설턴트 구성	컨설턴트 구성원 및 체계의 적정성	10	20
	연구원의 자격(학력, 경력 등) 및 전문성 여부	10	
사업비	세부 항목의 합리성	10	20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HACCP 홍보계획	홍보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10	10
컨설팅 실적	최근 3년간 양식장에 대한 컨설팅 실적 여부	10	20
	컨설팅한 양식장이 HACCP이행시설로 등록 실적 여부	10	

95	수산물시장시설개선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과장 서재연 사무관 최덕부	02-500-2302 02-500-2356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시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수산물 위생 처리, 수산물 판로 기반 확대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73조
-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제10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부류 도매시장 및 산지 위판장의 안정적인 반입물량 확보를 통한 수산물시장 활성화 도모
 - '12년까지 수산물시장 202개소(수산물부류 도매시장 16개소, 공판장 2개소 및 위판장 182개소)중 10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추진
 - 수산물부류 도매시장 취급물량 30만톤 및 산지위판장 취급물량 90만톤 유지를 통하여 어업인 및 산지중도매인등 출하자들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보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산물부류 도매시장 처리물량(천톤)	383	382	382	383	'09.12월 말	도매시장개설자인 시·도를 통한 처리물량 확인
▪ 산지위판장 취급 물량(천톤)	890	917	928	900	'10. 4월	어업생산통계(통계청)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사업량		100	-	30	30	15	25
사업비	합 계	66,904	-	9,287	9,970	10,086	37,561
	보 조	36,600	-	6,500	4,200	5,600	20,300
	지방비	16,778	-	-	2,784	2,906	11,088
	자 담	13,526	-	2,787	2,986	1,580	6,173
○도매시장 시설개선		31,792	-	4,805	4,515	5,086	17,386
- 보 조(70%)		20,931	-	3,363	1,838	3,560	12,170
- 지방비(30%)		7,530	-	-	788	1,526	5,216
- 자 담		3,331	-	1,442	1,889	-	-
○위판장 시설개선		32,312	-	4,482	3,655	4,600	19,575
- 보 조(40%)		14,269	-	3,137	1,462	1,840	7,830
- 지방비(30%)		8,348	-	-	1,096	1,380	5,872
- 자 담(30%)		9,695	-	1,345	1,097	1,380	5,873
○공판장 시설개선		1,000	-	-	-	400	600
- 보 조(50%)		500	-	-	-	200	300
- 자 담(50%)		500	-	-	-	200	300
○유통센터 시설개선		1,800	-	-	1,800	-	-
- 보 조(50%)		900	-	-	900	-	-
- 지방비(50%)		900	-	-	900	-	-

※ '08년도 예산은 57억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42억원임(재정자율감액 15억원분은 가뭄대책저수지준설사업으로 이용)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부류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 및 제5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공판장 운영자인 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시장(수산부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산지위판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자체 및 수협

3. 지원대상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등에 대한 시설개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 보조 70%, 지방비 및 자담 30%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 보조 40%, 지방비 30%, 자담 30%
 - 자담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수협 간에 협의를 통하여 자담 일부를 지방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유통센터 및 공판장 시설개선 : 보조 50%, 지방비 및 자담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협

- “산지위판장(이하 ‘공판장’ 포함)”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시·군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사업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추천
- “유통센터” 및 “수산부류 지방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매년 3월말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공판장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추천(신청)한 사업과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수산부류 중앙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량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협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은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공판장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시·도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송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개선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6. 성과측정단계

- 시설개선을 통한 수산부류 도매시장 및 산지 위판장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대비 당해연도 취급물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수협을 대상으로 위판장 시설개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부류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필요사항 파악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수협이 있는 경우와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말까지)토록 지도 및 작성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시장 시설개선 사업 계획서

사업명	00시장(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위치	o
현시설 규모	o 부지 m ² , 연면적 m ²
사업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o
사업내용	o 바닥공사 0원, 차양시설 0원 ...등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o
현재시설 전경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수산물시장 시설개선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 및 국고수령액				집행액				잔액 (C=A-B)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담	

2. 사업 개요

사업명	00시장(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위치	
시행주체	
사업내용	

3. 공사 세부내용

(단위 : 원)

세부공사명	공사 규모	집행액
계		
바닥	m ²	
비가림		

사진			
공사전	바닥공사	공사후	바닥공사

【수산분야】

Ⅲ. 기계화

96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과 장 배호열 사무관 배종혁	02-500-2317 02-500-2325

I. 사업개요

1. 목 적

- 유가상승으로 어업인 출어포기 등 어업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고효율 연료 절감형 장비 지원으로 어업생산활동 활성화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어선 유류절감장비 6,600척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실적(척수)	600	-	-	-	2월	계획대비 추진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	18,340	110,000
보 조	-	-	-	5,502	33,000
지방비	-	-	-	5,502	33,000
자부담	-	-	-	7,336	44,0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조업시 집어등이 필요한 오징어·갈치채낚기 어선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연근해어선 및 원양어선으로 유류절감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근해 및 원양어업허가 또는 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3. 지원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 및 반사장치 집어등 설치
- 유류비 절감 유류절감장치 설치
- ※ 지원대상 제품 검정
 - 집어등은 국립수산물과학원, 유류절감장치는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 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성능, 효율성 검증
 - * 검증기준 및 검증실시 관련 방침은 '09년초에 마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료소모량이 적은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지원사업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물량 : 617척
 - 집어등 설치 : 217척, 유류절감장치 : 400척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 한도
 - 45백만원(수협공동구매단가에 설치비 1,000만원 이내)
 -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및 선박검사 기관에 시달('09.1월)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등에 대하여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지침에 의한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 순위는 소형어선 사업자(수협 위판실적이 있는 어선을 우선으로 함),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집어등 설치의 경우 LED 집어등 설치 어업인 우선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 이를 교육
- 사업자별 장비 조달방법을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자금 배정, 보조금 교부 결정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실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추진상황(별지 제3호서식) 및 사업자 선정 내역(별지 제4호서식)을 매 분기말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09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한 : 2009년 3월 20일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 설치어선(집어등, 유류절감장치)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선박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 명 : 기 종 (규 격) 수 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년 월) :

- 기타 :

2. 사업계획

○ 기간 등 설치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사업내용은 집어등 설치, 유류절감장치 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 (사업지원효과 등)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용자)사업 추진상황보고(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 사업자선정, 착공(공사중), 준공물량 등 상세히 기재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척)	국고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담	계	사업량 (척)	국고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적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 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 추진실적(연도 분기)

1.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비 내역서			사업자 선정			사업자 미선정			보조금교부결정			자금집행내역		
물량 (척)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척)	예산		물량 (척)	예산		물량 (척)	집행액	
	보조	지방비		보조	지방비		보조	지방비		보조	지방비		보조	지방비

2. 세부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단위 :천원)

사업자 선정물량(척)		향후 조치계획				잔여예상물량 조치계획
공사중	미착공	추진가능물량	잔여예상물량			
			물량	보조	지방비	

3. 추가소요물량

(단위 : 천원)

시도별	물량	예산	사유

97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과 장 배호열 사무관 배종혁	02-500-2317 02-500-2325

I. 사업개요

1. 목 적

- 어선의 저효율·노후 기관 및 장비·설비 대체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기관 및 장비·설비 개량 230척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실적(척수)	20	40	30	20	2월	계획대비 추진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5,785	1,390	750	750	3,750
용 자	4,628	1,112	600	600	3,000
자부담	1,157	278	150	150	75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저효율 및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 노후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선박용 기관(선외기 포함)을 설치하거나 장비·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저효율 기관(육상용 등) 및 노후기관의 대체
-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
- 자기자금으로 건조중인 어선의 기관 설치
-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 장비·설비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효율·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어선의 신규 기관설치 사업에 사용
- 노후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장비·설비 설치 사업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사업비 : 융자 80%, 자담 20%
 - 융자조건 : 금리 연 3%, 1년 거치 4년 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융자 한도
 - 기관대체 : 76,800천원 이내(600마력×160천원×80%)
 - 장비개량 : 8,000천원 이내(10백만원×80%)
 - ※ 지원 융자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 융자금 대출기관 : 수협중앙회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수협중앙회에 시달('09.1월)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어선기관대체사업에 필요한 선박용 추진기관 및 주요 장비·설비에 대하여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지침에 의한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연안어선 사업자(수협 위판실적이 있는 어선을 우선으로 함), 소형어선 소유자, 저마력 기관 대체자,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장비 사용자 순으로 함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육상용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 무동력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노후 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 및 자금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기관(장비·설비 포함)을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 이를 교육
-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을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허가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관가격은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별 기관 조달방법을 대출취급기관인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지자체로부터 용자금 교부결정서를 통보받은 지역별 수협조합장은 용자수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급자에게 물품 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해당 어선에 설치 확인 후 물품 검·인수증을 발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자금 배정, 용자금 교부 결정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 용자금 교부 신청
- 용자금 교부결정서를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에게 용자금을 대출하며 용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 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실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추진상황(별지 제3호서식) 및 사업자 선정 내역(별지 제4호서식)을 매 분기말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융자금 집행 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구)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자금관리주체(일선수협)

-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09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한 : 2009년 3월 20일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 피대체어선(장비 등) 등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또는 유예내용	최종선박검사		피대체 기관, 설비·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 명: 기 종(규 격)	

-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년 월) :

- 기타 :

2. 사업계획

○ 기간 등 설치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피대체 기관, 설비·장비 등 처리계획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신청내용은 각 사업별 노후기관대체 및 장비 등의 명칭, 신규, 대체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어업인은 해당 여부 기재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 (사업지원효과 등)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용자)사업 추진상황보고(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 사업자선정, 착공(공사중), 준공물량 등 상세히 기재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년 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척,마력, 대)	국고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담	계	사업량 (척,마력, 대)	국고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 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 추진실적(연도 분기)

1.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비 내역서			사업자 선정			사업자 미선정			보조금교부결정			자금집행내역		
물량 (척,마 력,대)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척,마 력,대)	예산		물량 (척,마 력,대)	예산		물량 (척,마 력,대)	집행액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2. 세부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단위 :천원)

사업자 선정물량(척,마력,대)		향후 조치계획				잔여예상물 량 조치 계획
공사중	미착공	추진가능물량	잔여예상물량			
			물량	보조	융자	

3. 추가소요물량

(단위 : 천원)

시도별	물량	예산	사유

98	양식장비 임대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과 장 배호열 사무관 송경호	02-500-2317 02-500-2323

I. 사업개요

1. 목 적

- 사용빈도가 낮은 필수 고가장비 구입이 어려운 어가 중심으로 양식장비를 임대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양식장비 임대 활성화로 장비 이용율 제고 및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 '12년까지 임대사업소 15개소 운영 서비스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양식장비 임대사업소	2	-	-	-	익년 2월	임대사업소 운영실적 평가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	3,000	19,500
- 보조	-	-	-	1,500	9,750
- 지방비	-	-	-	1,500	9,75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별 임대사업소가 개별어가, 지역수협,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등 어촌 공동이용조직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수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장기임대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양식업에 필요한 장비 임대
 - 기계화가 필요하고 다수의 어업인에게 공동 이용될 수 있는 장비
 - 개별어가 등에서 필요하나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사업소의 임대 양식장비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어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 임대사업소의 임대 양식장비 관리 지원
 - 임대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또는 설치
 - 임대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등)
 - 운영비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및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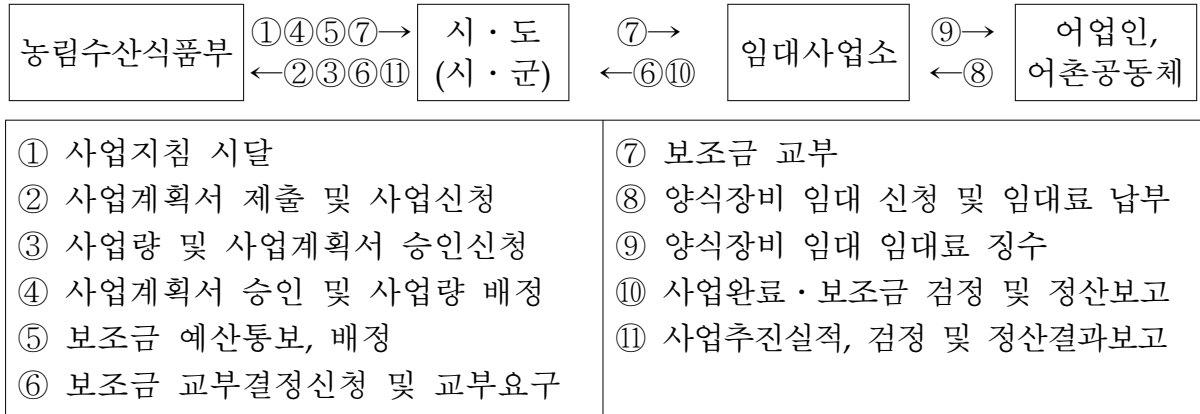
- 총 사업량 : '12년까지 15개소(총 사업비 : 225억원)
- 사업 단가 : 15억원/개소(국고 7.5억원, 지방비 7.5억원)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단가 조정 가능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대사업 당 15억원 한도 지원
- 임대 대상장비는 지역별로 수요를 분석하여 선정
- 개별장비 단가는 수협의 어업용기자재 공급사업 단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단가 설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시행절차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요건, 자금용도, 임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시·군)

- 시장·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당년도 1월)
- 시장·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통보한 예산액 및 사업량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요청함(당년도 2월)
- 시장·군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유형, 임대장비 수요, 적정 임대료 등을 조사한 후 사업대상 지역의 양식현황, 양식장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사업신청(당년도 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함(당년도 3월)
 -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09년도 시범사업인 경우 보관창고를 보유·활용 가능한 기관을 우선 지원

시·도(시·군)

- 시장·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지도 및 감독을 실시함(당년도 3월)
-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임대사업소를 선정
 - 해당 지역 내의 농업기술센터, 수협, 민간 임대업자 등 대상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할 것
 - 임대장비 보관창고를 보유한 기관을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 작성한 후 세부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3월 이후)
- 시장·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수시)
- 시장·군수는 임대장비를 적기에 어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임대사업소

- 사업 수요조사, 임대장비 구입, 양식장비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장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 함
- 임대장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하되, 임대료 적립금을 이용 대체장비 구입이 가능하도록 산정
 - 임대료 산정 시 어업인, 어촌계, 지역수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임대장비 구입은 수협중앙회의 어업용기자재 공급사업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사업소가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하여 자체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로 함
- 양식장비를 임대하고자 하는 어업인, 어촌계 등과 양식장비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은 지역여건에 맞게 장·단기로 구분하여 운영
 -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장비를 임대
 - 장비임대 시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장비, 임대방법, 임대료 납입 및 관리 등)을 안내

- 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어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함
 - 임대장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장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함

임 대 장 비
 이 장비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입니다.
 200 년 월 일 () 시·군

-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 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시·도(시·군)

- 시장·도지사는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당년도 3월)
- 시장·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분기별)
-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소에서 요청한 자금수요를 검토하여 시·도에 자금 배정 요청(분기별)
-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소에 자금을 배정(분기별)

임대사업소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3월)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 제출함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임대사업 추진현황(임대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7월, 익년 1월)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반기별)
- 시·도지사는 임대사업소의 보조사업비 검정·정산 시 임대장비 구입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징구·확인하고, 필요시 관련서류 사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익년도 2월)

자금관리주체(임대사업소)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2월)
-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함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단,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는 제외)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임대사업소 운영수
 - 산정방법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09년 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시·군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도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접수기간 : 2009. 3. 1 ~ 3. 31
 -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시·군·구
- 구비서류 : 양식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와 동일함

[별표 1]

양식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시·군)

양식어업 규모(면허건수, 면적, 생산량 등)

('08.12월말 현재)

어촌계수	어가수	어업인수	양식면허 건수	양식면적(ha)	생산량(톤)

3. 임대사업 개요

임대사업 추진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첨부

4. 임대사업 소요금액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100%)	()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구 분	총 사업비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관리비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인원	소요금액	
합 계	천원	종 대 (100%)	천원 (%)	평	천원 (%)	명	천원 (%)	천원 (%)

6. 세부 추진계획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자 :
- 조사 기간 :
- 조사 지역 :
- 조사대상 어가수 :
-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 임대 양식장비 구입
 - 기 타
- 조사결과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임대 양식장비 구입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임대유형
		대	천원	천원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양식장비	임대 대상자	비고
장기			
단기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확보내역 및 리모델링 여부

○ 기 확보

면적	구조	설치 장소	설치시기	현재 사용용도	비고
m ²					

※ 사진 및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등)를 첨부로 제출

○ 리모델링 필요 여부

- 리모델링 내용 및 비용

임대 양식장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임대 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임대 양식장비 공제(보험) 가입계획

※ 임대 양식장비 관리방법 등을 표기

7. 행정 사항

조례 또는 지침제정 추진계획

※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일정을 표기

임대사업 홍보계획

구분	물량 또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타			

사업 추진일정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조례제정, 사업비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추진일정을 표기

[별표 2]

양식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계 획				추진 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 시								
○○ 군								

※ 추진실적의 사업비는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재함

2.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여부

시 군 명	제정 여부	비 고
○○ 시		
○○ 군		

※ 제정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첨부로 제출

3. 임대 양식장비 구입

시군명	장비명	구입 계획	구입 실적	
			수 량	소요금액
합 계		대	대	천원
○○ 시				
○○ 군				

※ 구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 1부를 첨부로 제출

4.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시·군명	계 획		실 적		비 고
	면 적	구 조	면 적	구 조	
	m ²		m ²		
○○ 시					
○○ 군					

5. 사업 평가(기타의견)

[별표 3]

양식장비임대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 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총괄표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천원 (100%)	()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관리비					

*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시 그 사유를 제출

세부명세

○ 임대 양식장비 구입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제조업체	비 고
		대	천 원	천 원		조달구입, 수의 계약 등 구입 방법을 표기
합 계		총 대				

○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등

구 조	면 적	동 수	소요금액	비 고
	m ²		천원	

○ 운영인력 인건비

업무구분	인원	단가	소요금액	비 고
	명	천원	천원	
합 계				

○ 관리비

구 분	사업량	단가	소요금액	비 고
		천원	천원	
합 계				

* 전산장비 및 S/W 개발비, 운영비 등을 포함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 양식장비			임대 기간	임대료		반납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 확인	반납 예정일	반납 확인
							~				

[별지 제3호 서식]

임대 양식장비 관리대장

관리번호	장비명 - 일련 번호 (예시 : 활어운반차 - 1)
------	---------------------------------

구입 금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성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양식장비	관리번호 명판

99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과 장 배호열 사무관 송경호	02-500-2317 02-500-2323

I. 사업개요

1. 목 적

-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및 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고가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국의 취약어촌지역으로 어업용기자재 점검 및 수리 서비스 확대
 - '10년까지 이동수리소 60개소 운영하여 취약어촌계 310개소 서비스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서비스 어촌계 수	165	-	-	88	익년 1월	이동수리소 운영실적 분석 (수산사무소 -> 농림수산식품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432	810	5,700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	-	432	810	5,700
- 보조	-	-	432	810	5,700
- 지방비					
- 자부담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서, 벽지의 취약지역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기자재의 정기 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3. 지원대상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
 - 어선용기관 : 디젤 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등
 - 어업용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허해등, 레이다, GPS플로터 등
 - 양식용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 정기점검과 현장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용
 - 소규모(최고 3만원 이내) 부품 무상교체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량 : 30개소(사업단가 : 27백만원/개소)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가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81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어업용기자재 정기점검·수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1인 1일(8시간 작업기준) 인건비는 10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
 -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소규모 부품(3만 원 이하) 무상 교체비
 - 어업인 1인당 당해 서비스기간 중 2개 부품 이내에서 무상교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 ※ 3만 원 이상의 부품 교체인 경우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부담
- 동일인의 동일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 서비스는 연간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유류절감장치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비는 1회 추가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절차 >>

농림수산식품부	①③→ ←②⑧⑨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등)	⑤⑦→ ←④⑥⑧	수리업체, 어촌계
① 사업지침 시달 ②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신청 ③ 사업계획서 검토, 승인 통보 ④ 운영계획서 제출 ⑤ 설명회 개최 및 적정업체 선정		⑥ 가약정서 제출, 약정승인 요청 ⑦ 약정승인, 통보 ⑧ 추진상황 보고(매월) ⑨ 사업추진실적 보고(반기별) ⑩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대상, 자금용도 및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관리과, 수산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이하 “수산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시달(전년도 12월)
- 수산사무소별 취약어촌 현황(어촌계수, 어업인 등)을 감안하여 수산사무소 등에 사업물량 배정

수산사무소 등

-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점검·수리가 필요한 어업용기자재를 조사한 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당년도 1월)
 -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에 위치한 어촌계를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
 - 예산, 운영능력, 어촌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동수리소당 2개 이상 10개미만의 어촌계를 선정
 - 수산사무소당 1개 이상의 이동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사무소 등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당년도 2월)
 - 서비스 대상 어촌계 선정의 적정성(취약지역 우선, 서비스 대상 규모 등)
 - 점검·수리 대상 어업용 기자재 현황
 - 소요예산(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활용 및 점검·수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일정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산사무소 등

- 대상 기자재의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부터 운영계획서 및 소요예산(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2개 이상)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
- 업체와 어촌계가 작성한 운영계획서와 가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날인하고 약정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 약정기간은 당해연도 내에서 개월 단위로 약정하며, 본 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 등을 약정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을 2009.2.15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9.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 추가 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 사업추진 시 이동 점검·수리단위(1개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업체

-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산사무소 등의 장에게 약정승인을 요청
-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를 하고,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익월 15일까지 수산사무소 등의 장에게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09년도 사업예산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배정(당년도 1월)

국립수산과학원

- 이동수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수산사무소 등에 자금 배정(분기별)

수산사무소 등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당년도 2월)
- 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 교부결정 및 확정을 하고 보조금 지급

업체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산사무소 등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 제주지역 업체는 추진상황(결과)보고서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작성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관리과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현황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7월, 익년1월) 실시
- 점검항목 : 서비스 어촌계수, 대상 기자재 현황,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등)

- 업체의 점검·수리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참여하거나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현장을 확인, 점검
-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점검보고(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관리
-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점검 결과와 사업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상반기 : '09. 7. 15일까지, 하반기 : '10. 1. 15일까지)
-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또는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수산사무소 등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함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등)

- 업체 및 어촌계가 신청 또는 보고 시 허위자료를 제출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점검·수리 미 이행, 운영내용 허위 조작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대상에서도 배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서비스 어촌계수
 - 산정방법 : 수산사무소 등에서 제출한 약정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09년 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수산사무소 등, 업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수산사무소 등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수산사무소 등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접수기간 : 2009. 3. 1 ~ 3. 31
 -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수산사무소 등
- 구비서류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 1부.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와 동일함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준) 약정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어촌계()를 “을”이라 하며, 이동점검·수리업체()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금액 : 원(월 원)
3. 약정내용

제1조(업체)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금액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어촌계와 업체와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응하지 않거나, 운영일지 미 작성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어촌계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과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00 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대상 기자재명	
주요점검·수리내용	
부품 무상교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1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 일자/장소 :
- 대상 어촌계 명 :

점검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점검내용	
수리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수리내용	
부품교환	기자재 명	수량(점)	부품교환	
			무상	유상
기타 특이사항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어촌계명 직위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 기자재	(기자재별 점검·수리 대상 수량)
점검·수리 기간	
점검·수리 장소	
주요 점검·수리 내용	(기자재별 점검·수리 수량, 부품교환 등)
기타 특이사항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보고

- 체결일자 :
-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개월)
- 체결내용

업체명	어촌계명	대상 기자재명	점검·수리일	약정 금액(월)
			00일/월	

- 이동점검·수리반 편성
- 약정금액 산출내역
- 특이사항

【수산분야】

IV. 인력육성

100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과 장 배호열 지도관 민병주	02-500-2317 02-500-2321
수협중앙회	수산금융부	과 장 김수용	02-2080-8525
국립수산과학원	부산지역(수산관리과), 기타지역(수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전 지역)		

I.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전업어업인의 육성),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400명 수준의 후계수산업경영인을 선발, 2015년 후계인력 20,000명 달성

성 과 지 표	2009 목 표 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수	410명	437	410	383	익년도 8월말	선정자수/목표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용자)	398,825	15,700	15,700	20,000	140,000
○ 어업인후계자	265,063	10,471	8,700	9,000	63,000
○ 전업경영인	129,337	4,419	6,500	7,000	49,000
○ 선도우수경영인	4,425	810	500	4,000	28,0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009년도 이전 선정자 중 융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지원대기자 및 2009년 신규로 신청한 자 중 국립수산물과학원(이하 “수산물관리과·소”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수과원”이라 한다)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2. 용어의 정의

- 가. “어업인후계자”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
 -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 나. “전업경영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서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 전업어업인 :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으로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 다. “선도우수경영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및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라. “수산업경영인”이라 함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3.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2000년 이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기자는 연령 미적용**

- 가. 어업인후계자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어업기반(면허, 허가 또는 신고)을 갖추었거나,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4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①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전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3년이상 경영한 자중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제1항 내지 제3항) 및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제1항 내지 제3항) 및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2008년 이전에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지원요건>

가. 기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전문교육 등을 이수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지원대기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나. 신규자는 지원자격이 충족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평가점수가 높은자

- 어업인후계자는(300점 이상), 전업경영인(400점 이상), 선도우수경영인(400점 이상)

4. 지원대상

* 기 선정된 융자금 지원대기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원

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 강선·FRP선은 15년이내)

*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기존 소유어선이 있는 경우에는 2톤미만(해면)은 2톤 이상의 어선을, 0.3톤(내수면) 미만은 0.3톤 이상의 어선을 구입하거나 건조하여야 함

나. 증·양식업 :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 구입, 종묘구입 등

* 다만, 종묘(패) 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수산물 가공 :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라. 공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영어기반 조성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운영비 사용 불가)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용자금은 수산업경영인 선정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6.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가. 재원

-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 30%, 금융기관자금 용자 70%(이차보전)
- 선도우수경영인 : 수협금융자금 100%(이차보전)

나. 금리 및 용자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다. 1인당 지원한도

- 어업인후계자 40백만원, 전업경영인 5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 1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2009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 수립 시달
- 2009년도 수과원에 세출예산 배정계획 시달

수과원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 : 2009. 1월
 - 어촌계장협의회,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 어촌순회지도 시 홍보
- * 기 선정 후 용자금 지원 대기자가 많은 경우는 제외
- 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 창구 개설로 우수 젊은 인력 어촌유입 적극 유도

용자금 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는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용자금 지급·회수·이자징수 등 업무를 일선 회원조합(지점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자 신용 등 결격사유 사전에 파악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신청자

- 신청시기 : 2009년도 1월말까지 수산업경영인 신청·접수
- 접수처 :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 및 예정지역의 관할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문교육 수료증 등 관련서류 각 1부
 -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유의사항
 - '08년도까지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선정 후 대기자가 많은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수과원에 사전 문의 한 후 신청 접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과원 수산관리과(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대기자 및 후계인력 자원 등을 감안하여 수과원에 예산 배정
- 수산업경영인 후보자에 대한 기본교육 세부계획은 별도의 지침 수립 시달

수과원

- 사업신청서 접수 : 2009. 1월
 - 지원대기자 및 신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요령>

- ① 수산업경영인의 공정한 선정·평가를 위하여 수과원(수산관리과, 각 수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에 전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과원(수산관리과장 및 각 수산사무소장),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 1명
 2.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수산관련 업무담당공무원 2명
 3.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융자취급부서 임직원 1명
 4. 위원장이 위촉한 수산계학교 교사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 2명
 5. 위원장이 위촉한 어업인 대표 3명(어촌계장 1, 수산업경영인 1, 자율관리공동체 1)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년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선발·확정하고, 예산 배정액 및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수산업경영인 단계별 평가기준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선정
 - 단계별 평가기준 : 어업인후계자(300점 이상), 전업경영인(400점 이상), 선도우수경영인(400점 이상)
 - 동점인 경우, 전년도 순위미달로 융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자, 선정일자가 빠른 자, 여성어업인,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수산계 대학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는 신용상태 및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회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 기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신용 등 결격사유로 융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
 - 신용등급 저하 및 장기연체 등으로 융자금 인출이 불가능 한 자
 - 사업시행년도 이전 본인의 명의로 동종의 자금지원이나 상위단계의 자금 지원 수혜자
 - 수산업경영인 지원대상자가 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자
(다만, 겸업 중 농업은 가능하나 후계농업인 또는 전업농가로 선정되어 영농자금을 기 수령한 자)

융자금 취급기관

- 2009년도 수산업경영인 신청자 신용조회결과를 전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신용 결격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 후 미 지원자 발생 최소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2009년도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협중앙회 등에 통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기관 : 수과원, 수협중앙회(수산금융부)
- 수산업경영인 선정 현황 수산정보시스템 입력방안을 수립·통보
 - 수산업경영인 선정 이후 상황 변화 시 변화된 정보 업데이트

수과원

- 각 분야별,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 수립·시행

융자금 취급기관

- 수협(회원조합)에서는 수과원으로부터 지원대상자 통보자료를 토대로 융자금 상담 후 대출지원 가능여부를 수과원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신청자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장소)변경 신청서(별치 제2호 서식)를 수과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 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수과원 및 융자취급기관에 시달

수과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취급기관,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융자금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융자취급기관장은 수과원장이 발급한 사업 추진실적확인서 제출시 당해연도 지원자금을 대상자에게 일시에 전액융자 지원

신청자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경영인들의 융자금 지원실태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수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자료 분석·확인

수과원 및 수산인력개발원

《사후관리》

- 수과원장 및 수산인력개발원장은 2009년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수산전문교육계획 수립·시행(별표 3 참조)
 - 어업인후계자(자체교육계획), 전업·선도우수경영인(수산인력개발원 교육계획)
- 사무소장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를 실시
- 수과원장은 지자체, 수협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연 1회 관리대상자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
- 수과원장은 수산업경영인 선정결과를 익월 5일까지 수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수과원장은 수산업경영인 관리현황을 익년도 1월15일까지 수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수과원장은 수산업경영인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수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선정취소》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미 이행시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지자체, 수협에 통보
 -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어업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어한기를 이용 관할시·군내 일시 취업자로서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사망하였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 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사람

《사업장소의 이전》

- 수과원장은 사업장소 이전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자체, 용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수산업경영인 승계》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지도 및 용자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 ※ 배우자 승계시 65세 미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용자금 상환기일까지만 승계

《확인서 발급》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수산업경영인 사실여부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정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보 고》

-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실적 및 다음연도 추진계획을 1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수산업경영인 개인별 용자금 집행실적(별지 제6호서식)을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용자금 취급기관

- 수과원장으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실적,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사업추진주관기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회수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6.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 비율(선정자수/목표치)로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수산업경영인수(명)
- 측정산식 : 수산업경영인 선정인원수/목표치
- 최근 3년이내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중 증·양식, 수산물 가공분야 등을 대상으로 전체인원의 2%이내에 한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시기 : 12월중
-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전화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08 유관기관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실태 및 점검평가 실시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사업성과 평가 실시

《환 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문제점 개선·보완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수산사무소

나. 신청자격 : '09년 대상자와 동일함

- ※ 2010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시 2010년도 어업인후계자 신청

다. 신청절차

- 수과원장은 기 선정 후 용자금 지원대기자 및 추가신청 수요를 파악하여 2009년 3월 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수산업경영인 신청자는 2010년 1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사업 신청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어승계 확인 등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 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2009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은 별도 지침 시달

【 별 표 1 】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영어정착의욕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자체세부기준 마련) - 상 : 100점, - 중 : 80점 - 하 :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사무소에서 현지 확인 후 자료제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필요시 현지확인)
<input type="checkbox"/> 학력 및 교육 훈련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계 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전문대학, 수산고 자영수산과 졸업자 : 40점 -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30점 - 기타학교 졸업자 : 2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input type="checkbox"/> 영어경력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1년 미만은 10점) 하되, - 군근무경력을 영어 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 단위로 5점씩 가산(1년 미만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계 학교(수산계 학과 포함) 졸업자 및 재학 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어기간으로 인정 ○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어경력도 인정 ○ 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기술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영어경력확인은 관련기관증명서,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어업기반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 100점 - 2등급 : 90점 - 3등급 : 80점 - 4등급 : 70점 - 5등급 :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품목별 어업기반 평가는 【별표 2】 어업인후계자 영어 규모 평가기준 참고 ○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의 어업기반 확인 시 수산사무소장은 행사계약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확인된 지분을 인정(어장관리규약 승인도 가능) ※본인, 배우자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 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함.
<input type="checkbox"/> 가점사항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계학교장 또는 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50점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30점 ○ 여성 신청자 : 5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남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수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포함) 인정 신지식어업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50점 ○ 정부포상 수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장 : 20점 ○ 35세 이하의 어업인 :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증은 신청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1종류인정)에 한함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500점)		

나. 전업경영인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영어경력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업 영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기술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영어경력확인은 해당기관증명서로 확인
<input type="checkbox"/> 학력 및 교육 훈련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계 대학졸업자 : 50점 - 수산계 전문대학, 수산고 자영 수산과 졸업자 : 40점 -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30점 - 기타학교 졸업자 : 2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 관련 교육훈련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한 선도 우수경영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input type="checkbox"/> 기술 및 자격증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기술 수준 또는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우수 : 50점 - 우수 : 30점 - 보통 : 10점 ○ 신청분야 관련 기술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 50점 - 기사(해기사) : 30점 - 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세부평가기준 마련 또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어업 기반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 100점 - 2등급 : 90점 - 3등급 : 80점 - 4등급 : 70점 - 5등급 :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품목별 어업기반 평가는 【별표 2】 전업경영인 영어규모 평가기준 참고
□ 지역발전 기여도(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우수 : 100점(30%) - 우수 : 70점(60%) - 보통 : 50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 가점사항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후계자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 50점 - 3년 이상 : 30점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5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 30점 ○ 수산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어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자 :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 30점 - 2년 이상 : 20점 - 1년 이상 : 10점 ○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포함) 신지식어업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50점 ○ 정부포상 수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장 :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600점)		

다. 선도우수경영인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경력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확인서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 학력 및 교육 훈련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계 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전문대학, 수산고 자영수산과 졸업자 : 40점 -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30점 - 기타학교 졸업자 : 2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 관련 교육훈련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 수협외 교육훈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기술및자격증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기술수준, 교육능력 또는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우수 : 50점 - 우수 : 30점 - 보통 : 20점 ○ 신청분야 관련 기술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 50점 - 기사(해기사) : 30점 - 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세부평가기준 마련하고, 증빙서류,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
□ 어업기반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 - 신청자격기준규모) / 신청자격기준규모} ×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전문분야 경영규모에 한함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경제·사회적 기여 수준 (50점)	○ 신기술개발(기술개발 또는 원가 절감)을 통한 사회적 공유 - 신기술개발 및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한 자 : 50점 - 신기술개발에 기여 : 30점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추진중 : 20점	○ 기술개발 - 분야별 기술개발 또는 특허 등 -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원가절감 - 원료구입, 생산, 판매 시스템개선 - 생산설비, 출하 등 시설개선 ○ 지식공유 - 출강 및 주변 어업인 기술지원 - 인턴, 창업어가 지원 등 실적자
□ 지역발전 기여도(50점)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매우우수 : 50점(30%) - 우수 : 30점(60%) - 보통 : 20점(10%)	○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 가점사항 (100점)	○ 지난 3년간 평균 경영실적 (장부 기입사항 및 순소득 평가) - 우수 : 30점 - 보통 : 20점 - 미흡 : 10점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30점 ○ 농림수산물부(해양수산부 포함) 신지식어업인으로 선정된 자 - 선정 후 5년이상 된 자 : 50점 - 선정 후 5년 미만인 자 : 30점 ○ 기술개발 특허 취득 - 특허(50), 실용신안(30), 상표 등(10)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 중앙회장 : 20점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600점)		

【 별 표 2 】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2~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이상 7ha이상 5ha이상 4톤이상 0.8톤이상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챙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 · 수조식 · 지수식	150m ² 90m ² 0.1ha 2ha 1ha 2ha 0.2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m ² 150m ² 300m ²	150~300m ² 90~150m ² 0.1~0.2ha 2~3ha 1~1.5ha 2~3ha 0.2~0.3ha 0.2~0.3ha 0.5~1ha 1~2ha 2~3ha 2~3ha 0.5~1ha 2~3ha 300~500m ² 150~300m ² 300~600m ²	300~450m ² 150~300m ² 0.2~0.5ha 3~4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m ² 300~450m ² 600~900m ²	450~600m ² 300~450m ² 0.5~1ha 4~5ha 2~3ha 4~5ha 0.5~1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m ² 450~600m ² 900~1,200m ²	600m ² 450m ² 1ha 5ha 3ha 5ha 1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m ² 600m ² 1,200m ²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m ² 150m ² 90m ² 0.1ha 0.2ha	150~300m ² 150~300m ² 90~150m ² 0.1~0.2ha 0.2~0.5ha	300~450m ² 300~450m ² 150~300m ² 0.2~0.5ha 0.5~1ha	450~600m ² 450~600m ² 300~450m ² 0.5~1ha 1~2ha	600m ² 600m ² 450m ² 1ha 2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m ² 300m ² 150m ² 300m ² 90m ²	90~120m ² 300~450m ² 150~300m ² 300~600m ² 90~150m ²	120~150m ² 450~600m ² 300~450m ² 600~750m ² 150~300m ²	150~180m ² 600~750m ² 450~600m ² 750~900m ² 300~450m ²	180m ² 750m ² 600m ² 900m ² 450m ²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나. 전업경영인

구 분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0~3톤미만 1.5~4ha미만 1~3ha미만 1~2톤미만 0.3~0.5톤미만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5톤~10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10~20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20톤이상 20ha이상 15ha이상 4톤이상 1.2톤이상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챙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300~450m ² 150~300m ² 0.5~1ha 3~5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1.0~1.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m ² 300~450m ² 600~900m ²	450~600m ² 300~450m ² 1~1.5ha 5~7ha 2~3ha 4~5ha 0.5~1ha 0.5~1ha 1.5~2ha 1.5~2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m ² 450~600m ² 900~1,200m ²	600~750m ² 450~600m ² 1.5~2ha 7~10ha 3~5ha 5~7ha 1~1.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m ² 600~750m ² 1,200~1,350m ²	750~1,050m ² 600~900m ² 2~2.5ha 10~20ha 5~10ha 7~15ha 1.5~2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m ² 750~1,050m ² 1,350~1,650m ²	1,050m ² 900m ² 2.5ha 20ha 10ha 15ha 2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m ² 1,050m ² 1,650m ²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300~450m ² 150~300m ² 300~600m ² 0.5~1ha 0.5~1ha	450~600m ² 300~450m ² 600~900m ² 1~1.5ha 1~2ha	600~750m ² 450~600m ² 900~1,500m ² 1.5~2ha 2~2.5ha	750~1,050m ² 600~1,200m ² 1,500~3,000m ² 2~2.5ha 2.5~3ha	1,050m ² 1,200m ² 3,000m ² 2.5ha 3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120m ² 450~600m ² 300~450m ² 600~750m ² 150~300m ²	120~150m ² 600~750m ² 450~600m ² 750~900m ² 300~450m ²	150~210m ² 750~900m ² 600~750m ² 900~1,050m ² 450~600m ²	210~300m ² 900~1,200m ² 750~1,050m ² 1,050~1,350m ² 600~900m ²	300m ² 1,200m ² 1,050m ² 1,350m ² 900m ²

· 주 : 어선이 2톤미만, 내수면 0.3톤미만인 자가 사업자금 지원 희망시 2톤이상, 내수면 0.3톤 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 양식어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다. 선도우수경영인

사업명	세부사업명	최소 경영 규모 (신청자격 기준규모)	비 고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10톤 이상 10ha 이상 7ha 이상 3톤 이상 0.9톤 이상	허가톤수 허가면적 허가면적 허가톤수 허가톤수
<양식어업> ○ 육상해수양식	○ 수조식 ○ 축제식	900m ² 이상 2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 해조류양식	○ 수하식	5ha이상	면허면적
○ 패류양식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3ha 이상 10ha 이상 0.5ha 이상	면허면적
○ 어류등양식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축제식	3ha 이상 3ha 이상 0.3ha 이상 2ha 이상	면허면적
○ 복합양식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	5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ha 이상	면허면적
○ 내수면양식	○ 수조식 ○ 가두리식 ○ 지수식	900m ² 이상 2,000m ² 이상 6,000m ² 이상	수면적 면허면적 신고면적
<종묘생산> ○ 육상종묘생산	○ 수조식 - 어류, 패류 - 해조류 - 우렁쟁이 등 ○ 축제식	450m ² 이상 600m ² 이상 300m ² 이상 1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 해상종묘생산	○ 수하식, 간이수하식, 뗏목식	2ha 이상	허가면적
<수산물가공> ○ 수산물 가공	○ 김가공 ○ 미역가공 ○ 굴가공 ○ 오징어 건조 ○ 젓갈·절임	240m ² 이상 900m ² 이상 1,500m ² 이상 2,400m ² 이상 600m ² 이상	시설면적

【 별 표 3 】

교육과정별 교육 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주기
신규교육	2~5일	수산인력개발원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	선정 후 1년이내
	2~5일	수과원	신규 어업인후계자	
		수산인력개발원	신규 전업경영인 신규 선도우수경영인	
보수교육	2~5일	수과원	기존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마다
		수산인력개발원	기존 전업경영인 기존 선도경영인	
정보화 교육	2~6일	수과원, 수산인력개발원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어업인등	-

※ 교육기관의 계획에 따라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 징수 가능

- 신규교육은 신규 선정된 자로 전원 이수
- 보수교육은 현지여건, 희망자 등을 감안, 수산사무소장이 결정하고 선도우수 경영인 사업장을 교육시설로 적극 활용
- 수산인력개발원의 피교육생 선발 협조 요청 시 수산사무소장은 적극 협조
- 지자체장은 수과원에서 실시하는 어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 가능
- 수과원장 및 수산인력개발원장은 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신청서

신청자	어촌계 명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택 휴대폰	
	주소 (e-mail)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과) 졸업·중퇴	
	조직형태			참여가구		
육성지원	교육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보수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성자금지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p>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수산사무소장 귀하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부. 2.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3. 어업기반 증명서 1부 4. 영어경력 증명서 1부. 5. 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어업인후계자 제외) 6.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사업계획서 1부(자금지원희망자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종류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연월일	분 야 별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일수(부터~까지)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기타 특기사항					

2. 사 업 계 획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용 자	자 담	기 타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일정은 ←→ 로 표시

○ 향후 5년간 연도별 영어계획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장소)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변 경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사 업 장 소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수 산 사 무 소 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승계신청서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연락처	
	영어종사 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과)	
승 계 내 용	사업명		영어규모	소재지		
사 유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선정확인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종 사 업 종 :

위 사람은 00(수산사무소)의 00년도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로 선정된 사람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수산사무소장 (직인)

【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청금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별지 제6호서식 】

수산업경영인 개인별 용자금 집행실적 보고(통보)

(단위 : 명, 천원)

소별	구분	지 원 계 획		집 행 실 적		미집행 사유
		대상자	금 액	일자	금 액	
계						
수산관리과	어업인 후계자	소계	80,000		50,000	
		홍길동	40,000	3.15	20,000	선체는 준공하였으나, 어구 구입 중
		김말동	30,000	5.10	30,000	준공 완료
	전업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						
인천수산사무 소	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						
· ·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과장 배호열 사무관 송경호	02-500-2317 02-500-2323

I.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
 - 잠재어업인력의 선도어업경영인 사업장 실무연수를 지원
 - 수산업경영 경험이 적은 어업인후계자의 창업 시 기술적인 문제해결 등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창업어가 후견 확대
 - 매년 인턴 30명 이상을 지원하고 창업어가 20명 이상 후견

성과지표	2009 목표 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신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창업어가수	20	-	22	25	익년도 1월	실적보고서 분석 (수산사무소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인턴수	30		24	40	익년도 1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250	300	300	3,360
보 조	-	250	300	300	3,360
○ 창업어가후견인제	-	-	300	300	
- 보 조	-	100	120	120	1,200
○ 수산업인턴제					
- 보 조		150	180	180	2,16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수산업경영인, 창업어가 및 수산분야 전문가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수산업인턴》

- 수산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선정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실업자로 수산업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및 수산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 신청자격이 없는 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경영체”라 함)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경영체
- ※ 다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수산사무소장의 판단 하에 자격요건 변경 가능

《창업어가후견》

-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후견인
 - 선도경영인,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3. 지원대상

- 인턴을 채용한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
- 창업어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턴의 노동력 제공 대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
- 창업어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자금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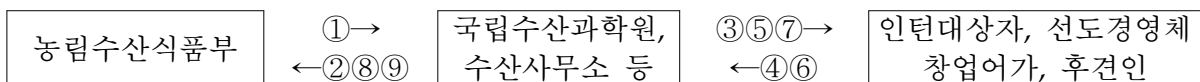
- 사업량
 - 수산업인턴제 : 인턴 30명 이상(예산 : 180백만원)
 - 창업어가후견인제 : 창업어가 20명 이상(예산 : 12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인턴을 채용한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
 - 인턴 1인당 월60만원 한도로 연간 6백만원까지(예산이 가능하면 7.2백만원 까지 가능) 지원
 - 인턴채용은 선정된 인턴이 선도경영체에 전일근무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단, 야간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
 - ※ 선도경영체는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인턴에게 월보수로 지급
 - ※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의 희망 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
- 창업어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 1인당 월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에게 기술·경영·정서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1회 2시간 이상)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를 방문하여 후견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보고 ③ 사업 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④ 수산업인턴제 연수, 선도경영체 지정,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후견인지정 신청서 제출	⑤ 약정 체결 ⑥ 수산업인턴제,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 ⑦ 약정이행여부 지도·감독 ⑧ 매분기 추진현황(결과) 보고 ⑨ 사업비 정산 보고
---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관리과, 수산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이하 “수산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시달(전년도 12월)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업량 배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등

- 국립수산과학원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을 수산사무소 등에 시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당년도 1월)
- 수산사무소 등 :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
 -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경영체, 지원대상 창업어가·후견인의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신청서 접수기관 : 해당 지역의 수산사무소 등
- 신청서 접수기간 : 2009.1.15 ~ 2.15
 -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서류 : 수산사무소 등에 비치
 - 인턴 : 수산업인턴제 연수신청서
 - 선도경영체 : 수산업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 선도경영체 운영계획서
 - 창업어가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 후견인 :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수산사무소 등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수산사무소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필요 시 수산사무소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등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사무소 등에 예산,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신청자의 자격여부, 희망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수산사무소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인턴, 선도경영체, 창업어가 등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하여

협조공문 발송, 대중매체, 어촌계장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선정 우선순위

- 수산업인턴제

① 수산계 학교(고등학교, 전문대, 수산대 등) 졸업자

② 어업인후계자의 자녀

③ 연령이 낮은 지원자(수산계 고교 휴학 중인 자 제외)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 또는 수산계교 출신 지원자의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산업 창업 희망자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창업어가 후견인제

①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②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③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연령이 낮은 지원자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수산사무소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 인턴과 선도경영체, 창업어가와 후견인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표준약정서를 참고하여 약정을 체결

※ 약정체결 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경영체당 2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농과 후견인을 일대일로 약정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등

《수산업인턴》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도경영체의 인턴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인턴대상자의 인턴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도경영체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도경영체,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인턴과 선도경영체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창업어가후견》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후견인의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어가의 창업어가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 창업어가와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개 후견인은 가급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어가의 후견 유도
 - 창업어가와 후견인이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선도경영체, 후견인

- 선도경영체와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수산사무소 등의 장에게 약정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국립수산과학원에 자금 배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등

- 국립수산과학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각 수산사무소별로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도경영체로부터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하고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인턴 월보수의 1/2 이내에서 월 60만원 한도로 선도경영체에 지급
 -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도경영체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되, 선도경영체가 인턴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도경영체가 인턴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하여, 50%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창업어가의 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을 하고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
-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선도경영체, 후견인

- 선도경영체와 후견인은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산사무소 등의 장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 제주지역 선도경영체 및 후견인은 추진상황(결과)보고서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작성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물리과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등)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도경영체, 인턴대상자, 후견인 및 창업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도경영체, 후견인 목록을 작성, 활용하여야 함
- 선도경영체 및 후견인 지정결과를 2009.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인턴제,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현황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7월, 익년도 1월) 실시
- 점검항목
 - 대상자 선정(자격요건, 선정방법)의 적절성, 예산집행, 운영현황 점검실적 등

신청자

-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수산사무소 등의 장에게 제출
-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수산사무소 등의 장에게 제출
 - ※ 인턴대상자 및 선도경영체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수산사무소 등의 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경영체와 약정체결을 추진
- 창업어가는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어업경영일지 작성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고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수산사무소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함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체결 가능
- 선도경영체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선도경영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교육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인턴제 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선도경영체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선도경영체 지정에서 배제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후견실적이 있는 창업어가수, 인턴수
 - 산정방법 : 수산사무소 등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09년 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수산사무소, 후견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수산사무소 등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수산사무소 등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접수기간 : 2009. 3. 1 ~ 3. 31
 -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수산업인턴제
 - 인턴대상자 : 수산업인턴제 연수신청서(별지1호 서식)
 - 선도경영체 : 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별지2-1호 서식), 운영계획서(별지2-2호 서식)
 - 창업어가후견인제
 - 창업어가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신청서(별지1호 서식)
 - 후견인 : 후견인 지정 신청서(별지2-1호 서식), 운영계획서(별지2-2호 서식)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와 동일함

《수산업인턴제》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수산업계 학교	
③어업인후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연수시 수당액	(총액)	()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후견자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별지 제2-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

①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연수희망지역			
④연수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업종의 경영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⑥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경영체 인턴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수산업인턴을 채용·연수를 제공
코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운영 계획서

①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연수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연수희망기간			
④경영규모 및 기 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의 인턴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3-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체결 내역				비고
			합계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어업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경영체수						
수산사무소	금액						
	인턴수						
	선도경영체수						
//	금액						
	인턴수						
	선도경영체수						

[별지 제3-2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목록

업체명 (소재지)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경영규모 등			
				주업종명	주업종 경영규모	전체 경영규모	영어 경력

* 작성요령

- 소재지 : 해당 시·군·구
- 나이 : 사업시행년도 1.1일 기준
- 경영규모 등 단위 : 경영규모(ha, m² 등), 영어경력(년)

수산업인턴제(표준) 약정서

수산업인턴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수산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수산업인턴인 ()를 “을”이라 하며, 수산업인턴을 채용하는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수산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수산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0월 원, 0월 원,

(예시) 총액 000만원(3월 100만원, 4월 100만원, 5월 120만원, 6월~9월 110만원, 10월~12월 90만원)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1/2의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산업인턴과 수산업인턴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수산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OO 수산사무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선도경영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수산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선도경영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수산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창업어가 후견인제》

[별지 제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지원액	(백만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④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⑤후견희망기간			
⑥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별지 제2-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업종의 영어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 : 년 월 일
 신청 인 : (인)

별첨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기간			
④자기 소개			
⑤월별 면담 및 방문가능횟수	(월)	(총)	
⑥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후견사항			
⑧후견 기대효과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일 : 년 월 일
 신청 인 : (인)

[별지 제3-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체결 내역				비 고
			합계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어업	
합계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00수산 사무소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00수산 사무소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후견인 별 약정체결 내역)

(단위 : 천원, 명)

		합계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어업
합계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선도 경영인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신지식 어업인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퇴직 공무원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대학교수, 연구원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별지 제3-2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목록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후견 항목 등			
				주업종명	후견부문	구분	경력

* 작성요령

- 나이 : 사업시행년도 1.1일 기준
- 주업종명 : 후견인이 후견 가능한 주업종
- 후견부문 : 후견인이 주로 후견하는 내용(기술, 경영, 정서, 기타)
- 구분 : 후견인의 소속을 기입(선도경영인, 신지식인, 퇴직공무원, 교수, 연구원, 기타)
- 경력 : 영어경력 또는 재직기간 등을 연 단위로 기입

창업어가후견인제(표준) 약정서

창업어가후견인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어가()를 “을”이라 하며, 창업어가 후견인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후견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어가와 후견인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5-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어가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⑦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일지 1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⑦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일지]

(일시 :) 후견인 성명 : 창업어가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내용	

[별지 제5-2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어가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수산분야】

V. 소득보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어선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식품부	어선인력과	과장 배호열 서기관 박신철	02-500-2317 02-500-2318
수협중앙회	양식보험팀	팀장 최영택 과장 김종권	02-2240-2976 02-2240-2979

I.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5조(보험사업자), 제14조(재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률을 2012년까지 20%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가입률(%)	5	-	-	5	연말	(보험가입어가 수 / 보 험 가입 대상 어 가 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	-	2,579	2,586	8,234
- 보조	-	-	2,579	2,586	8,234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보험가입 자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동 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자
 - 양식규모 중 수면적이 1,650m² 미만이거나 보험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나. 세부 사업내용

(1) 보험대상물

- 양식수산물 :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넙치(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100g이상의 것에 한함)
- 양식시설물 : 넙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2) 보험사업실시지역 : 전국

(3)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

- 양식수산물 : 태풍·폭풍·해일·적조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 양식시설물 : 태풍·폭풍·해일

(4) 보험기간 : 1년

(5) 보험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보험판매수협 : 가입설계서, 안내장발송, 설명회 등) → 가입신청(양식어업인 : 양식장원장, 질문서작성) → 현지확인(양식장원장확인 및 계약인수 현지조사서 작성 등) → 약관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료 산출 → 청약서 작성 → 인수심사 → 보험료수납 → 보험증권 발급

(6) 보험료납입

- 보험료 납입방법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0만 원 이상인 계약은 2회 또는 4회 분할납입 가능
- 집중재해기간(6월~9월)

구 분	납입시기	납입액
1회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75%
2회	가입후 2개월이내	보험료의 25%

- 집중재해기간 외

구 분	납입시기	납입액
1회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40%
2회	가입후 2개월이내	보험료의 35%
3회	가입후 4개월이내	보험료의 15%
4회	가입후 6개월이내	보험료의 10%

(7)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 특약별로 12개 권역 구분 요율 적용
(단, 자연재해원인수산물질병손해담보특약은 전국단일요율을 권역별로 적용)
- 일시납 가입시 : 5%할인
- 계속계약할인 : 5%할인
- 구조 및 시설에 따른 할인 : 5%, 10%
단,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은 적용하지 않음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50%~50% 할인·할증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권역별/자기부담비율별 영업요율 × (1±할인·할증요율)

(8)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8조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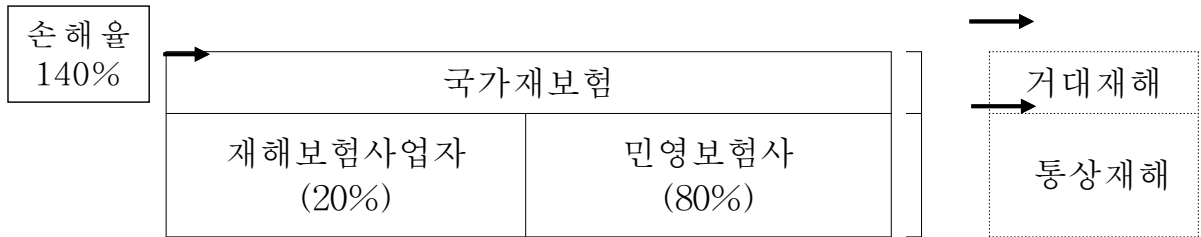
(9)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자연재해원인수산물질병손해담보특약은 9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10) 국가재보험

- 손해율 14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
- 손해율 140%이하 손해(통상재해)는 재해보험사업자(수협)가 인수하고, 민영보험사와의 재보험약정에 의하여 20%를 수협이 보유

<국가재보험 책임범위>



3. 지원대상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순 보험료 및 부가 보험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 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급여 재원
- 부가 보험료 :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순 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순보험료(총보험료의 55%) 중 50% 지원
- 부가 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부가보험료(총보험료의 45%) 중 70%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국고보조비율 범위내에서 지원

7.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사업시행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수협중앙회에 전달

수협중앙회

-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회원조합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2. 보험의 가입 단계

보험가입자(어업인)

-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청약서와 부속서류(양식장원장, 질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수협 회원조합(영업점)에 제출

수협 회원조합(영업점)

- 어업인으로부터 보험가입청약서를 접수한 후 보험가입 이후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 접수한 보험청약서를 수협 공제보험지부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은 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가입자에게 교부

수협 공제보험지부

-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청약서에 따라 보험가입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승낙여부를 영업점에 통보

3. 보험급여의 지급 단계

보험가입자(어업인)

- 보험가입자는 보험대상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고발생통지서에 의거 보험가입 영업점 또는 수협 공제보험지부에 통보

- 보험금 지급안내를 받은 후 보험청구서류를 영업점에 제출

수협 회원조합(영업점)

- 보험가입자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은 영업점은 사고내용을 관할 공제보험지부로 즉시 보고
- 신고된 양식장의 보험계약서를 근거로 보상대상사고 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초동조사보고서를 작성 공제보험지부에 보고
- 공제보험지부로부터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받아 6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
 - 자연재해원인수산물질병손해담보특약은 90일 이내

수협 공제보험지부

-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가 사고조사 및 손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조사를 의뢰
- 손해평가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손해평가인의 사고조사내용을 검증조사함
 - 조사주체 : 수협중앙회, 재보험사 및 정부
- 양식장별 손해수량 및 지급보험금을 결정하여 보험가입 영업점에 안내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로부터 분기별 1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급으로 지급

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말 20일까지 농림수산

식품부에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순 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이후 보험료납입시기 도래에 따라 집행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운영사업비 :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조합(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절차, 보험급여내용 및 지급절차, 국고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 보험모집 등 일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원조합이 보험모집의 적절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사업계획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추진 실적 등

《제재》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보험급여 집행에 있어서 보험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계약, 보조금집행 및 보험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연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보험가입 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재해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추진 완료 후 양식어가 가입 수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보험가입률, 보조금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10. 1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보조금 집행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보험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말 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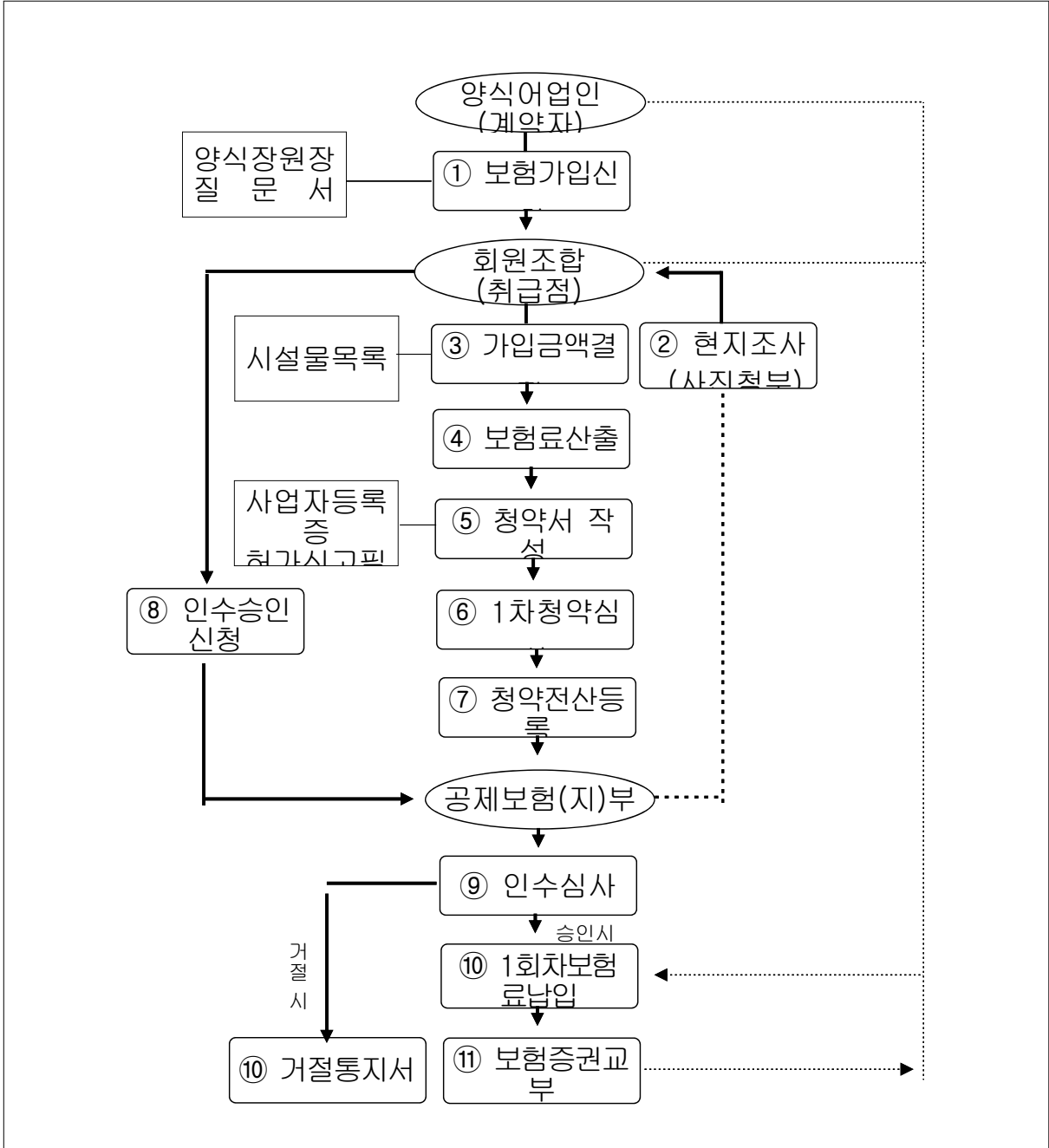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는 2010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물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 결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10년도 예산요구 및 추가계획 수립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절차



<붙임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고발생 통지서

수협중앙회 귀중

년 월 일

귀 수협중앙회와의 보험계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보험계약번호	
양식장 상호명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양식종류	육상수조식	보험책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어 종	넙치		
보험사고구분	폐사, 유실, 멸실, 시설물손상		
	생 물	시 설	
사고발생일	손해수량	사고발생일	손해수량
년 월 일	미	년 월 일	조
보험 사고 의 개요	일 시		
	장 소		
	원 인		
	결 과		
	기 타 (조치사항)		

- (주)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에 의해 속보를 함과 동시에 양식에 의한 사고발생통지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2. 보험사고의 구분 란은 해당되는 것에 ○ 표시를 하십시오.
 3. 사고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십시오.

신고인

이 름 _____(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	과 장 최병국 사무관 최창석	02-500-2435 02-500-2445

I.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 이행에 따라 미국산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국산 수산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 보전을 통해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대한특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품목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으로 품목별 생산어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의 97%이상 유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주지표: 소득지지율 (%)	97	-	-	-	품목별 정산후 2개월이내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주어기 평균가격+ 직불금)을 백분율화
▪ 부지표: 만족도(점)	4	-	-	-	상동	지원단가, 지급요건 등 전체 항목 평균만족도로 측정

- *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지원한도 및 범위 참조)
만족도 조사는 항목별로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소득보전직불금	-	-	5,100	1,500	16,500
보 조	-	-	5,100	1,500	16,500
용 자	-	-	-	-	-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품종의 고시일(추후 확정) 이전부터 당해 품종을 실제 어획 혹은 양식하는 어업인으로서 해당 어업인의 어업 면허 및 허가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으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 “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경영자를 말함
 - 다만,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인 중에서 어업종사자는 제외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로서 어업권 행정처분대장(면허,허가,신고)에 등재된 자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대상어종의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년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이상 증가
 - ※ 필요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목고시 이전에 동 요건은 조정가능
 - 지원대상어종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추후 고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당 어업인의 피해액 일정부분 직접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품목별 생산량×지급단가(기준가격-당년 평균가격)×보전비율(0.85)

- 품목별 생산량 : 피해어업인이 신청한 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월을 기준으로 역산한 1년간의 계통 및 비계통 생산량의 합계(단, 생산실적이 입증된 물량에 한함)
 - 계통출하 : 지구별 수협에 위판된 위판실적
 - 비계통출하 :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 실적
 - ※ 증빙서류 : 입출금통장사본, 입금표(물품보관증), 세금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
- 지급단가 : 「기준가격-당년 평균가격」의 차액
 - 기준가격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심의비율(80%)를 곱한 가격
 - 평균가격 : 지원대상 품목별 주어기 동안의 어업생산통계에 의한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 ※ 품목별 주어기 : 지원대상 품목 고시시 별도 지정
- 보전비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정한 비율로 85%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통보
-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전달
- 관측정보 등에 따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시·도(시·군·구)

- 사업내용 공고 및 홍보
 - 시·도(시·군·구)에서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 자체 게시판, 홍보지 및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등

생산자단체

- 품목별로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품목의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수산통상과)에 직불금 지원심사 요청
 - 생산자단체는 어업인이 심사요청한 품목에 대해 관련 어업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어업인을 대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수산통상과)에 심사를 요청
- ※ 생산자 단체 : 연근해(수협중앙회), 원양(원양산업협회), 내수면(품목별 생산자 협회)

어업인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심사 건의
 - 어업인은 유형별(연근해, 원양, 내수면)로 해당 생산자단체에 직불금 지원 심사를 건의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신청인의 어업권을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서류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계통출하 : 수협위판실적 증명서
 - 비계통출하 : 입출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자단체와 협동으로 어업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3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한 어업인인지 여부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조사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서식) 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자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에는 시·군·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단,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생략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및 교부결정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예산배정 내역 통보(시·도, 수협) 및 자금 송금요청(수협)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구에 재배정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입금

- 통장입금시 어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 소득보전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신청인이 당초 지정한 예금계좌 입금이 않될 경우,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증빙한 후 동 계좌로 입금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는 시·도에서 신청한 교부신청 사업비를 시·도로 교부결정하여 사업비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최종 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 관리
- 사업비 정산
 - 직불금은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직불금의 교부 및 신청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농수부에 정산보고와 동시에 수산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수협중앙회)에 사업비 정산내역 통보

자금위탁관리(수협중앙회)

- 수산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은 시도별 사업비 정산내역에 의거 당해연도 사업내역 정산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요건 발생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각 시·도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및 사업효율화 추진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군·구
 - 점검일정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 점검반 :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성과측정단계

《성과 측정》

- 당해년도 기준가격 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비율을 평가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 / 당해연도 기준가격) × 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직불금 소득지지율 평가

- 평가내용 : 당해연도 기준가격 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어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였는지 평가
- 평가지표 : 소득지지율이 당해연도 기준가격 대비 97%이상 유지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품목별 지원정산 후 2개월 이내
- 평가절차
 -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로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해당 품목의 주어진 고려하여 품목별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후 2개월이내 소득지지율을 산출하여 평가
 - ※ 단, 품목별 주어진 지원사업 정산이후 2개월 이후에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품목의 어가가 끝나는 월의 말일 이전에 평가를 할 수도 있음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지급실적 / 당해연도 기준가격)

○ 사업만족도 평가

- 조사내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 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의 소득기여도 등에 대하여 고객만족도가 일정수준(5점중 4점이상)이상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조사시기 : 지원대상 품목별로 자금배정시부터 품목별 사업정산후 2개월 이내
- 조사항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등
- 조사절차 : 항목별로 리커트의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전체 평균 만족도를 산출하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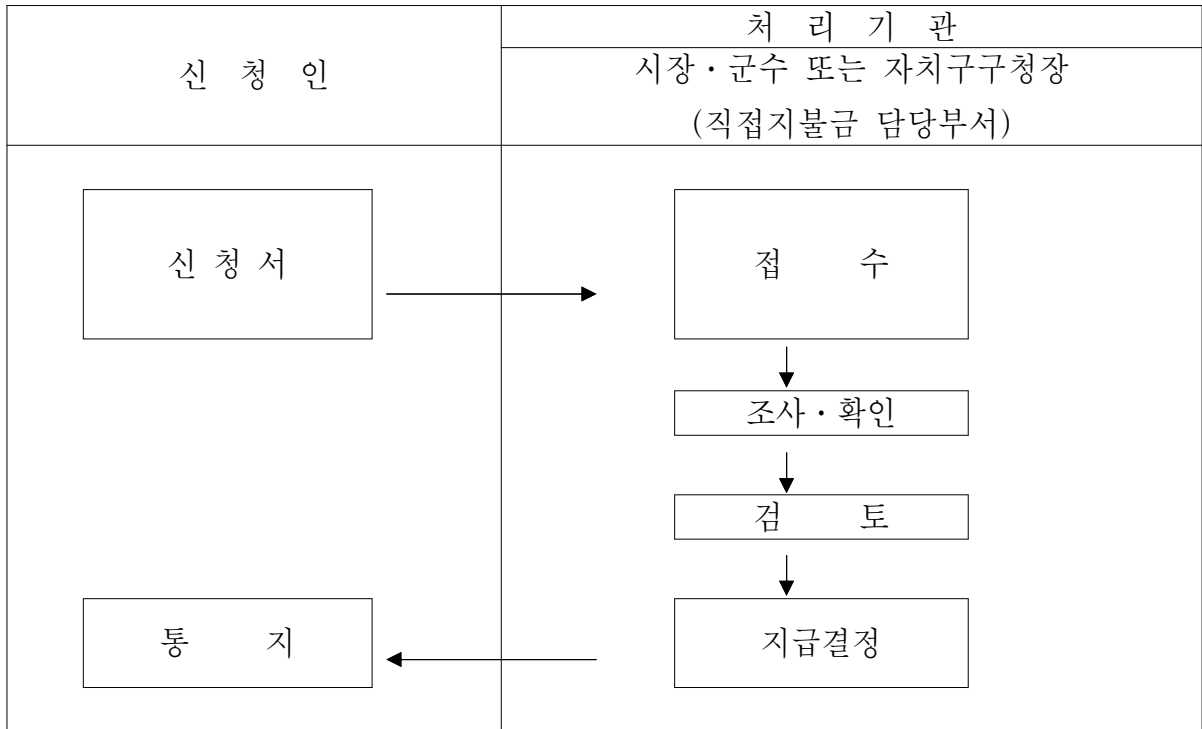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뒤 쪽)

<p>* 기재요령</p> <p>① ~ ③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p> <p>⑤ ~ ⑨란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양식면허 등의 행정처분대상상 소재지와 면허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p> <p>⑩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p> <p>⑪란은 신청품목의 실제생산량(계통 및 비계통 합계액)을 기재합니다</p> <p>⑫·⑬란은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어종 등을 기재합니다</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 결과서

○ 신청자

품목별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확인내용			겸업 여부	비고
				생산 금액	생산 기간	출하 지역		
명태								
	소 계	○○명 신청						
넙치								
	소 계	○○명 신청						
	소 계	○○명 신청						
총 합 계		○○명 신청						

※ 확인한 생산량이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단 생산량은 계통 및 비계통 판매액을 합계한 실적으로 기재

○ 제외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품목종류	주요생산품목/ 생산량(kg)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어업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200 년 월 일

확 인 자

○○ 시·군·구 직 성명 (인)

○○ 시·군·구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

(단위 : Kg, 천원)

시군	어종별	사업량(Kg)	사업비(기금)	어가수
합계	계			
	명태			
	오징어			
○ ○시	소계			
○ ○군	소계			

[별지 제4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예산(자금) 신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계					
명태	소계				
	○ ○시				
	○ ○군				
	·				
오징어	소계				
	○ ○시				
	○ ○군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 (금 원)
5. 지급내용

품 목	품목별생산량(kg)	지급단가(원)	조정계수	지급액(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제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시·군·자치구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년도)

수 신 : ○ ○시·도지사

발신 : ○ ○시·군·자치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품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어가수 (호)	생산량(kg)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명태					
	오징어					
00시·군	소 계					
	명태					
	오징어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2호 서식]

<시·도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년도)

수 신 : 농림수산식품부

발신 : ○ ○시·도지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품목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어가수 (호)	지 급 생산량(kg)	지 급 액 (천원)	
합 계	합 계					
	명태					
	오징어					
00시·군	소 계					
	명태					
	오징어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

1. 총괄

가. 수입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B+C)		
계						
○자유무역협정이 행지원기금						
○이익금 -						

나. 지출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B+C)		
계						
○사업비 - 명태 - 오징어						
○손실금 -						

2. 어종별

가. 명태

시군별	사업량(kg)			사업비(원)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				

나. 오징어

시군별	사업량(kg)			사업비(원)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				

3. 기타 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별지 제8호 서식]

(작성일자 : . .)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시·군)						관리 번호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 역	연도별	품목별	소재지			면허/ 허가	영여 기간	생산량(kg)	
			시·군	읍·면	리·동				
지 급 내 역									
지급 년월일	품목	생산량(kg)	지급단가 (원/kg)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수협(은행)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과 장 배호열 서기관 박신철	02-500-2317 02-5002318
수협중앙회	정책보험팀	팀 장 이영준 과 장 우동수	02-2240-2980 02-2240-2981

I.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제9조(업무의 위탁)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2012년까지 84%(당연가입대상자 기준) 수준까지 제고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80	74	76	78	연말	(당연가입 어선 척수 / 당연가입 대상어선 척 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어업인정책보험사업	102,000	20,127	26,540	36,355	105,000
- 보조	102,000	20,127	26,540	36,355	105,0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의한 보험가입자
 - 어선원보험(100톤이상), 어선보험(20톤이상)은 부가보험료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순 보험료 및 부가 보험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 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급여 재원
- 부가 보험료 :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순 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순 보험료(총 보험료의 80%)의 일정 비율 지원

구 분	10톤미만	10~20톤미만	10~30톤미만	30~50톤미만	50~100톤미만
어선원 보험	70%	60%		30%	20%
어선 보험	70%	60%	-	-	-

- 부가 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부가보험료(총 보험료의 20%)의 70%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 보험료 및 부가 보험료 : 보험가입 어선별 지원한도는 없음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보험의 설계 및 준비 단계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보험규약의 작성 및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요율 등 결정
 - 보험요율 증감표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 수협중앙회의 사업운영계획 검토 승인

수협중앙회

- 사업운영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그밖에 사업운영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2월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보험상품 관리자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보험가입접수 및 보험료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지구별 조합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보험요율, 약관, 수지예산 등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2. 보험의 가입단계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당연가입 대상)자는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임의가입대상)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신청서 작성과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납부
-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신청서(신고서)에 의한 고지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영업점에 통보하고 영업점에서는 보험가입확인서 또는 보험증권을 교부

보험가입자(어업인)

- 당연가입대상 : 보험가입대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신고서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임의가입대상 :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신청서와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납부

수협중앙회(영업점)

- 어업인으로부터 보험가입신청(신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가입신청서 부분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설명
- 접수한 보험가입신청(신고)서를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에 제출하고 승인 또는 심사결정 통보결과에 따라 보험가입확인서(보험증권)를 교부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

-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신청(신고)서에 따라 보험가입신청내용(고지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통보

3. 보험급여의 지급 단계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
- 영업점에서는 30일 이내(사고사실 조사기간 제외)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어업인)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손해정도에 관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지급청구서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제43조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점에 제출

수협중앙회(영업점)

-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가 영업점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결정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 사고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

수협중앙회

-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의 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시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로부터 분기별 1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으로 지급

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말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순 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이후 보험료납입시기 도래에 따라 집행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운영사업비 :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는 영업점의 보험모집과 보험급여 집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재정부실화 및 부당집행 예방

수협중앙회

- 보험업무 취급자 교육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절차, 보험급여내용 및 지급절차, 국고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점검 실시 및 자료제출
 -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의 적절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보험사업운영결과에 대한 가결산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가입실태와 수협중앙회의 사후관리사항 등을 반기 1회 점검
 - 주요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보험료징수실태 등

《제재》

- 수협중앙회는 보험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보험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보험급여 집행에 있어서 보험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계약, 보조금집행 및 보험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년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보험가입 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만족도조사는 보험가입자 중 표본을 선출하여 어업인 간담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시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보험가입자
 - 조사방법 : 어업인간담회, 설문조사 등
 - 주 최 : 수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추진 실적,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10.3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사업추진 실적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심사·분석(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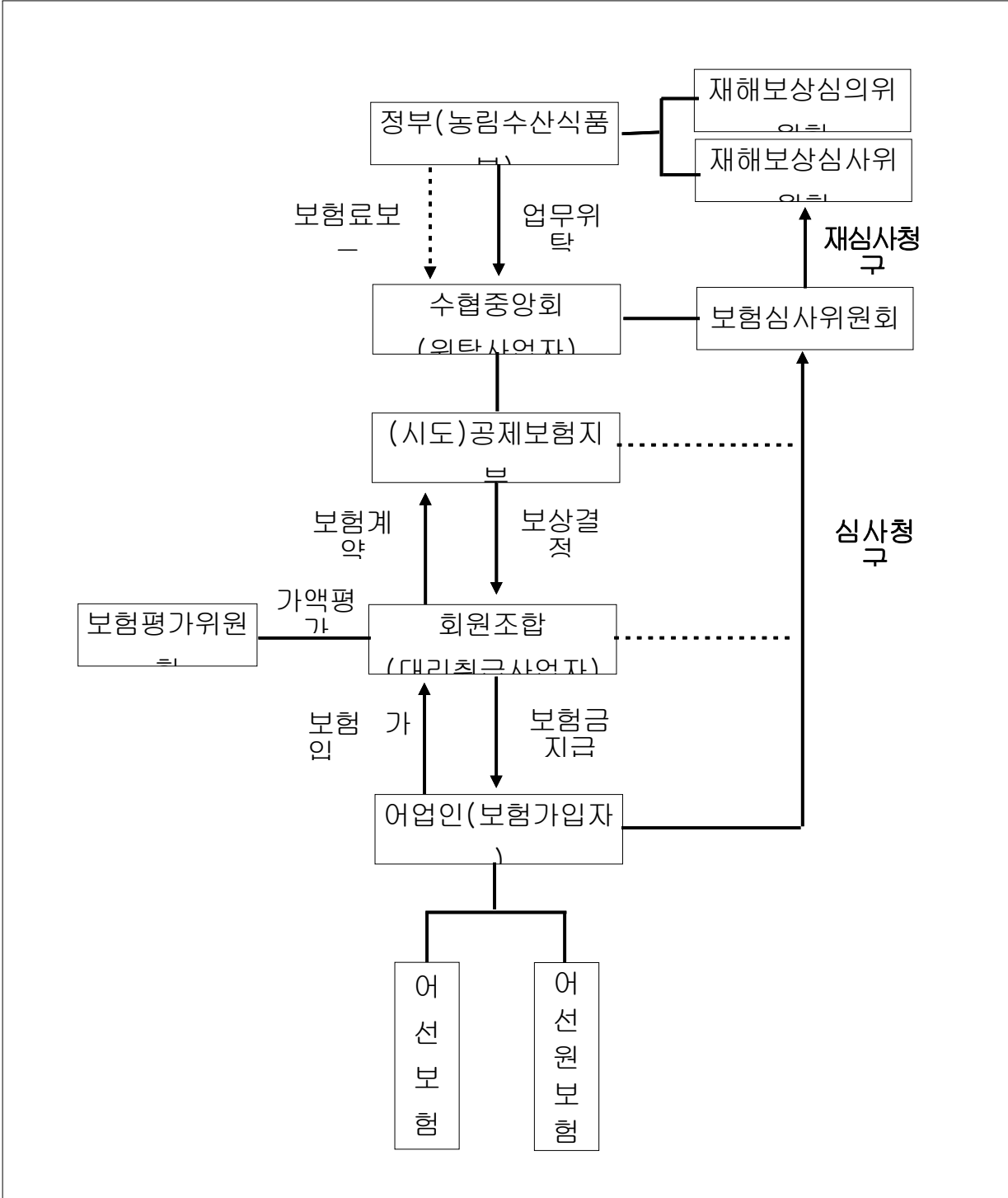
- 재해보험사업자는 2010년도 어업인정책보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 결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10년도 예산요구 및 추가계획 수립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재해보상보험 추진 체계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과장 배호열 서기관 박신철	02-500-2317 02-500-2318
수협중앙회	업무지원팀	팀장 김재완 과장 김승철	02-2240-2950 02-2240-2953

I.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생활안정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인안전공제가입률을 2012년까지 50%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률(%)	20	-	-	-	연말	(가입어업인 수 / 가입 대상어업인 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수산인안전공제사업	-	-	-	814	4,882
- 보조	-	-	-	814	4,882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84세 어업인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자 및 임의 가입한 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어업인
 -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선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로서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공제가입 절차 : 가입 안내 (지역수협 등) → 가입 신청 (어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 공제료 납입방법 : 일시납

3. 지원대상

- 수산인안전공제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 공제료 : 공제사고발생시 지급하는 재원
- 부가 공제료 : 공제사업자의 공제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순 공제료 : 보험가입자의 순 공제료(총 공제료의 85%)중 50%지원
- 부가 공제료 : 보험가입자의 순 공제료(총 공제료의 15%)중 50%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 범위 : 가입자당 1구좌 공제료의 50% 지원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 공제료

- 수산인안전공제 입원비확장특약은 국고지원 없음
- 상시 직장보유자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수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국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4/4분기 이후 지원 가능

7. 기타 사항

- 공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인안전공제 약관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제요율 및 약관 변경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의 수립
 - 익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사업시행 전년 15일전(12.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공제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협의
 - 공제요율 및 공제약관 변경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2. 공제의 가입 단계

- 공제에 가입하고자하는 어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 납부
- 공제 판매자는 가입자에게 보장내용 등 약관을 설명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한 후 공제증권을 발행

공제가입자(어업인)

- 공제판매자가 제공하는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납부

수협중앙회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작업의 범위, 공제금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한 후 국고지원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가입자로부터 공제료를 수납 한 후 공제증권 발행

3. 공제금의 지급

- 가입자는 공제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수협에 공제금을 청구하고, 수협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제금 지급

공제가입자(어업인)

- 재해 발생시 공제를 가입한 조합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공제금 지급 신청

수협중앙회

- 공제금 청구 서류가 수협에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단,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이내에 공제금 지급 가능
-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수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비 배정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분기별로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배정계획에 따라 수협으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공제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의 공제 가입부터 공제금 지급까지 신속·투명한 업무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주기적으로 확인

수협중앙회

- 공제를 판매하고 있는 지역조합에 대하여 공제 가입 및 지급절차, 보장내용, 국고지원 내역 등을 공제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제 판매 실태를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제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지역수협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수협중앙회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공제가입 청약서 등 확인

《제재》

- 수협중앙회는 공제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보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공제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공제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 공제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공제급여 집행에 있어서 공제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농림수산식품부

- 공제계약, 보조금 및 공제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공제사업자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수산인안전공제사업 계획상에 설정된 공제가입률, 보조금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10. 1월말 까지

- 평가대상 : 공제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공제가입률, 보조금 집행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공제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공제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공제사업자가 제출한 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공제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공제사업자(수협중앙회)는 2010년도 수산인안전공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물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 결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10년도 예산요구 및 추가계획 수립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작성기관명(부서명) :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 】

수산인안전공제 국비 보조 신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A)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총 계						
경 기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210mm × 297mm)

